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2018. 12



GERMANY

독일 편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독일 편 -

2018. 12

연구총괄 권성오 부연구위원

연구자 김미정 연구원
노영예 전문연구원

목차

제1편 개관	1
I. 일반 개황	1
II. 경제 개황	6
1. 주요 경제 지표	6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7
가. 독일의 對세계 수출입	7
나. 독일의 국가별 수출입	8
다. 독일의 지역별 수출입	10
3. 외국인 투자 동향	11
가. 독일의 FDI 유출입	11
나. 독일의 업종별 투자 유치	12
다. 對독일 주요 국가별 FDI 유입액	13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14
1. 한-독일 수출입 동향	14
2.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	16
가. 협상 추진의 배경	16
나. 협상의 내용	19
IV. 독일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26
1. 무역 관련 협정 개요	26
2. 무역 관련 협정 현황	27

제2편 통관제도	32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법령	32
1. 통관행정 조직	32
가. 독일관세총국(General Customs Directorate)	32
나. 독일관세총국의 조직 개편	39
다. EU의 조직	40
2. 관계법령	44
가. EU 기본법	44
나. EU 관세법	47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54
1. 관세의 과세요건	54
가. 개요	54
나. 과세물건	55
다. 납세의무자	55
라. 과세표준	56
마. 관세율	56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58
가. 관세의 확정방식	58
나. 관세채무에 대한 담보	65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68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68
나. 통관 관련 수수료	73
III. 관세평가제도	78
1. 관세평가 개요	78
2. 과세가격 결정 방법	80
가.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	80
나.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 이외의 방법	83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92
1. 품목분류	92
가. 개요	92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BTI)	93
2. 관세율 제도	95
가. 관세율 수준	95
나. 관세율 체계	98
다. 관세율의 종류	101
V. 감면 및 환급	103
1. 개요	103
2. 수출입관세 면제물품	104
3. 특별 통관절차에 따른 감면	108
4. 기타 관세의 환급	111
VI. 원산지제도	112
1. 개요	112
2. 비특혜원산지제도	113
가. 개요	113
나. 원산지결정	114
다. 원산지증명	115
3. 특혜원산지제도	116
가. 개요	116
나. 특혜원산지협정의 공통 조항	117
다. 특혜원산지제도(GSP)	118
라. 작업 목록(List Rules)	122
4. 관세동맹(Customs Unions)	124
5. 기타 원산지 관련 제도	125
가. 원산지 사전심사제도(BOI)	125
나. 인증수출자 등록시스템	128

VII. 보세제도	133
1. 개요	133
2.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134
가. 공통 조항	134
나. 보세창고	136
다. 자유지역	139
VIII. 수출입규제	142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	142
2. 무역구제제도	152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153
나. 세이프가드	158
다. EU의 TBR	160
3. 기타 비관세장벽	163
가. 비관세장벽 적용 현황	163
나. TBT 및 SPS	165
다. 인증	168
라. 환경 관련 규제	174
IX. 행정구제제도	178
1. 개요	178
2. 「UCC」상 관세불복	179
3. 사전적 구제제도	181
가. 종결협의	181
나. 조사보고의 내용 및 고지	182
다. 구속적 확인	182
4. 행정불복제도(이의신청)	183
가. 이의신청의 대상 및 청구인 적격	183
나.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185

X. 벌칙	188
1. 개요	188
2. 관세형벌의 특징	189
3. 관세형벌의 종류	193
가. 관세포탈죄	193
나. 금지품수출입죄	194
다.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죄	195
라. 조세은닉죄(조세장물법)	195
4. 질서위반	196
XI. AEO제도	198
1. 개요	198
2. AEO 공인 대상 및 기준	201
가. 공인 대상	201
나. 공인 기준	201
3. 공인 절차	205
4. 공인 혜택	206
5. EU의 상호인정협정	209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210
I. 수입통관절차	210
1. 개요	210
2. 수입통관절차	212
가. 입항개괄신고	212
나. 물품 반입	216
다. 수입신고	219
라. 관세납부 및 물품 반출	220
3. 기타 수입통관절차	221
가. 여행자 휴대품	221

나. 우편물	223
다. EU 내 물품의 이동	225
II. 수출통관절차	229
1. 개요	229
2. 수출통관절차	230
가. 수출신고	230
나. 물품반출	233
다. 기타	234
참고문헌	238

표 목차

제1편

〈표 1-II-1〉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7
〈표 1-II-2〉 최근 5년간 독일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8
〈표 1-II-3〉 2017년 독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9
〈표 1-II-4〉 2017년 독일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	10
〈표 1-II-5〉 독일의 FDI 유출입 추이	11
〈표 1-II-6〉 독일의 업종별 투자 유치 추이	12
〈표 1-II-7〉 對독일 주요 국가별 FDI 유입액 추이	13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독일 수출입 현황	15
〈표 1-III-2〉 2017년 우리나라의 對독일 주요 수출입 품목	16
〈표 1-III-3〉 한-EU FTA 일지	17
〈표 1-III-4〉 한-EU FTA 협정문 구조	20
〈표 1-III-5〉 한-EU FTA 양국 상품양허	22
〈표 1-III-6〉 양허 유형별 품목	23
〈표 1-IV-1〉 EU 무역 관련 협정 발효 현황	28
〈표 1-IV-2〉 EU 무역 관련 협정 진행 현황	30
〈표 1-IV-3〉 EU 무역 관련 협정 유예 현황	31

제2편

〈표 2-I-1〉 EU 주요 기구 및 역할	43
〈표 2-I-2〉 「UCC」 목차 구성	49

〈표 2-I-3〉 「UCC」 개정 주요 내용	52
〈표 2-II-1〉 2017년 독일의 주류 및 커피의 소비세율	72
〈표 2-III-1〉 관세평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80
〈표 2-III-2〉 「UCC 이행규정」 부속서(ANNEX 23-02)에 언급된 부패성 물품 목록 ..	88
〈표 2-IV-1〉 평균 MFN 관세율 및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96
〈표 2-IV-2〉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	97
〈표 2-IV-3〉 품목별 관세율 수준	98
〈표 2-V-1〉 주요 수입관세 면제 대상 물품	105
〈표 2-V-2〉 주요 수출관세 면제 대상 물품	108
〈표 2-V-3〉 특별 통관절차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109
〈표 2-VI-1〉 특혜공여 수준에 따른 GSP 수혜대상 국가	118
〈표 2-VI-2〉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119
〈표 2-VI-3〉 표준 GSP 수혜대상 민감품목 및 비민감품목	120
〈표 2-VI-4〉 작업 목록(List rules)의 일반적인 규칙 예시	123
〈표 2-VIII-1〉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143
〈표 2-VIII-2〉 환경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145
〈표 2-VIII-3〉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146
〈표 2-VIII-4〉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148
〈표 2-VIII-5〉 식물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149
〈표 2-VIII-6〉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150
〈표 2-VIII-7〉 문화재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151
〈표 2-VIII-8〉 EU의 수입규제 관련 법령	152
〈표 2-VIII-9〉 EU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현황	153
〈표 2-VIII-10〉 EU의 對한국 TBR 적용 내용	162

〈표 2-VIII-11〉 EU의 對한국 비관세장벽 규제 현황	164
〈표 2-VIII-12〉 CE 인증 적용 대상품목과 적용 규정 및 규칙	169
〈표 2-IX-1〉 독일 관세형벌의 특징	192
〈표 2-XI -1〉 AEO 구분에 따른 공인 기준	204
〈표 2-XI -2〉 AEO 구분에 따른 혜택	208
 제3편	
〈표 3- I -1〉 운송수단별 ENS 신고기한	214
〈표 3- I -2〉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기준	222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1-I-1] 2014~2018년 연평균 공식환율(EUR/USD) 추이	3
[그림 1-I-2] 2014~2018년 연평균 공식환율(EUR/KRW) 추이	4

제2편

[그림 2-I-1] 독일관세총국 조직도(2018년)	38
[그림 2-III-1] 과세가격 결정 방법	79
[그림 2-IV-1] 관세율 체계 예시	100
[그림 2-IV-2] EU 관세율 조회 화면	101
[그림 2-VI-1] REX 번호 유효성 확인 사이트	132
[그림 2-VII-1] 보세창고	137
[그림 2-VIII-1] CE 인증절차도	171

제3편

[그림 3-I-1] EMCS 절차	226
--------------------------	-----

제1편 개관

I. 일반 개황¹⁾

- 정식 국가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으로 유럽 중앙부에 위치하며, 수도는 베를린에 위치함
 - 국토면적은 35만 7천km²로 한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며, 주변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²⁾
 - 2,389km의 해안선은 북해 및 발트해와 맞닿아 있음
 - 지형은 북쪽의 저지대, 중심부의 고지대, 남쪽의 바이에른 알프스 산맥(Bavarian Alps)으로 구분됨
 - 기후는 온대 및 해양성 기후를 보임

- 독일은 EU 회원국이자 EU 지역 내에서 유로존과 쉥겐협약 가입국임³⁾
 - EU(European Union) 가입: 1958년 1월 1일

1)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m.html>(검색일자: 2018. 4. 18)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주변 9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3) EU 집행위원회,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member-countries/germany_en(검색일자: 2018. 4. 18)

2 제1편 개관

- 유로존(Euro zone) 가입: 1999년 1월 1일
- 쉥겐협약(Schengen Agreement)⁴⁾ 가입: 1995년 3월 26일

- 인구는 2017년 7월 기준 약 8,059만명으로 세계 19위 수준임
 - 인종은 독일계 91.5%, 터키계 2.4%, 기타(폴란드계·이탈리아계·루마니아계·시리아계·그리스계) 6.1%로 구성

- 행정구역은 16개의 주(State, Bundesland)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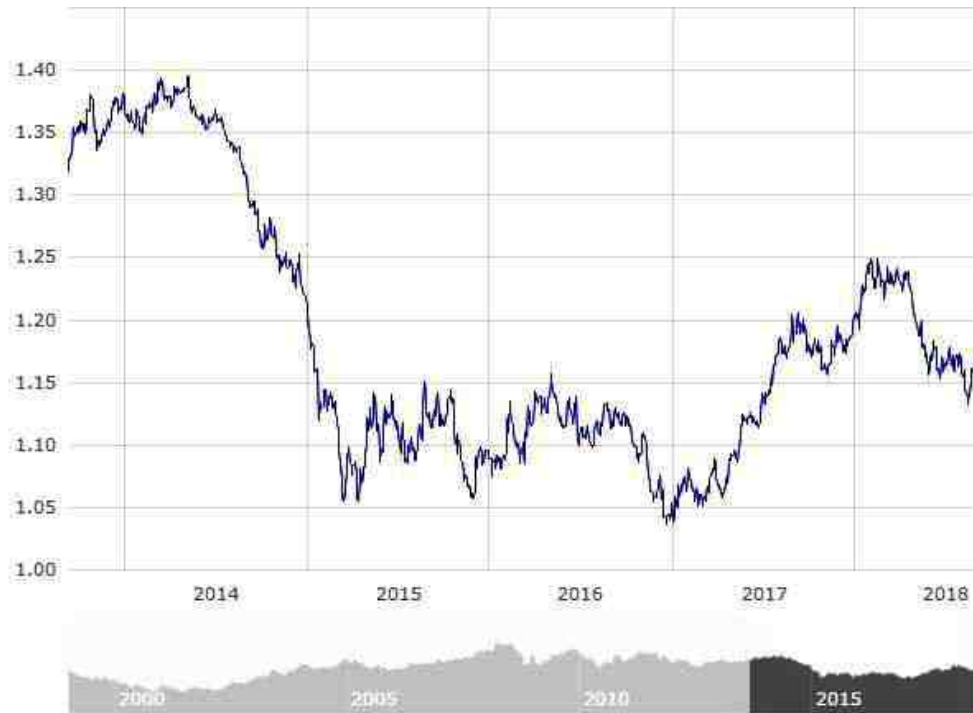
- 공용어는 독일어이며, 이외에도 덴마크어(Danish), 프리지아어(Frisian), 소르비아어(Sorbian), 로마어(Romani) 등의 공식적인 소수 언어가 있음

- 종교는 천주교(29%), 개신교(27%), 이슬람(4.4%), 기독교(1.9%), 기타(1.7%), 비공식 종교단체(36%)로 조사됨

- 유로존 국가인 독일의 화폐단위는 유로(EUR, €)로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공식환율(EUR/USD) 추이는 [그림 1-I-1]과 같음
 - 유럽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10일 기준 1유로는 1.1571달러이며, 최근 5년 평균 1유로는 1.1840달러로 조사됨
 - 유로/달러가 가장 하락세를 보인 것은 1.0364달러로 2016년 12월이며, 가장 상승세를 보인 것은 1.3953달러로 2014년 5월이었던 것으로 조사됨

4) 유럽지역의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어느 한 국가에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기간 중 최장 90일 간만 무비자로 쉥겐협약 가입국 내에서 여행이 가능

[그림 1-1-1] 2014~2018년 연평균 공식환율(EUR/USD)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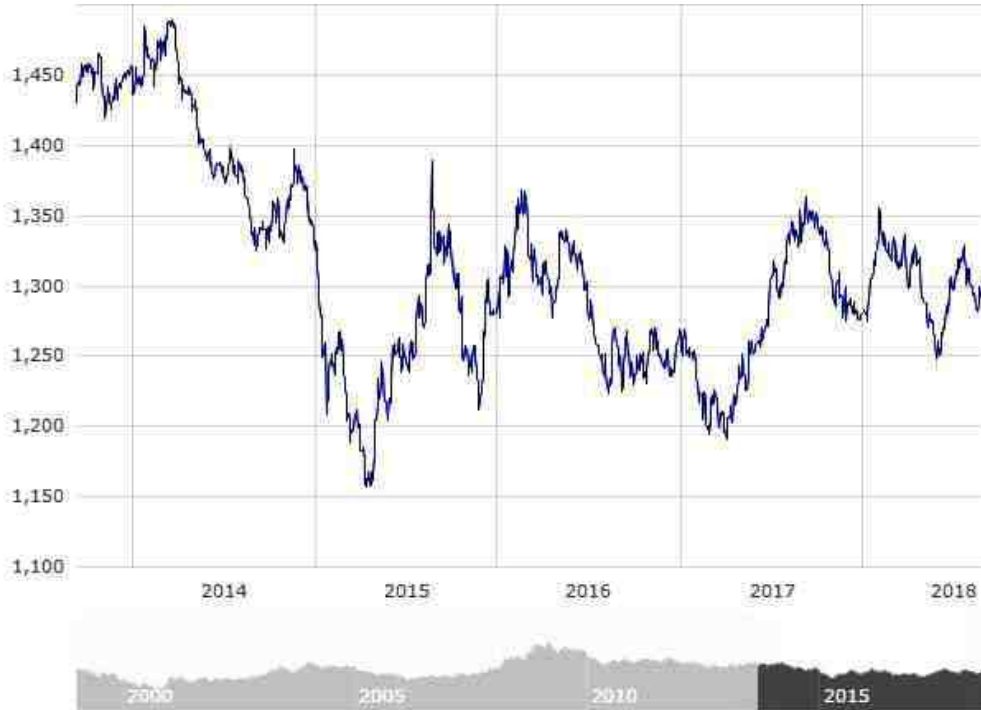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euro_reference_exchange_rates/html/eurofxref-graph-usd.en.html(검색일자: 2018. 9. 11)

- 한편 2014~2018년 기간 중 유로 환율(EUR/KRW) 추이는 [그림 1-1-2]와 같음
 - 유럽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10일 기준 1유로는 1,306.49원이며, 최근 5년 평균 1유로는 1,312.45원으로 조사됨
 - 유로/원화가 가장 하락세를 보인 것은 1,156.94원으로 2015년 4월이며, 가장 상승세를 보인 것은 1,489.35원으로 2014년 3월이었던 것으로 조사됨

4 제1편 개관

[그림 1-1-2] 2014~2018년 연평균 공식환율(EUR/KRW) 추이



자료: 유럽중앙은행,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euro_reference_exchange_rates/html/eurofxref-graph-krw.en.html#(검색일자: 2018. 9. 11)

- 정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원내각제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⁵⁾
 - 독일 정부의 수반이자 정당의 당수인 연방수상(Bundeskanzler)과 국가 원수인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이 존재함
 - 연방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보유하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함
 - 연방의회는 연방상원(Bundesrat)과 연방하원(Bundestag)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이안리너트·정무경, 『OECD국가 예산 체계의 법적 구조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12. 28, p. 269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 연방상원은 16개 주정부의 이익을 대표하며, 주정부에 의하여 임명됨
 - 연방하원은 헌법·연방법률·연간 예산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보통선거로 선출됨
- 한편 독일형 의원내각제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님⁶⁾
- (연방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 우위) 연방수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질 뿐 아니라 각료 임명에서도 제청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이 제청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은 수상제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함
 - (건설적 불신임 투표제도를 채택) 연방 하원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
- 한편 EU는 2016년 6월 1일부터 기존의 유럽공동체 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을 대체하여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이하 「UCC」)을 발효한 바 있음⁷⁾
- EU는 단일의 관세법령을 모든 회원국이 시행하는 관세행정 체제임
 - 이에 따라 상기 규정은 독일을 포함한 모든 EU 회원국의 수출입통관에 적용되고 있음

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66>(검색일자: 2018. 4. 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7)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II. 경제 개황

1. 주요 경제 지표

- 독일의 경제규모는 2013년 명목 GDP 3조 4,537억달러에서 2017년 명목 GDP 3조 6,848억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CAGR) 1.63%를 기록
- 1인당 명목 GDP는 2014년 4만 8,118.7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4만 4,549.7달러로 감소
- 경제성장률은 2013년 3.5%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3.3%를 유지
- 소비자물가 증감률은 2015년 0.1%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1.7%로 동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함

〈표 1-11-1〉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¹⁾
명목 GDP(십억달러)	3,453.7	3,896.8	3,377.3	3,479.2	3,684.8
1인당 명목 GDP(달러)	46,545.4	48,118.7	41,344.7	42,249.8	44,549.7
경제성장률(% ²⁾)	3.5	3.4	3.4	3.3	3.3
소비자물가 증감률(% ³⁾)	1.6	0.8	0.1	0.4	1.7

주: 1) 추정치

2) Gross domestic product based on purchasing-power-parity(PPP) share of world total

3) Inflation, average consumer prices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8. 4.

- 한편 독일 연방은행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31일 독일 연방정부는 연례경제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호조와 내수 증가 및 수출 강세로 인해 독일 경제가 실질 GDP 성장률 2.4%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밝힘⁸⁾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가. 독일의 對세계 수출입

- 2017년 독일의 對세계 수출은 1조 2,794억유로, 수입은 1조 346억유로로 총교역량은 2조 3,140억유로에서 2,448억유로의 對세계 무역흑자를 기록
- 독일의 對세계 수출은 2017년 1조 2,794억유로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 1,965억유로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독일의 對세계 수입은 2017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346억유로로 2013~2017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증가율과 최고치를 기록

8) 독일 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Annual Report 2017", 2018. 2. 27, p. 42

8 제1편 개관

- 독일의 對세계 교역 규모는 2017년 전년 대비 7.2% 증가한 2조 3,140억유로로 2013~2017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증가율과 최고치를 기록
- 독일의 對세계 무역수지는 2013년 1,976억유로에서 이후 흑자 폭이 증가하여 2016년에는 2,489억유로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

〈표 1-11-2〉 최근 5년간 독일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유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0,880	-0.4	11,237	3.3	11,965	6.5	12,038	0.6	12,794	6.3
수입	8,903	-1.0	9,101	2.2	9,484	4.2	9,549	0.7	10,346	8.3
교역 규모	19,783	-0.7	20,338	2.8	21,449	5.5	21,587	0.6	23,140	7.2
무역수지	1,976	2.3	2,136	8.1	2,481	16.2	2,489	0.3	2,449	-1.6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Indicators/LongTermSeries/ForeignTrade/lrahl01.html>(검색일자: 2018. 4. 27)

나. 독일의 국가별 수출입

- 2017년 기준 독일의 최대 교역국은 1,866억유로 규모의 중국임
 - 중국에 이어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순임
 - 288억유로 규모의 우리나라는 독일의 제20위 교역국임
- 2017년 기준 독일의 최대 수출국은 1,115억유로 규모의 미국임
 - 미국에 이어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 체코 순임
 - 175억유로 규모의 우리나라는 독일의 제19위 수출국임

- 2017년 기준 독일의 최대 수입국은 1,005억유로 규모의 중국임
 - 중국에 이어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순임
 - 113억유로 규모의 우리나라는 독일의 제23위 수입국임

- 2017년 기준 독일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은 504억유로 규모의 미국이며,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은 -143억유로 규모의 중국임
 - 62억유로 규모의 우리나라는 독일의 제13위 무역수지 흑자국임

〈표 1-Ⅱ-3〉 2017년 독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유로)

순위	국가명	교역	수출	수입	수지
1	중국	1,866	862 (3)	1,005 (1)	-143 (235)
2	네덜란드	1,773	859 (4)	914 (2)	-55 (231)
3	미국	1,726	1,115 (1)	611 (4)	+504 (1)
4	프랑스	1,694	1,052 (2)	642 (3)	+410 (3)
5	영국	1,215	844 (5)	371 (11)	+473 (2)
6	이탈리아	1,214	656 (6)	558 (5)	+98 (8)
7	폴란드	1,106	595 (8)	510 (6)	+85 (9)
8	오스트리아	1,041	628 (7)	412 (9)	+216 (4)
9	스위스	997	540 (9)	457 (8)	+83 (10)
10	체코	879	416 (12)	463 (7)	-47 (229)
20	우리나라	288	175 (19)	113 (23)	+62 (13)

주: 수출, 수입, 수지의 괄호는 각 순위를 나타냄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Indicators/LongTermSeries/ForeignTrade/lrahl01.html>(검색일자: 2018. 4. 27)

다. 독일의 지역별 수출입

- <표 1-II-4>는 2017년 독일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을 정리한 것임
 - 독일의 수출입을 크게 EU 국가와 비EU 국가로 나누어 살펴보면 절반 이상은 EU 회원국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독일의 EU 국가에 대한 수출입은 전년 대비 각각 6.3%와 8.3% 증가하였으며, 비EU 국가에 대한 수출입은 전년 대비 각각 8.3%와 9.1%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독일의 전체 수출 1조 2,794억유로 규모 가운데 EU 국가가 58.6%의 비중을, 비EU 국가가 나머지 41.4%의 비중을 차지함
- 마찬가지로 독일의 전체 수입 1조 346억달러 규모 가운데 EU 국가가 66%의 비중을, 비EU 국가가 나머지 34%의 비중을 차지함

<표 1-II-4> 2017년 독일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유로, %)

구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체	12,794	6.3	100	10,346	8.3	100
EU 국가	7,501	6.3	58.6	6,825	7.9	66.0
- 유로존 국가	4,714	7.0	36.8	4,594	7.2	44.4
- 비유로존 국가	2,787	5.1	21.8	2,231	9.5	21.6
비EU 국가	5,294	8.3	41.4	3,521	9.1	34.0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Indicators/LongTermSeries/ForeignTrade/lrahl01.html>(검색일자: 2018. 4. 27)

3. 외국인 투자 동향

가. 독일의 FDI 유출입

- OECD에 따르면 독일의 FDI 유입은 2017년 총 298억 5,900만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30억 500만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함
- FDI 유입 잔액의 경우 2017년 9,485억 8,200만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7,862억 4,200만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함
- 한편 독일의 FDI 유출은 2015년 총 977억 1,900만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394억 9,200만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함
- FDI 유출 잔액의 경우 2017년 1조 5,939억 7,500만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1조 3,365억 6,600만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함

〈표 1-Ⅱ-5〉 독일의 FDI 유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FDI 유입 총액	12,796	-3,005	22,804	12,321	29,859
FDI 유입 잔액	955,168	862,213	786,242	790,337	948,582
FDI 유출 총액	39,492	91,720	97,719	46,790	77,483
FDI 유출 잔액	1,448,431	1,388,803	1,336,566	1,346,911	1,593,975

주: 2018년 7월 6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

자료: OECD,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country-statistical-profile-germany-2018-3_csp-deu-table-2018-3-en(검색일자: 2018. 8. 6)

나. 독일의 업종별 투자 유치

- 2017년 독일의 업종별 투자는 2,724억 5,600만유로 규모의 자유 직종/학술/기술 서비스의 규모가 최고치를 보임
- 자유 직종/학술/기술서비스에 이어 금융 및 보험서비스, 차량 정비 보수 및 수리 관련 유통, 가공업, 정보통신의 순임

〈표 1-11-6〉 독일의 업종별 투자 유치 추이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13	2014	2015	2016
농림어업	158	160	167	214
광산업	10	411	141	1,113
가공업	33,895	31,858	35,799	35,330
에너지 공급	4,821	6,659	7,561	9,171
식수 공급, 폐수처리 및 환경오염제거	412	341	386	392
건설업	657	916	1,294	1,152
차량 정비 보수 및 수리 관련 유통	33,555	33,501	34,227	36,117
운송/물류	5,318	5,917	6,024	6,190
숙박업	1,145	1,312	1,312	1,461
정보통신	48,691	35,595	32,636	30,963
금융 및 보험서비스	49,494	251,296	262,436	265,293
부동산	22,902	20,869	22,637	24,948
자유 직종/학술/기술서비스	454,324	281,957	269,919	272,456
기타 경제서비스(차량 또는 인력임대, 여행서비스)	4,633	1,307	461	689
교육/보건/사회복지	139	-8	228	280
예술/여가	195	160	269	315
공공행정: 기타 서비스	158	186	166	167
합계	660,507	672,437	675,663	686,251

자료: 독일 연방은행, https://www.bundesbank.de/Navigation/EN/Statistics/Time_series_databases/External_sector/external_sector_node.html?anker=AUSSENWIRTSCHAFTDIR
EKT(검색일자: 2018. 8. 6)

다. 對독일 주요 국가별 FDI 유입액

- 독일 연방은행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2013~2017년 기간 중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EU 국가가 대부분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6년 기준 최대 유입국은 3,745억 4,300만유로 규모의 EU 국가이며, EU 국가에 이어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순임
 - EU 국가 중 최대 유입국은 765억 9,500만유로 규모의 영국이며, 영국에 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순임
 - 한편 영국의 경우 2017년 자료부터 기타 EU 국가로 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3년 37억 3,500만유로에서 2016년에는 49억 6,500만유로로 증가했으며 독일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표 1-Ⅱ-7〉 對독일 주요 국가별 FDI 유입액 추이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13	2014	2015	2016
전체	660,509	672,437	675,660	686,250
EU 국가	373,706	370,352	376,083	374,543
- 네덜란드	53,898	39,882	41,004	44,923
- 룩셈부르크	46,511	38,536	42,728	39,765
- 프랑스	46,714	46,002	46,411	45,807
- 영국	86,473	85,374	80,001	76,595
미국	149,776	149,834	155,617	156,245
일본	29,192	29,936	31,568	33,429
중국	2,245	3,606	4,451	5,231
한국	3,735	4,724	4,166	4,965

주: OECD Benchmark Definition, 4th edition 현행 요건 반영

자료: 독일 연방은행, https://www.bundesbank.de/Navigation/EN/Statistics/Time_series_databases/External_sector/external_sector_node.html?anker=AUSSENWIRTSCHAFTDIREKT(검색일자: 2018. 8. 6)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1. 한-독일 수출입 동향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독일의 총교역 규모는 약 282억달러이며 우리나라의 對독일 수출은 약 85억달러, 수입은 약 197억달러임
- 2017년 우리나라 총수출(약 5,737억달러)의 약 1.48%, 총수입(약 4,785억달러)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음⁹⁾
- 전년 대비 우리나라의 對독일 수출은 31.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4.4%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對독일 수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수출 금액 약 62억달러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하였음
- 수입은 2013~2014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 2016년 각각 1.6%, 9.7%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 다시 증가하였음
- 교역 규모는 2013~2014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 2016년 각각 6%, 8%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음
- 對독일 무역수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이나 2016년도부터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9)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색일자: 2018. 11. 18)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독일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79	5.3	76	-4.3	62	-17.8	64	3.6	85	31.7
수입	193	9.6	213	10.2	210	-1.6	189	-9.7	197	4.4
교역 규모	272	8	289	6	272	-6	253	-8	282	10
무역수지	-114	-11	-137	-17	-148	-7	-125	18	-112	12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검색일자: 2018. 11. 18)

- 2017년 기준으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제12위 수출국이자 제4위 수입국임¹⁰⁾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독일 10대 수출 품목은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축전지, 자동차부품, 선박, 합성수지, 의약품, 무선전화기, 금속절삭가공기계, 타이어 등임
 - 무선전화기, 의약품, 집적회로반도체의 對독일 수출이 전년(2016년) 대비 각각 661.3%, 199.9%, 121.0%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독일 10대 수입 품목은 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계측기, 펌프, 광학기기부품, 집적회로반도체, 가축육류, 광학기기 등임
 - 광학기기부품, 광학기기, 가축육류의 對독일 수입이 전년(2016년) 대비 각각 96.2%, 63.2%, 55.2%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승용차, 자동차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계측기, 집적회로 반도체는 전년 대비 모두 수입이 감소하였음

10)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색일자: 2018. 11. 18)

〈표 1-III-2〉 2017년 우리나라의 對독일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승용차	1,587	42.2	승용차	4,382	-9.6
2	집적회로반도체	861	121.0	의약품	1,007	20.8
3	축전기	827	51.9	자동차부품	755	-0.1
4	자동차부품	456	8.6	기타정밀화학원료	587	-5.0
5	선박	310	49.9	계측기	439	-8.1
6	합성수지	284	15.4	펌프	430	29.6
7	의약품	205	199.9	광학기기부품	421	96.2
8	무선전화기	186	661.3	집적회로반도체	409	-14.7
9	금속절삭가공기계	157	11.8	가축육류	386	55.2
10	타이어	139	25.8	광학기기	377	63.2

주: MTI 4단위¹¹⁾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검색일자: 2018. 11. 15)

2.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

가. 협상 추진의 배경

- 독일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 차원에서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음
- 한-EU FTA는 ① EU시장 진출 확대 ② FTA 관세혜택으로 인한 무역규모 증가 ③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타결되었음¹²⁾

11)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단위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에 적합한 품목 분류를 통해 정책 집행 및 경제 분석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1988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정한 수출입 품목 분류 체계를 의미하며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의 '對EU 10대 수출입 품목' 자료의 단위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음

12)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 10, p. 2

- 한국은 한-칠레 FTA 타결 이후 FTA의 확산과 경제블록화, 해외수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FTA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인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음¹³⁾
- EU는 2006년 9월 역외국과의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글로벌 유럽 이니셔티브(Global Europe Initiative)를 발표하고, ① 시장잠재력 ② 시장진입장벽 ③ EU 경쟁국과의 FTA 추진 여부를 바탕으로 한국, ASEAN, 인도를 최우선 협상국으로 선정하였음¹⁴⁾
- 2006년 5월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에 대해 합의했으며 2006년 2차례의 예비협의를 통해 FTA 추진 여부를 구체화하였음
 - 2006년 11월과 12월에 각각 한-EU FTA 공청회와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EU와의 FTA 체결과 관련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2007년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한 후 제8차 협상에 이르러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관세 환급 및 원산지 비중 등 FTA 체결에 관한 이견에 대해서는 2009년 5~6월 중 두 차례의 통상 장관 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음¹⁵⁾
- 한-EU FTA는 한국 FTA 로드맵의 중장기 FTA 대상국과 발효되는 첫 번째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라는 의미가 있음

〈표 1-III-3〉 한-EU FTA 일지

날짜	회의
2018. 1. 19.	제7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브뤼셀)
2017. 6. 12.~14.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서울)

13)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 10, p. 1

14)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 10, p. 12

15)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 10, p. 13

18 제1편 개관

날짜	회의
2016. 12. 16.	제6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브뤼셀)
2016. 11. 15.~16.	한-EU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브뤼셀)
2016. 6. 21.~22.	한-EU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브뤼셀)
2015. 12. 13.	한-EU FTA 전체 발효 2011. 7. 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2015. 9. 15.	제5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서울)
2015. 9. 8.	제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세종)
2015. 9. 7.	제4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서울)
2014. 10. 16.	제4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브뤼셀)
2014. 9. 17.	제3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브뤼셀)
2014. 5. 26.	크로아티아의 한-EU FTA 가입 잠정발효
2013. 10. 15.	제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서울)
2013. 9. 13.	제2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과천)
2013. 9. 12.	제2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과천)
2012. 10. 16.	제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브뤼셀)
2012. 9. 26.	제1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브뤼셀)
2012. 9. 25.	제1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브뤼셀)
2011. 10. 12.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 개최(서울)
2011. 7. 1.	한-EU FTA 잠정 발효
2011. 5. 4.	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2010. 10. 6.	한-EU FTA 정식 서명
2009. 7. 13.	한-스웨덴 정상회담시 협상 타결 선언(스톡홀름)
2007. 5. 7.~2009. 3. 24.	한-EU FTA 제1차~제8차 협상 개최
2007. 5. 6.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2007. 4. 9.	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 방안 협의
2006. 12. 6.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2006. 11. 24.	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2006. 7. 19.~2006. 9. 27.	제1차,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를 개최(브뤼셀)
2006. 5. 15.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의를 개최 합의
2003. 8.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자료: 한-EU FTA 포털, <http://fta.go.kr/eu/info/2/>(검색일자: 2018. 8. 13)

나. 협상의 내용

1) 협정문

- 한·EU FTA 협정문은 본문 및 부속서(annex), 의정서(protocol)를 비롯한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음¹⁶⁾
 - 협정문은 상품(1~6장), 서비스(7~8장), 규범(9~13장), 기타(14~15장)로 구성되어 있음
 - 협정문 말미에 원산지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를 비롯하여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와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가 첨부되어 있음
 - 또한 협정문의 맨 마지막에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터키와 한국이 특혜 관세협정을 맺을 것을 EU가 권고하고 한국이 이에 대해 터키와 FTA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2013년 한-터키 FTA 발효)
 - 원산지 부속서와 관련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관련 부속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에는 안도라와 산마리노 공화국 원산지를 EU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 한-EU FTA는 한국과 EU 및 그 회원국과의 협약이므로 협약의 당사자로 대한민국 및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와 그 회원국(Member States) 27개국이 모두 협정문에 나열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¹⁷⁾
 - 2013년 크로아티아가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한-EU FTA 추가의정서를 통해 크로아티아를 포함시키는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음

16) 한-EU FTA 포털, <http://fta.go.kr/eu/doc/1/>(검색일자: 2018. 8. 13)

17)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 10, p. 15

〈표 1-III-4〉 한-EU FTA 협정문 구조

구분	장	각장의 제목
상품	제1장	목적 및 일반적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관세양허 부속서
		비관세 관련 부속서
	제3장	무역구제
	제4장	무역기술장벽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서비스 규범	제7장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설립양허 부속서
	제8장	지불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제10장	지식재산권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기타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제14장	분쟁해결
의정서	-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 10, p. 16

2) 상품양허

- 한·EU 양측은 공산품 및 농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음¹⁸⁾
 - 수입액을 기준으로 EU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고 한국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음
 - 품목 수 기준으로 EU는 쌀을 제외한 99.6%의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또한 쌀을 제외한 93.6%의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음

- EU의 관세양허 계획의 종류는 즉시 철폐, 3년 철폐, 5년 철폐, 양허제외(×) 등 4개이며 한국의 관세양허 계획의 종류는 2년, 3년, 5년, 6년, 7년, 10년 초과(12년, 13년, 15년, 18년, 20년간 균등철폐) 양허제외 및 현행관세유지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양허하고 있음¹⁹⁾
 - 이는 한국이 농산품과 같은 민감 품목의 보호를 위하여 관세양허 종류를 다양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은 다수의 농산품에 대해 현행관세유지, 장기철폐와 같은 예외적인 취급을 확보하게 되었음
 - 단, EU측도 일부 과일 및 채소류(16개 품번, 對한국 수입비중 0.0%)에 대해 일정기간 시장진입가격을 유지하기로 하였음²⁰⁾

18) 외교통상부, 『한-EU FTA상세설명자료』 2012. 7, p. 2

19)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 10, p. 19

20) 외교통상부, 『한-EU FTA상세설명자료』 2012. 7, p. 2

〈표 1-III-5〉 한-EU FTA 양국 상품양허

(단위: 억불, %)

구분	한국				EU			
	품목 수	비중	대 EU 수입액	비중	품목 수	비중	대 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a)	9,195	81.7	182	66.7	9,252	94.0	318	76.6
2~3년(b)	625	5.5	61	22.2	282	2.9	69	16.7
5년(c)	718	6.4	22	8.1	269	2.7	28	6.7
5년 내(a+b+c)	10,538	93.6	265	97.0	9,803	99.6	415	100
6~7년	111	1.0	4	1.4				
10년	399	3.5	3	1.1				
10년 초과	169	1.5	1	0.5				
양허제외/ 현행관세	44	0.4	0	0.0	39	0.4	0	0.0
총합계	11,261	100	273	100	9,842	100	415	100

주: 품목 수는 HS 2006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

농업셰이프가드, 수입쿼터, 시장진입가격제도 등은 관세철폐 연도에 따라 분류

자료: 외교통상부, 『한-EU FTA상세설명자료』 2012. 7, p. 3

-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수출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중형 및 대형(1,500cc 초과)은 FTA 협정의 발효 후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소형(1,500cc 이하)은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²¹⁾
- 우리나라도 EU로부터 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해 동일하게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 또한 전기전자 품목 중 칼라 TV(14%)와 같은 EU의 고관세 부과 품목의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전기전자 부품은 모두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²²⁾

21) 외교통상부, 『한-EU FTA상세설명자료』 2012. 7, p. 4

22) 외교통상부, 『한-EU FTA상세설명자료』 2012. 7, p. 4

□ 그 밖에도 한국으로부터 EU에 수입되는 섬유 제품 품목 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99.9%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신발류 또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함²³⁾

〈표 1-III-6〉 양허 유형별 품목

() : 관세율 %(HS 2006 기준)

양허 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제촉기(8), 직물제 의류(8~13), 스키부츠(8,13), 인쇄기계(8),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컴퓨터부품(8), 항공기 부품(3~8), 제촉기 부품(8) 등	자동차 부품(4.5), 무선통기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아세탈수지(6.5), 천연색염색선관(14), 남성셔츠(1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안경(8), 변환 및 안정기(8), 식품가공기계(8) 등	중형 및 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 도자기 제품(12), 항공기(7.5~7.7), 기타 신발(16.8),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밸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 요업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TV카메라 및 수상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모사(8),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파티클보드(8), 표면활성제(8), 밸브(8), 베어링(8), 의료용 전자기기(8), X선 및 방사선기기(8), 합성고무(8) 등	없음

자료: 외교통상부, 『한-EU FTA상세설명자료』 2012. 7, p. 5

23) 외교통상부, 『한-EU FTA상세설명자료』 2012. 7, p. 5

3) 시장접근

- 무역 기술 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 T)²⁴⁾ 부분에서는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²⁵⁾
 - WTO의 TBT 협정을 따르되 표준의 사용, 표준화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협정상에 명문화하였음
 - 한-EU FTA에서는 전자파 적합성 및 전기 안전에 있어서 국내 최초로 공급자 적합성(SDoC) 선언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측이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음²⁶⁾
 - SDoC는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공급자가 시험하여 판정하는 방식임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분야에서 한국과 EU의 보건의료 제도 차이를 인정하되 가격산정, 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법, 규정, 절차, 행정판정 및 이행규칙을 공유하기로 하였음²⁷⁾
 - 특히 법과 절차 이행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음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²⁸⁾ 부분에서는 WTO SPS 협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병해충 무발생, 저발생 지역의 인정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 여타 FTA와 차이를 두었음²⁹⁾

24)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협정

25)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10, p. 21

26)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10, p. 20

27)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10, p. 21

28) WTO 회원국 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29)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10, p. 22

-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한-EU FTA에서 처음으로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³⁰⁾
 -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첨부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제도임
 - 對EU 수출이 6,000유로를 상회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특혜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함

30)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 10, p. 22

IV. 독일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1. 무역 관련 협정 개요

- 독일은 EU의 연합국으로 무역 관련 협정 또한 EU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EU의 무역 관련 협정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음
- EU는 과거 국가 간 협정보다 지역연합과의 협정 체결에 더 초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협상 체결 또한 진행하기 시작했음³¹⁾
 - 2006년 발표된 ‘글로벌 유럽전략(Global Europe Strategy, 이하 글로벌 유럽 전략)’에 따라 역외국과의 활발한 양자 FTA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글로벌 유럽전략에 따른 FTA 대상국의 선정은 ① 시장잠재력(경제규모 및 성장 잠재력) ② 무역장벽의 수준(관세 및 비관세장벽) ③ 경쟁국과의 협상 추진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음
 - 글로벌 유럽전략에 따라 한국, 인도, ASEAN, 메르코수르(Mercosur), 러시아, 그리고 GCC³²⁾가 EU의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선정되었음

31) 김홍중 외,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2. 13, pp. 33~35

32) 걸프협력회의로 사우디아아랍의 6개국에 의해 1981년 설립되었음

- EU는 2010년 발표된 ‘2020통상전략’(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 이하 2020통상전략)에 따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³³⁾
 - EU는 ‘2020통상전략’하에 무역 상대국의 경제성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FTA 협상을 추진하였음

- EU는 2015년 10월 ‘신통상투자전략’(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을 채택하였으며 본 전략에 따라 EU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기 체결된 FTA를 조속히 이행하고자 함³⁴⁾
 - 신통상투자전략의 주요 추진의 배경으로는 기 체결된 FTA의 이행뿐 아니라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협상의 투명성 강화, 양자 mega-FTA 추진을 통한 국제통상질서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이 있음

2. 무역 관련 협정 현황

- EU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이하 CU), FTA,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이하 EPA), 안정화 협정(Stabilisation Agreements, 이하 SA),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s, 이하 AA),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s)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음³⁵⁾
 - 관세동맹은 양국 간 관세를 철폐하고 공동 관세를 도입하는 형태임

33) 김홍중 외,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2. 13. pp. 33~35

34) 김홍중 외,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2. 13. pp. 33~35

35) EU집행위원회의 무역협정분류,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_partly-in-place(검색일자: 2018. 8. 13)

-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협정, 연합협정은 양국 간 관세를 양허 또는 철폐하는 형태임
-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은 양자간 경제 연합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뿐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이므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함

〈표 1-Ⅳ-1〉 EU 무역 관련 협정 발효 현황

관세동맹 및 관세관련 협정 (FTA, 경제협력협정, 연합협정 등)	발효일
EU-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FTA	1971년 1월 1일 발효
EU-스위스·리히텐슈타인 EEA(유럽경제지역)	1973년 1월 1일 발효
EU-아이슬란드 EAA(경제지역협정)	1973년 4월 1일 발효
EU-노르웨이 EAA(경제지역협정)	1973년 7월 1일 발효
EU-시리아 CA(협력협정)	1977년 7월 1일 발효
EU-안도라(관세동맹)	1991년 7월 1일 발효
EEA(European Economic Area)	1994년 1월 1일 발효
EU-터키(관세동맹)	1996년 1월 1일 발효
EU-Faroe Islands FTA	1997년 1월 1일 발효
EU-Palestinian Authority FTA	1997년 7월 1일 발효
EU-튀니지 AA(연합협정)	1998년 3월 1일 발효
EU-남아프리카공화국 EPA(경제협력협정)	2000년 1월 1일 발효
EU-모로코 AA(연합협정)	2000년 3월 1일 발효
EU-이스라엘 AA(연합협정)	2000년 6월 1일 발효
EU-멕시코 GA(Global Agreement)	2000년 7월 1일 발효(상품)/ 2000년 10월 1일 발효(서비스)
EU-마케도니아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안정화 및 협력협정)	2001년 6월 1일 발효(상품)/ 2004년 4월 1일 발효(서비스)
EU-크로아티아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안정화 및 협력협정)	2002년 3월 1일 발효(상품)/ 2005년 2월 1일 발효(서비스)

관세동맹 및 관세관련 협정 (FTA, 경제협력협정, 연합협정 등)	발효일
EU-산마리노 관세동맹	2002년 4월 1일 발효
EU-요르단 AA(연합협정)	2002년 5월 1일 발효
EU-칠레 AA(연합협정)	2003년 2월 1일 발효(상품)/ 2005년 3월 1일 발효(서비스)
EU-레바논 AA(연합협정)	2003년 3월 1일 발효
EU-이집트 AA(연합협정)	2004년 6월 1일 발효
EU-알제리 AA(연합협정)	2005년 9월 1일 발효
EU-알바니아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안정화 및 협력협정)	2006년 12월 1일 발효(상품)/ 2009년 4월 1일 발효(서비스)
EU-몬테네그로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안정화 및 협력협정)	2008년 1월 1일 발효(상품)/ 2010년 5월 1일 발효(서비스)
EU-CARIFORUM States EPA(경제협력협정)	2008년 11월 1일 발효
EU-코트디부아르 EPA(경제협력협정)	2009년 1월 1일 발효
EU-카메룬 EPA(경제협력협정)	2009년 10월 1일 발효
EU-세르비아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안정화 및 협력협정)	2010년 2월 1일 발효
EU-한국 FTA	2011년 7월 1일 발효
EU-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안정화 및 협력협정)	2015년 6월 1일 발효
EU-코소보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안정화 및 협력협정)	2016년 4월 1일 발효
EU-조지아 AA(연합협정)	2016년 7월 1일 발효
EU-몰도바 AA(연합협정)	2016년 7월 1일 발효
EU-(SADC: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리소토 EPA(경제협력협정)	2018년 2월 5일 발효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_in-place(검색일자: 2018. 8. 13);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world/>(검색일자: 2018. 8. 13); 한-EU FTA 포털, <http://www.fta.go.kr/fta/apply/1/>(검색일자: 2018. 8. 13)

- 현재 EU와 싱가포르 FTA, 에콰도르 AA, 베트남 FTA, 일본 EPA가 타결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파라과이, 필리핀 등과 EU의 FTA, AA가 협상 진행 중에 있음

〈표 1-Ⅳ-2〉 EU 무역 관련 협정 진행 현황

국가 및 협정내용	진행현황
아르헨티나 AA(연합협정)	2010년 5월 협상 재개
오스트레일리아 FTA	2018년 6월 협상 개시
바레인 FTA	1990년 협상 시작 후 2008년까지 유예
브라질 AA(연합협정)	2010년 5월 협상 재개
중국 투자협정(관세 양허 포함) (Investment agreement)	2013년 11월 12일 협상 개시
인도 FTA	2007년 협상 개시 후 최종회의 2013년
인도네시아 FTA	2016년 9월 1일 협상 개시
쿠웨이트 FTA	1990년 협상 개시 후 2008년까지 유예
말레이시아 FTA	2010년 10월 협상 개시 후 2012년 4월까지 협상 중단
뉴질랜드 FTA	2018년 6월 협상 개시
오만 FTA	1990년 협상 개시 후 2008년까지 유예
파라과이 AA(연합협정)	2010년 5월 협상재개
필리핀 FTA	2015년 12월 1일 협상 개시
카타르 FTA	1990년 협상 개시 후 2008년까지 유예
사우디아라비아 FTA	1990년 협상 개시 후 2008년까지 유예
태국 FTA	2013년 3월 1일 협상 개시 후 2014년 이후 협상 계획 없는 상태
UAE FTA	1990년 협상 개시 후 2008년까지 유예
미국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무역투자동반자협정)	2013년 협상 개시 후 2016년까지 협상 중지
우루과이 AA(연합협정)	2010년 5월 협상 재개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_being-negotiated(검색일자: 2018. 8. 13);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world/>(검색일자: 2018. 8. 13)

- 현재 EU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EPA는 일부 서명 상태로 보류되어 있으며 베트남과의 FTA는 최종 협정문 합의 후 서명 대기 중에 있음

〈표 1-IV-3〉 EU 무역 관련 협정 유예 현황

국가 및 협정내용	유예 현황
베닌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브루키나파소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브룬디 EPA(경제협력협정)	비서명, 협정 수정 중
카부베르드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감비아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기니아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기네비소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일본 EPA(경제협력협정)	2017년 12월 협정 종료 후 서명 대기 중
케냐 EPA(경제협력협정)	서명 및 비준 완료/모든 국가 동의 시 협정 일시적 적용 예정
리베리아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말리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니제르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나이지리아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르완다 EPA(경제협력협정)	서명 및 비준 완료/모든 국가 동의 시 협정 일시적 적용 예정
세네갈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시에라리온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싱가포르 FTA	EU사법재판소 opinion2/15에 따라 서명 대기 중
탄자니아 EPA(경제협력협정)	서명 및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토고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모리타니아 EPA(경제협력협정)	일부 서명
우간다 EPA(경제협력협정)	서명 및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베트남 FTA	2018년 7월 최종 문서 합의, 서명 대기 중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_pending(검색일자: 2018. 11. 19)

제2편 통관제도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법령

1. 통관행정 조직

가. 독일관세총국(General Customs Directorate)

1) 독일관세총국의 주요 역할

- 독일관세총국(General Customs Directorate)은 2016년 연방재무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고등 연방 조직으로 설립되어 독일 및 EU의 세수를 확보하고 독일 경제, 시민의 안전보호,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함³⁶⁾
 - 관세, 소비세, 교통세를 징수함
 - 마약거래, 불법복제, 밀수, 자금세탁, 테러 등 국제적인 조직범죄에 대처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함

36)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Aufgaben/aufgaben_node.html(검색일자: 2018. 7. 18)

- 불법고용 및 권력남용 등의 퇴치를 통해 국내 노동 시장을 보호함
 - 국경에서의 통제를 통해 멸종위기 종, 환경 및 소비자를 보호함
 - 대외무역 통제를 통해 무역, 및 경제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함
 - 기타 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함
- 특히 독일관세총국에서는 특정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할 시 부과되는 국세 및 소비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세는 관세총국 수익의 50%(2017년 기준 59억 3천만유로)를 차지하고 있음³⁷⁾
- 독일관세총국에서 징수하고 있는 소비세에는 알콜세, 커피세, 맥주세, 발포성 포도주 및 혼성주류세, 알콜팝스세(alcoholpops Expensive), 핵에너지세 등이 있음
 - 독일관세총국은 소비세 부과대상 품목의 국경 간 이동뿐 아니라 독일 내에서의 제조, 보관 및 사용을 감독하고 있음
 - 소비세 부과대상 품목의 경우 조세창고(Tax Warehouse) 간 e-VD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가 유예된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함³⁸⁾
- 그 밖에 교통세로 2011년부터 항공 유류세, 2014년부터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의 징수, 세관서비스 비용³⁹⁾의 부과 징수 또한 담당하고 있음

37)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Aufgaben/Einnahmen-fuer-Deutschland-und-Europa/Verbrauchsteuererhebung/verbrauchsteuererhebung_node.html(검색일자: 2018. 8. 1)

38)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Verbrauchsteuern/Grundsatzliche-Regelungen/Allgemeine-Einfuehrung/allgemeine-einfuehrung_node.html(검색일자: 2018. 8. 1)

39)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llkosten/zollkosten_node.html(검색일자: 2018. 8. 1)

2) 관세총국의 조직

- 관세총국은 2개의 중앙국과 7개의 전문국 등 총 9개의 하위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범죄 수사국과 교육 및 과학센터 또한 관세총국에 포함되어 있음⁴⁰⁾
 - 관세총국의 총책임자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실제 업무를 이끌고 있으며 9개 하위국의 국장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⁴¹⁾
 - 데이터보호관(Data Protection Officer), 기회균등관(Equal Opportunity Officer), 관리팀이 조직도상 대통령 및 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리팀의 경우 각 부서의 업무관리, 내부감사, 언론관계,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음⁴²⁾

- 인사·조직·해양 업무국과 가사·중앙정보·산업안전보건·방사선방호·기술·지원국은 독일관세총국의 모든 부서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기술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국(Central Directorate)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⁴³⁾

- 국I(Directorate I)에 해당하는 인사·조직·해양 업무국(Personnel, Organization and Maritime Tasks)은 관세행정의 조직과 관련한 기본적인 운영을 비롯하여 관세행정의 조직 관련 문제를 통제하는 것을 담당함⁴⁴⁾
 - 부서(Department) A(인사부)⁴⁵⁾는 관세행정 인사 관련 최고기관으로서 독일관

40)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generalzolldirektion_node.html(검색일자: 2018. 7. 26)

41)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Leitung/leitung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42) 정재호·노영예·이재선, 『주요국의 관세행정조직의 기능 및 역할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p.98

43)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Zentraldirektionen/zentral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18. 7. 26)

44)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Zentraldirektionen/zentral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18. 7. 26)

45)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상 기재된 명칭과 조직도상 명칭이 다른 부분이 있어 두 가지(예: 부서 A, 인사부)를 혼용하여 작성하였음

세총국의 인사 관련 문제뿐 아니라 지역의 인사 문제와 관련된 법적·기술적 지식을 감독함

- 인사부서는 특정 채용방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 인재개발, 경력법(Career law) 개발, 입찰관련 통제 및 실행 등이며 평등법과 관련된 문제, 중증의 장애인 및 보건 관리 등에 대한 부분 또한 담당하고 있음

○ 부서 B(조직부)⁴⁶⁾는 기본적인 운영조직, 운영방향, 관세행정상 조직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있음

- 특정 직업관리, 인사평가, 인사통제, 인적자원 계획, 정보 및 지식관리, 조직구조 개발, 조직 조사, 부서배치 등의 직무관리업무를 수행함
- 또한 조직관련 최고 기관으로서 지역적 수준의 조직문제와 관련 법, 기술 감독 등의 업무를 포괄하여 담당하고 있음

○ 부서 C(해양업무부)⁴⁷⁾는 해양과 관련한 세관의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II(Directorate II)에 해당하는 가사·중앙정보·산업안전보건·방사선방호·기술·지원국은 관세 행정과 관련된 IT, 기타 관련 기술 및 안전 관련 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⁴⁸⁾

○ 가사·중앙정보·산업안전보건·방사선방호부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방사선 감시, 중앙 정보 관리, 안전 등을 담당하며 정보기술부는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기술관련 품질확인, 부서의 IT 관련 요청확인, 포털관리 등도 담당하고 있음

○ 연방 재무부 및 회계 시스템을 위한 역량센터는 연방의 중앙금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46)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상 기재된 명칭과 조직도상 명칭이 다른 부분이 있어 두 가지(예: 부서 A, 인사부)를 혼용하여 작성하였음

47)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상 기재된 명칭과 조직도상 명칭이 다른 부분이 있어 두 가지(예: 부서 A, 인사부)를 혼용하여 작성하였음

48)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Zentraldirektionen/zentral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18. 7. 26)

- 다양한 부서의(Department) 활동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국(Directorate)은 앞서 언급한 중앙의 2국을 포함하여 총 9개 특별국(special Directorate)으로 이루어져 있음⁴⁹⁾
 - 3국(Directorate III)-일반세법 관리국(General Taxation and Controls)
 - 4국(Directorate IV)-소비세·교통세·심사국(Excise Duty and Traffic Tax Law and Examination Service)
 - 5국(Directorate V)-일반관세법국(General Customs Law)
 - 6국(Directorate VI)-물품국경 이동·특별관세법국(Trans frontier Movement of Goods and Special Customs Law)
 - 7국(Directorate VII)-재정관리·불법노동국(Financial Control Illicit Labor)
 - 8국(Directorate VIII)-관세범죄 수사국(Customs Criminal Office)
 - 9국(Directorate IX)-교육·과학센터(Education and Science Center)
 - 각국은 원칙적인 경우와 개별적인 경우에 따른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입안하거나 현재 적용 중인 판례를 검토하는 데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일반세법 관리국은 일반세법의 집행, 조세형벌, 행정벌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세·교통세·심사국은 알코올세, 커피세, 담배세를 비롯한 에너지세, 교통세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일반관세법국에서는 수출입과 관련된 허가, 세금 징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물품국경 이동·특별관세법국은 특혜 원산지, 대외무역 등을, 재정관리·불법노동국은 불법노동조직의 조사 및 심사, 최소근로조건 준수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음

49)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Fachdirektionen/fach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18.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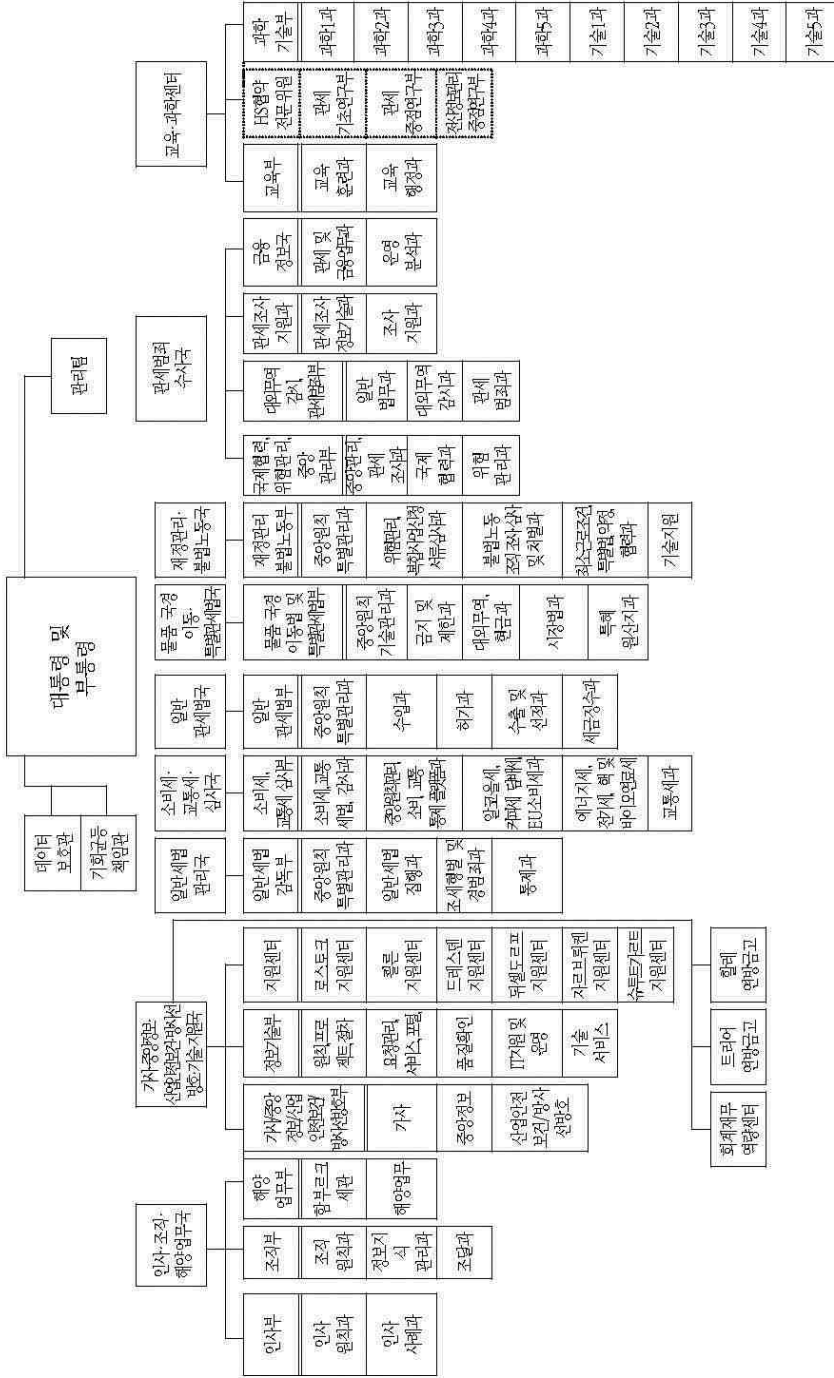
- 관세범죄 수사국은 관세범죄 조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관세총국이 설립되면서 관세청의 독립적인 중앙기관이 되었으며 독일세관 조사 지원본부로 중범죄 및 조직범죄의 조사 및 기소, 범죄 방지 등을 담당하고 있음⁵⁰⁾
 - 기소 가능한 형사범죄뿐 아니라 행정위반 또한 조사하고 있음
 - 조사 활동은 담배, 마약 관련 범죄, 비밀위반, 관세관련법, 해외무역법 위반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이루어지며 특정 사건의 경우 독자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관세범죄 수사국은 베를린, 드레스덴, 에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하노버, 뮌헨 및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8개의 세관 조사 사무소(office)를 감독함

- 교육·과학센터는 연방 재무행정의 중앙교육기관으로 독일관세총국에 통합되어 있으며 20개의 사무소와 훈련센터에서 세관 직원 교육과 훈련, 과학기술 지원, 마약 탐지견 및 탐지견 관리자 훈련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⁵¹⁾
 - 교육부는 중등·고등과정으로 구분하여 연방 재무행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부는 특히 품목분류, 금지 및 제한물품, 소비세법과 관련한 물품의 견본 분석, 전문가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함
 - 포츠담에 위치한 센터에서는 특히 연방 재무행정과 관련한 언어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50) 정재호·노영예·이재선, 『주요국의 관세행정조직의 기능 및 역할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p. 99

51)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Fachdirektionen/fach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18. 7. 31); 정재호·노영예·이재선, 『주요국의 관세행정조직의 기능 및 역할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p. 99

[그림 2-1-1] 독일관세총국 조직도(2018년)



자료: 정재호·노영애·이재선 『주요국의 조세행정조직의 역할 및 기능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P.100 및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SharedDocs/Downloads/DE/Organisationsplaene/GZD/organigramm_gzd_1.pdf?__blob=publicationfile&y=10(검색일자: 2018. 9. 12)

나. 독일관세총국의 조직 개편

- 기업 및 시민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행정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2016년 1월 기존 5개의 연방재무국(Federal Finance Offices)이 폐지되고 고등 연방당국으로서 독일관세총국이 설립됨⁵²⁾
 - 5개의 연방재무국과 교육 및 과학 서비스 센터가 독일관세총국으로 통합되었음
 - 독일관세총국이 기존 세관당국의 행정 업무와 함께 재무부의 세관 및 소비세 부서의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었음
 - 2000년대 이후로 관세행정의 과업 범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음
 - 조직 개편에 따라 각 부서의 조직, 인사, 예산, 교육, 훈련, 정보기술 등의 업무를 중앙 2개국에서 총괄하여 통제하게 되었음

-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재무부 산하의 자금거래 조사기관이 독일관세총국 산하의 금융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Unit, 이하 FIU)으로 통합되었음⁵³⁾
 - 2012년 이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report)가 증가함에 따라 법 집행당국(경찰, 검사)에 큰 부담이 되었음
 - 또한 자금거래 조사기관 및 법 집행 당국이 이원화되어 있어 보고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현재 FIU는 관세총국 관세범죄국의 D부서에 위치한 행정당국(administrative authority)임
 - FIU는 D1, D2의 두 부서로 구성되어 D1은 분석의 원칙, 관련 정책, 분석의

52) 독일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Monatsberichte/2016/03/Inhalte/Kapitel-3-Analysen/3-4-neuorganisation-zollverwaltung.html>(검색일자: 2018. 8. 1)

53)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FIU/Ueber-die-FIU/ueber-die-fiu_node.html(검색일자: 2018. 8. 1)

착수, 다른 분야와의 협력, 전략적 분석, 거래 유형 분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D2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특징 분석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FIU에서는 자금세탁법(Money Laundering Act)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표적화하여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⁵⁴⁾
- 그러나 FIU는 행정당국이므로 자료에 대한 분석만 시행하며 범죄조사는 검사 혹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음⁵⁵⁾

다. EU의 조직

- EU이사회(European Council),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의회(European Parliament), EU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U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기구이며 다음의 하위 5개 기관이 핵심기구를 보완하고 있음⁵⁶⁾
- EU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는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유럽시민의 입장을 핵심기구에 전달하고 있음
- EU지역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는 지역적 다양성 존중 및 지역발전 촉진을 핵심기구에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EU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통화정책을 관리하고 있음
- EU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은 EU기구의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고 있음
- EU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은 EU 국가들을 위한 개발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54)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FIU/Fragen-Antworten/fragen-antworten_node.html(검색일자: 2018. 8. 1)

55)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Der-Zoll/FIU/Fragen-Antworten/fragen-antworten_node.html(검색일자: 2018. 8. 1)

56)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54/contents.do(검색일자: 2018. 8. 16)

-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EU정상회의 상임의장, EU 회원국 정상, EU 집행위원장,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4회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정부 간 회의개최 기관임⁵⁷⁾
 - EU 회원국의 정상이 회의에 모임으로써 사실상 최고의 정책결정 기구로 공동체의 법, 제도, 회원국 문제, 예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있음

- EU이사회(European Council)는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각료급 인사로 구성되어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심의·의결하며 규정, 규칙, 결정 등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음⁵⁸⁾
 - 또한 정상회의의 규칙에 따라 공동외교안보정책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있음
 - EU이사회는 EU집행위원회에 대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위임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각 EU 회원국당 1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EU 전체의 이익을 위한 EU 정책의 입안, 이행, 예산관리, 집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⁵⁹⁾
 - EU집행위원회는 EU이사회가 심의·결정하는 모든 안건을 입안하며 EU 5대 기금을 관리·운영함(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 사안에 대해 EU이사회에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57)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be-ko/wpge/m_7585/contents.do
(검색일자: 2018. 8. 16)

58)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be-ko/wpge/m_7585/contents.do
(검색일자: 2018. 8. 16)

59)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be-ko/wpge/m_7585/contents.do
(검색일자: 2018. 8. 16)

- 대외협상에서 EU를 대표하며 제3국 및 국제기구에 EU대표부를 파견하고, EU 이사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대외협상을 실행함
- EU의회는 각 EU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질의권,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임명동의권 및 불신임권, 입법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음⁶⁰⁾
 - EU집행위원회 및 EU이사회를 상대로 서면 또는 구두로 질의가 가능함
 -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정상회의 후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면 EU집행위원회는 이를 참고로 매년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EU집행위원 전체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하나 개별 EU집행위원에 대한 불신임은 불가능함
 - EU의 옴부즈맨 임명권을 가지고 있음
 - 예산 분야에서 EU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EU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각국의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조약 및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해 EU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에서 선출함
 -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EU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따라 임명하게 됨
 - 기업에 적용되는 경쟁법의 적법성 판단 및 반덤핑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하는 1심 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를 EU사법재판소의 하급심으로 두고 있으며 1심 재판소는 EU 회원국에서 지명한 28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음

60)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be-ko/wpge/m_7585/contents.do
(검색일자: 2018. 8. 16)

〈표 2-1-1〉 EU 주요 기구 및 역할

핵심 기구	소재지	구성	주요 역할
EU 정상회의	브뤼셀	각국 정상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리스본조약으로 공식화 - 임기 2.6개월의 정상회의 상임의장 선출
EU이사회	브뤼셀 및 룩셈부르크	각국 각료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EU 최고 입법 및 주요 정책결정기구 - 의장국 6개월마다 교대
EU집행위원회	브뤼셀	집행위원(EU 회원국당 1명)	- 집행기관 - EU 법안 제안권 - 공동체 이익 대변
EU의회	스트라스부르	- EU 회원국 인구 비례로 의원수 결정 - 출신 국별이 아닌 정치 노선에 따라 정치그룹 구성 (직접 선거, 5년 임기)	- 입법참여 및 자문감독 기관 - EU이사회와 90여 개 분야에서 공동결정권(co-decision)행사 - 예산 분야에서도 EU이사회와 동등한 권한 행사 - EU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권 및 집행위원, 집행위원장, 고위대표, 집행위원단 등 선출
EU사법재판소	룩셈부르크	법관 (EU 회원국당 1명, 임기 6년)	- EU 법규 해석권 - EU 조치의 적법 여부 판결권
EU회계감사원	룩셈부르크	감사위원 (EU 회원국당 1명, 임기 6년)	- EU 회계감사 - EU의회의 재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 시 의견 제출

자료: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be-ko/wpge/m_7585/contents.do (검색일자: 2018. 8. 16)

□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EU 회원국의 공통적인 세관의 임무(mission)가 신설되었으며 세관의 임무는 EU의 국제 무역을 감시하는 책임을 가지고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을 실시하는 것임⁶¹⁾

61)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1/view.do?seq=1026722&srchFr=&srchTo=&srchWord=관세법&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18. 9. 3)

- 또한 세관의 임무는 EU의 공통적인 무역정책,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공통 정책 실행 및 전체적인 공급망 안전(supply chain security)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EU 세관은 특별히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도록 함
 - EU 및 EU 회원국의 재정 보호
 - 합법적인 영업활동의 지원 및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으로부터 EU 보호
 - EU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을 보호
 - 세관의 통제 및 원활한 합법적 무역간 적절한 균형의 유지

2. 관계법령

가. EU 기본법

1) EU 기본법의 변천

- 1957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태리 등 유럽 6개국에 의해 로마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가 설립되었음
- 로마조약은 EEC 조약이라고도 불리며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의해 1958년 1월 1일 발효되었음
- 로마조약은 EEC라는 단일공동시장을 1969년 말까지 완성할 것을 목표로 삼아 지역 내의 노동과 자본 이동의 자유, 그리고 농업·운수·통상·금융·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공동정책을 수립하여 밀도 높은 경제통합을 지향하였음
-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이후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EU)의 전신이 되었음

- 1993년 11월 1일 마하트리히트조약이 발효하면서 EU가 설립되고, 기존의 EEC조약이 EC조약으로 명칭이 개정됨
 - 마하트리히트조약은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 간에 체결된 유럽연합 창설에 관한 조약으로서 로마조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일한 제도적 틀을 통해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안보, 경제개발정책 등 대외이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1995년 암스테르담조약의 발효와 2003년 니스조약의 발효에 의해 EU조약과 EC조약 일부 내용이 다시 개정되었음
 - 암스테르담조약은 마하트리히트조약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 가중다수결에 의한 EU이사회의 정책결정 절차 도입, EU의회의 법률안 수정 및 저지 권한을 강화하고 EU사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본권을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니스조약에서는 EU의 확대와 내부기구 개혁, EU의회 의석 재할당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리스본조약은 2009년 12월 1일 발효한 기본조약으로 이 조약의 공식 명칭은 ‘EU조약 및 EC 설립 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임⁶²⁾
 - 브뤼셀 EU이사회는 2004년 6월 유럽헌법조약을 채택하기로 공식 합의하였으며 모든 회원국들의 헌법 규정에 따라 비준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2006년 11월 1일자로 유럽헌법조약을 발효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그 비준이 부결되었으며 2005년 6월 브뤼셀 EU이사회가 ‘유럽헌법조약 비준 무기한 연기’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유럽헌법은 사실상 폐기되었음
 - 리스본조약은 유럽헌법조약의 비준에 대한 무기한 연기 선언이 있고 나서 그 혼

62) 채형복의 유럽연합: EU 톨아보기, 통합을 향한 유럽·유럽인의 도전과 실패, <http://www.newsmi.n.co.kr/news/19978/>(검색일자: 2018. 7. 23)

란과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니헌법’ 형태로 채택되었음

- 리스본 조약은 ① EU조약 및 EC설립조약의 개정 ② 최종 규정 ③ 의정서 ④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규정은 리스본조약 제1조와 제2조로, 제1조에 의해 기존 EU조약이, 그리고 제2조에 의해 EC조약이 개정되었음
- 기존 EU조약은 조약명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EU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으로 불리며 기존 EC조약은 그 명칭이 바뀌어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으로 불리게 되었음
- EU기능조약의 명칭이 완전히 바뀐 이유는 EU가 기존의 EC를 대체·계승함으로써 이제 EC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본 조약들은 EU의 대외무역, 통상정책, 관련 법 및 규정, 규칙 제정의 근간이 되고 있음(예: 국제통상협정의 협상 및 체결 절차는 TFEU 제21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 있음)

2) EU 기본법의 체계

- EU의 법은 존재형식에 따라 1차 법과 2차 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⁶³⁾
 - EU의 1차 법은 각 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기본조약)과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이 있으며 전자는 성문법⁶⁴⁾이고, 후자는 불문법⁶⁵⁾으로 볼 수 있음
 - ECSC·EEC·Euratom을 설립하는 조약인 마스트리히트조약·암스테르담조약·니스조약 및 현재의 리스본조약 등 기본조약은 성문법에 해당됨
 - 비례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 등은 불문법으로써 EU사법재판소(ECJ)의 판례에

63) 채형복의 유럽연합: EU 훑어보기, 리스본조약, <http://www.newsmn.co.kr/news/20436/>(검색 일자: 2018. 7. 23)

64)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65) 문서(文書)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으로서 일정한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법

- 따라 형성되므로 성문법인 기본조약과는 달리 확정된 목록이 없다는 특징이 있음
- EU의 2차 법은 기본조약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다섯 종류로 규정 (regulation), 규칙(directive), 결정(decision)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권고 (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 하지만 법적 구속력 여부와 상관없이 다섯 가지 2차 법 모두 결정이 채택되었을 시 EU 관보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함

나. EU 관세법

- 1958년 설립된 EEC는 FTA로 시작하였으며 약 10년 후인 1968년 관세동맹 (Customs Union) 단계로 진입하였음
- EU 관세동맹은 1992년 제정된 공동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에 따라 역내시장에서 회원국 간 수출입 관세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을 폐지하고, 제3국에 대해 공동관세율(Common Customs Tariff)을 적용하였음
-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EU 관세법의 토대는 1992년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된 Council Regulation(EEC) 2913/92 관세법임⁶⁶⁾
 - 1993년 제정돼 역시 수차례 개정돼 온 시행규정인 Customs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EEC) No. 2454/93이 관세법의 시행을 보조하는 규정의 토대가 되었음
 -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 가속화와 이를 둘러싼 세관행정 환경 변화로 EU는 2008년 6월 세관현대화 법률(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 및 발효하였음

66) 신관세법 개요 안내, https://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czdQS5FFxv7jLh2GhTdyGT1P5k8C48DQ0CrGHtCp2LgHnxpdKK1!1515644591?bbsId=BBSMSTR_1310&nttId=117&layoutMenuNo=22759&siteId=foreign&searchCtgr=&searchCnd=&searchWrd=&recordCountPerPage=10(검색일자: 2018. 7. 25)

- 그러나 EU 회원국 세관당국과 수출입 기업체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비, 세관절차의 간소화,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등을 사유로 그 적용이 연기되었으며 위 2개의 법령으로 세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2013년 10월 30일 EU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세관의 현대화 및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기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을 대체할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 이하 UCC)을 시행하게 되었음
 - EU집행위원회는 관련 기관, 수출입 기업체 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자문 절차를 거쳤으며 EU이사회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2013년 10월 10일 Regulation(EU) No. 952/2013을 UCC로 EU 관보에 공표하였음
 - 이행규정과 같은 하위규정의 제정, 전산시스템 개발 및 도입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7월 28일 「UCC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을, 2015년 11월 24일 「UCC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두 법 모두 「UCC」의 내용을 보충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⁶⁷⁾
- 「UCC」에서는 해당조항(예: 제2조 세관신고와 EU내 환적 관련 절차, 제7조 공통 데이터 조건, 제10조 EU역외설립 경제운영인 등 총37개 조항)에서 EU집행위원회에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을 통해 보충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UCC」에서는 해당조항(예: 제8조 정보교환·저장 관련 절차, 제11조 경제운영인 등록 책임자, 제17조 회원국 간 정보교환체계의 개발·유지 등 총 43개 조항)에서 EU집행위원회에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에 의해 관련 절차 등을 구체화(specify)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67)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102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9(검색일자: 2018. 11. 20)

- EU집행위원회는 UCC 발효일인 2016년 5월 1일부터 UCC가 요구하는 전자세관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IT시스템 도입 시(2020년 12월 13일 이전) 까지 적용할 경과조치 등을 규정한 전환위임법(Transitional Delegated Act)을 채택하였음

□ 「UCC」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관세법 및 통관절차 모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업에 법적안정성, 통일성을 제공하고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관세 관련 행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
- 통관규정, 절차를 단순화시켜 보다 효율적인 통관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완전한 전자화로 EU 회원국 세관 간 정보교환이 전자적으로 가능한 통관행정 환경을 이루고자 함
- 종합인증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위한 신속통관절차를 강화하도록 함

〈표 2-1-2〉 「UCC」 목차 구성

편(Title)	장(Chapter)	절(Section)
제1편 총칙	제1장 관세법의 적용, 미션, 정의의 범위	
	제2장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권리 및 의무	제1절 정보 규정 제2절 세관 대리 제3절 관세법 적용과 관련된 결정 제4절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5절 벌칙 제6절 이의제기 제7절 물품통제 제8절 문서 및 기타 정보보호, 부과금 및 비용
	제3장 통화전환 및 시간제한	

편(Title)	장(Chapter)	절(Section)
제2편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세금을 결정하는 요소 및 기타 물품무역의 평가요인	제1장 공통관세율 및 품목 분류	
	제2장 원산지	제1절 비특혜원산지 제2절 특혜원산지 제3절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제3편 관세채무 및 담보	제1장 관세채무의 발생	제1절 수입 시 관세채무 제2절 수출 시 관세채무 제3절 수출입 채무에 적용되는 공통 조항
	제2장 잠재적으로 혹은 현재 존재하는 관세 채무에 대한 담보	
	제3장 수출입 관세의 경감, 환급, 상환, 지불, 면제	
	제4장 관세채무의 소멸	
제4편 연합관세지역으로 반입된 물품	제1장 수입신고	
	제2장 물품의 도착	제1절 연합관세지역으로의 물품반입 제2절 물품의 신고, 검사, 하역 제3절 물품의 일시 보관
제5편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의 확인, 반출, 처분	제1장 물품의 통관 상태	
	제2장 물품의 통관절차 적용	제1절 총칙(General Provision) 제2절 세관신고기준 제3절 간소화된 세관신고 제4절 모든 세관 신고에 적용되는 규정 제5절 기타 간소화된 세관신고
	제3장 확인 및 물품반출	제1절 확인 제2절 물품반출
	제4장 물품의 처분	

편(Title)	장(Chapter)	절(Section)
제6편 수입관세 감면 및 역내운송허가	제1장 역내운송 허가	
	제2장 관세의 감면	제1절 반품 제2절 바다낚시 및 해양생물
제7편 특별통관절차	제1장 일반규정	제1절 역내, 역외 환적 제2절 연합 내 환적
	제2장 환적	
	제3장 보관	제1절 일반규정(Common Provision) 제2절 보세창고 제3절 자유지역
	제4장 특별용도	제1절 일시허가 제2절 최종용도
	제5장 가공	제1절 총칙 제2절 역내가공 제3절 역외가공
제8편 연합국 영토 밖으로 반출되는 물품	제1장 물품수출 전 형식 제2장 물품수출 시 형식 제3장 수출 및 재수출 제4장 수출 사전신고 제5장 재수출 통지 제6장 수출관세의 감면	
제9편 전자통관시스템, 간소화, 대표권한 위원회 절차와 최종 규정	제1장 전자통관시스템의 개발 제2장 간소화된 관세법의 적용 제3장 위원회 절차 및 대표 권한 제4장 최종 규정	

자료: 「UCC」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UCC」 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통관 편의확대, 관세평가 규정개정,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개정, 품목분류 통일성 강화, 통관보증 확대 적용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해당 장에서 다룰 것임

〈표 2-1-3〉 「UCC」 개정 주요 내용

	UCC 주요 개정	UCC 개정 내용
1	EU기준 충족한 수출입업체에 대한 통관상의 편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O C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 자신의 장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간편 세관신고방법(Entry in Declarant's Record) 사용 가능 • 관세액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 2020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이후 AEO C는 전자신고로 수입지, 수출지와 상관없이 한 세관에서 통관 업무 처리가 가능함)
2	관세평가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판매원칙(First Sales Rule)을 최종판매원칙(Last Sales Rule)으로 변경하여 EU시장에 풀리기 직전 지불한 금액을 관세평가의 기초금액으로 산정함
3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I 유효기간이 교부 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수입업체가 수입 신고 시 BTI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EU 역내 행정기관뿐 아니라 수입업체 또한 구속
4	상품품목분류 통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국 간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의 품목분류 방식이 다를 시 회원국들의 전문가 및 EU집행위원회가 참여하여 특별위원회(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Committee)에서 단일 세 번을 결정하도록 함
5	원산지 규정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 대우 요청 시 특정국 관세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대신 상품수출자 자신의 확인서를 사용해야 함 -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에 대해 WTO 원산지 규정 협약에 따라 원산지조회프로그램(Harmonized Working Programme)하에 제정된 List Rules를 일부 수용하였음
6	통관보증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통관절차에서 현존 또는 잠재적 관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통관보증이 요구됨
7	특별 통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통관절차 분류개편 (통과운송, 보관, 특정사용, 가공) - 보세창고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허용 - 역내가공물품의 수입 관세납부 유예를 위한 역내가공물품 재수출 요건 폐지 - 역내가공물품의 EU역내 유통을 위한 추가 납부 이자(Compensatory Interest) 폐지

자료: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장, 「EU통관환경의 주요내용과 유의점」, 『FTA TRADE REPORT Vol.2』, 2016. 6.

- 무역과 관련된 법령은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⁶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외무역, 금융거래, 개인정보, 시장조달, 소비세, 교통세, 공급, 원산지, 금지 및 제한물품, 협정 등 내용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음

68)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Home/home_node.html-> Regulation(검색일자: 2018. 8. 3)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1. 관세의 과세요건

가. 개요

- 관세의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이행·소멸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관세의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의미함
 - 관세의 4대 과세요건은 ① 과세물건 ② 과세표준 ③ 납세의무자 ④ 세율로 구성됨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관세채무(customs debt)는 「EU 신관세법(UCC)」상 용어로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수출입관세를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채무를 의미함

- 독일의 조세에 관한 통칙법인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상 관세(Zolle)는 수입세(Einfuhrabgaben)와 수출세(Ausfuhrabagen)를 포괄하는 개념임⁶⁹⁾
 - 「조세기본법」상 조세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69) 「독일 조세기본법」 제3조 제3항

나. 과세물건

-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물건이라고 함
- 「UCC」 제77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역외 물품(Non-Union goods)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물건이 수입물품임을 명시하고 있음⁷⁰⁾
 - 자유유통(Free Circulation)을 위한 반출
 - 수입관세가 부분적으로 면제된 일시 수입
- 원칙적으로 관세채무는 관세신고를 수리할 당시에 발생함⁷¹⁾
 - 다만 예외적으로 위법하게(Non-compliance)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물품이 반입되었을 때 발생함⁷²⁾

다. 납세의무자

-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신고인(declarant)이며, 간접 대리인을 통한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⁷³⁾
 - 신고인이란 세관(통관)신고인, 일시 보관 신고인, 입항 개괄신고인, 출항 개괄신고인, 재수출 신고인, 재수출 통보인을 의미함⁷⁴⁾
- 예외적으로 위법하게(Non-compliance)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음⁷⁵⁾

70) 「UCC」 제77조 제1항

71) 「UCC」 제77조 제2항

72) 「UCC」 제79조 제2항

73) 「UCC」 제77조 제3항

74) 「UCC」 제5조

75) 「UCC」 제79조 제3항

-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 의무가 불이행된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자 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의무불이행에 가담한 자
 - 의무불이행 해당물품을 취득하거나 보관한 자 또는 그러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수령할 당시 관세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자
- 하나의 관세채무에 대해 여러 명이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관세채무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음⁷⁶⁾

라.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임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율을 종가관세율,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율을 종량관세율이라고 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와 통관비용을 포함한 수입 시점의 가액으로 관세가액(customs value)임⁷⁷⁾

마. 관세율⁷⁸⁾

- 독일에서 특정 재화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EU 공동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에 근거하고 있음

76) 「UCC」 제84조

77)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78)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Duties-and-taxes/Normal-customs-clearance/Rate-of-duty/rate-of-duty_node.html(검색일자: 2018. 6. 11)

- 각각의 개별 세번(tariff heading)은 관세율을 구성하며, 이러한 세율은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음
- 관세율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고려할 때, 종가관세와 특정관세 그리고 혼합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종가관세(ad valorem duties)의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정의된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 특정관세(specific duties)의 경우 무게, 면적, 부피, 알코올 함량 등과 같은 특정 매개 변수(parameter)를 기준으로 산정
 - 혼합세(mixed duties)의 경우 종가관세와 특정관세의 혼합
- 제3국의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증가세와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로 구성되어 있음
 - 특혜관세율 및 잠정감면세율 그리고 쿼터와 같은 특별관세율은 적용 조건이 충족되는 한 적용되어야 함
- 한편 관세율 결정 관련 정보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전자 관세율표(EZT-Online)의 경우 해당 사이트(http://auskunft.ezt-online.de/ezto/Welcome.do;jsessionid=_Yi3t99XmFrcYNgRrDkE0G9800_bWuBjqmr0PM3J4JjCRjdcM_0X!-1041940049)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 EU공동체통합관세율표(TARIC)의 경우 해당 사이트(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20en)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가. 관세의 확정방식

1) 신고납부제도(관세채무의 신고)

- 「UCC」 제77조에 따르면 관세채무는 수입신고수리 시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⁷⁹⁾
 - 자유지역(free zone)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세관 절차를 따르는 모든 물품은 특정한 절차에 적합한 세관신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신고납부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UCC」에 따라 표준신고와 간이신고 그리고 기타 간이신고, 모든 세관신고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구분함
 - 상기 기타 간이신고에서는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과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entry in the declarant's records)이 있음

가) 표준신고

- 표준신고(Standard customs declarations)의 내용에는 물품이 신고된 세관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⁸⁰⁾
 - 「UCC」 제162~165조는 표준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상기 표준신고의 증빙서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신고된 물품의 세관절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세관신고가

79) 「UCC」 제77조 제2항

80) 「UCC」 제162조

접수된 시점에 신고인이 소유해야 하며, 이는 세관의 처분을 받음⁸¹⁾

- 증빙서류는 EU 관련 법률이 필요하거나 세관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관에 제공되어야 함⁸²⁾
- 특정한 경우 경제운영인은 세관이 승인할 때 증빙서류를 작성할 수 있음⁸³⁾

나) 간이신고

- 세관은 특정인에 대해 세관절차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명세의 일부와 증빙서류를 생략하는 간이신고를 허가할 수 있음⁸⁴⁾
 - 「UCC」 제166~169조는 간이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간이신고의 정기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⁸⁵⁾
- 간이신고 또는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의 경우 신고인은 특정한 기한 내에 관할 세관과 관련된 세관절차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보충신고를 해야 함⁸⁶⁾
 - 간이신고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는 신고인이 소유해야 하며, 특정한 기한 내에 세관당국의 처분을 받음
 - 보충신고는 일반적, 주기적 또는 개괄적인 특징을 지님
- 상기 보충신고 의무는 다음의 경우 면제될 수 있음⁸⁷⁾
 - 보세창고 절차하에 물품이 장치된 경우
 - 기타 특정한 경우

81) 「UCC」 제163조 제1항

82) 「UCC」 제163조 제2항

83) 「UCC」 제163조 제3항

84) 「UCC」 제166조 제1항

85) 「UCC」 제166조 제2항

86) 「UCC」 제167조 제1항

87) 「UCC」 제167조 제2항

60 제2편 통관제도

- 다음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세관은 보충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음⁸⁸⁾
 - 간이신고가 통계적 한계치 이하의 가치 및 수량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 간이신고가 세관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간이신고가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상기 간이신고 또는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과 보충신고는 간이신고가 수리된 날과 물품이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된 날에 각각 발효되며, 단일하고 불가분의 수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⁸⁹⁾
- 한편 허가에 부합하여 보충신고가 제출되는 장소는 세관신고가 제출된 곳으로 간주됨⁹⁰⁾

다) 기타 간이신고 제도

- 기타 간이신고 제도에는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과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entry in the declarant's records)이 있음
 - 「UCC」 제179~181조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UCC」 제182~184조는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중앙집중식 통관 방식의 경우 세관당국은 신청 시 그 신청인이 설립된 장소의 관할 세관사무소로 다른 세관사무소에서 제시된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⁹¹⁾

88) 「UCC」 제167조 제3항

89) 「UCC」 제167조 제4항

90) 「UCC」 제167조 제5항

91) 「UCC」 제179조 제1항

- 허가의 요건은 세관신고가 제출되고 그 물품이 세관당국의 책임하에 세관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음
 - 상기 허가 신청인은 세관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을 받은 경제운영인으로 한정함⁹²⁾
 - 세관신고가 제출된 세관사무소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함⁹³⁾
 - 관련 세관절차에 따라 물품의 반입을 감독
 - 당해 신고와 입증서류의 심사, 신고인에게 다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세관신고의 확인을 위한 세관통제의 수행
 - 정당한 경우 물품이 제시된 세관이 세관신고의 확인을 위한 물품의 검사, 물품의 분석과 정밀검사를 위한 샘플의 채취 등의 세관통제를 수행하도록 요청
 - 관세채무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수출 관세의 회수를 위한 관세수속을 수행
 - 상기 두 개의 관련 세관은 세관신고의 확인과 물품의 반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야 함⁹⁴⁾
 - 물품이 제시된 세관은 세관통제를 수행해야 하며, 세관신고가 제출된 세관으로 통제의 결과를 제공해야 함⁹⁵⁾
 - 세관신고가 제출된 세관은 다음의 결과를 고려하여 물품을 반출시켜야 함⁹⁶⁾
 - 세관신고 확인을 위한 자가 통제의 결과
 - 세관신고의 확인을 위해 물품이 제시된 세관에 의해 수행되는 통제 및 EU 관세영역으로 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통제의 결과
-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의 경우 세관은 특정인이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관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⁹⁷⁾

92) 「UCC」 제179조 제2항

93) 「UCC」 제179조 제3항

94) 「UCC」 제179조 제4항

95) 「UCC」 제179조 제5항

96) 「UCC」 제179조 제6항

97) 「UCC」 제182조 제1항

62 제2편 통관제도

- 다만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관신고가 제출될 때 세관당국이 신고인의 전자시스템에서 신고의 명세를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세관신고는 물품이 장부에 기재된 때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⁹⁸⁾
- 세관당국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물품이 세관에 제시되어야 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음⁹⁹⁾
 - 신고인이 세관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을 받은 경제운영인의 경우
 - 관련 물품의 성질과 흐름이 상당히 보증되고 세관당국에 의해 알려진 경우
 - 감독하는 세관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경우
 -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장부에 기재되는 시점에 물품이 더 이상 금지나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그러나 감독세관은 특정한 상황에서 물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물품의 반출이 허용되는 조건은 허가서에 규정되어야 함¹⁰⁰⁾

라) 모든 세관신고에 적용되는 규정

- 모든 세관신고에 적용되는 조항에는 세관신고의 제출, 물품을 제시하기 전 세관신고의 제출, 세관신고의 수리 및 수정, 세관신고의 무효화 등이 있음
 - 「UCC」 제170~176조는 모든 세관신고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함
- 모든 세관신고에 적용되는 제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세관신고는 신고된 물품에 대한 세관절차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신고인은 신고된 물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¹⁰¹⁾

98) 「UCC」 제182조 제2항

99) 「UCC」 제182조 제3항

100) 「UCC」 제182조 제4항

101) 「UCC」 제170조 제1항

- 신고인은 EU 관세영역에 설립되어야 함¹⁰²⁾
- 다만 다음 신고인의 경우에는 EU 관세영역 내에서 설립되어야 하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¹⁰³⁾
 - 환적 또는 일시반입 신고를 제출하는 자
 - 최종 사용 또는 역내 가공을 포함하여, 세관에서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경우로 가끔 세관신고를 하는 자
 - EU 관세영역과 인접한 국가에 설립되었고 해당 국가 주변의 EU 국경 세관에 세관신고가 제출된 물품을 제시한 자로, 설립된 국가가 EU 관세영역 내에서 설립된 자에게 상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함
- 세관신고는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함¹⁰⁴⁾
- 세관신고는 세관에 예정된 물품을 제시하기 전에 제출될 수 있으며, 세관신고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이 제시되지 않으면 세관신고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¹⁰⁵⁾
- 세관신고는 물품이 세관에 제시된 경우 세관에 의해 즉시 수리되어야 함¹⁰⁶⁾
 - 세관이 세관신고를 수리한 날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이 신고되고 모든 다른 수출입 절차에 적용되는 일자로 사용됨
- 세관신고는 신고인이 신청할 경우 신고가 세관에 의해 수리된 이후 세관신고의 하나 이상을 수정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함¹⁰⁷⁾
 - 다만 다음의 사건 이후 적용되는 경우 수정은 허가되지 않음¹⁰⁸⁾

102) 「UCC」 제170조 제2항

103) 「UCC」 제170조 제3항

104) 「UCC」 제170조 제4항

105) 「UCC」 제171조

106) 「UCC」 제172조

107) 「UCC」 제173조 제1항

108) 「UCC」 제173조 제2항

- 세관당국이 신고인에게 물품의 검사를 통보한 경우
- 세관당국이 세관신고의 명세가 정확하지 않음을 규명한 경우
- 세관당국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한 경우
- 세관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의 수정은 신고인이 해당 세관절차에 따라 물품을 장치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물품의 반출 이후 허가될 수 있음¹⁰⁹⁾

□ 세관신고의 무효화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세관은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이미 수리된 세관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음¹¹⁰⁾
 - 물품이 즉시 다른 세관절차하에 두어질 것이 충족되는 경우
 - 특별한 상황의 결과로 신고된 세관절차에 따라 물품을 장치하는 것이 더 이상 정당하지 않은 경우
 - 그러나 세관당국이 신고인에게 물품을 검사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세관신고 무효의 신청은 검사가 실시되기 전에 수리되지 않음
- 다만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물품이 반출된 이후에는 무효화할 수 없음¹¹¹⁾

2) 부과고지제도(관세채무의 통지)

- 「UCC」 제102조에 따르면 관세채무는 세관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고지제도를 두고 있음¹¹²⁾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고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잠정상업조치가 부과된 경우
 -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등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 또는

109) 「UCC」 제173조 제3항

110) 「UCC」 제174조 제1항

111) 「UCC」 제174조 제2항

112) 「UCC」 제102조 제1항

수출 관세 금액의 경우

- 법원 판결 및 관세 법령에 따라 관세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 수입 또는 수출 관세가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입 또는 수출 관세를 결정하고 관세채무를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함¹¹³⁾
 - 그러나 관세채무의 통보가 범죄 수사를 저해하는 경우 세관은 범죄 수사를 저해하지 않을 때까지 그 통보를 연기할 수 있음
- 한편 관세채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통보될 수 없음¹¹⁴⁾
 - 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행위의 결과로 관세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최소 5년 및 최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

나. 관세채무에 대한 담보

- EU 회원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신고물품 가격의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세관은 수입물품의 역내 반입 전에 관세채무에 대한 담보를 평가하고 있음
 - 「UCC」 제89~100조는 잠재적으로 또는 이미 존재하는 관세채무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일반적인 담보 규정

- 일반적인 담보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담보에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관세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¹¹⁵⁾

113) 「UCC」 제102조 제3항

114) 「UCC」 제103조 제1항 내지 제2항

115) 「UCC」 제89조 제2항

- 보증은 역내 운송 절차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됨
- 보증은 역내 2개국 이상의 회원국에서 사용될 수 있음
- 세관은 특정물품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하나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함¹¹⁶⁾
- 세관은 보증을 감시해야 함¹¹⁷⁾
-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음
 - 라인강(Rhine), 라인수로(the Rhine waterways), 다뉴브(the Danube) 또는 다뉴브수로(the Danube waterways)에서 운송되는 물품
 - 고정 운송 설비에 의해 운송되는 물품
 - 일시 입국 절차에 따라 반입하는 물품
 - EU 역내 항구 또는 공항을 통해 운송되는 물품

2) 담보의 제공 방법

- 담보의 제공 방법은 필요적 보증(Compulsory guarantee)과 선택적 보증(Optional guarantee)으로 구분됨
- 필요적 보증의 경우 세관은 관세채무에 부합하는 정확한 수입 또는 수출 관세 및 보증이 요구되는 때에 그 금액을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는 기타 비용과 동등한 수준에서 보증액을 정함¹¹⁸⁾
 - 예외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세관이 추산한 관세채무 및 기타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 관세의 최대 금액을 담보로 정함
- 선택적 보증의 경우 관세채무 및 기타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 관세가 일정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관은 그러한 보증을 요구해야 함¹¹⁹⁾

116) 「UCC」 제89조 제4항

117) 「UCC」 제89조 제6항

118) 「UCC」 제90조 제1항

119) 「UCC」 제91조

- 필요적 보증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관이 정하는 금액을 담보로 정함

3) 담보의 제공 유형

- 담보는 다음 중 한 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¹²⁰⁾
 - 현금 및 현금에 상응하는 기타 지급수단
 - 보증인의 보증
 - 법정 담보물 이외에 다른 종류의 담보물
- 담보의 제공 유형은 담보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세관은 선택된 담보의 유형을 거부할 수 있음¹²¹⁾

4) 담보 제공자

- 담보 제공자인 보증인(guarantor)은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제3자로서 보증을 요구하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¹²²⁾
- 보증인은 관세채무 및 기타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 관세를 안전하게 지불해야 함¹²³⁾
- 세관은 관세채무 및 기타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 관세가 일정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보증인 또는 보증의 유형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¹²⁴⁾

120) 「UCC」 제92조 제1항

121) 「UCC」 제93조

122) 「UCC」 제94조 제1항

123) 「UCC」 제94조 제2항

124) 「UCC」 제94조 제3항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일부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됨¹²⁵⁾
- 독일의 부가가치세(Umsatzsteuer)는 공동세에 해당됨¹²⁶⁾
 - 공동세는 그 세수가 연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도록 되어 있음
- 독일의 소비세는 예를 들면 맥주세 또는 담배세 등과 같은 것으로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¹²⁷⁾
 -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세(Verbrauchssteuer)가 아니라 거래세(Verkehrssteuer)로 인식되고 있음

1) 부가가치세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부가가치세 지침(VAT Directive)을 준수하고 있음
- 현행 최소표준세율(minimum standard rate)은 15%로 정하고 있으며,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5% 또는 그보다 높은 경감세율(reduced rat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회원국 및 상품 유형별로 상이함

125) WTO, *Trade Policy Review-European Union*, WT/TPR/S/357, 2017, p. 53

126)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p. 195

127)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2, pp. 53~54

- 2018년 1월 12일 EU집행위원회는 부가가치세 개혁안을 통해 기존의 최소 15% VAT 표준세율을 유지하되, 다음에 따라 회원국은 조화롭고 자율적인 세율 규정을 원하는 품목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힘¹²⁸⁾
 - 기존의 경감세율 5%와 자국의 표준세율 사이에 2개의 독립적인 경감세율(two separate reduced rates)을 설정
 - 하나의 면세(one exemption from VAT)를 설정
 - 영세율(0%)과 상기 경감세율들 가운데 하나의 새로운 경감세율을 설정

- 독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 매출에 대해 19%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¹²⁹⁾
 - 식품, 음료, 약, 신문, 책 및 극장·박물관·콘서트홀 서비스, 가축의 사육 및 보유, 식물 등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7%를 적용
 - 수출공급 및 임가공수출과 EU 역내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 상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¹³⁰⁾
 - 사업자가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공급과 기타의 용역
 - 재화의 국내 수입
 - 오스트리아의 Jungholz지방과 Mittelberg지방으로의 수입(수입부가가치세)
 - 국내에서 EU 역내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재화(취득부가가치세)

-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¹³¹⁾

128)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action-plan-vat/proposal-vat-rates_en(검색일자: 2018. 6. 11)

129)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Einfuhrumsatzsteuer/Zolltarifauskunft-fuer-umsatzsteuerzwecke/zolltarifauskunft_fuer_umsatzsteuerzwecke_node.html(검색일자: 2018. 6. 18)

130)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Einfuhrumsatzsteuer/Geltungsbereich/geltungsbereich_node.html(검색일자: 2018. 6. 18)

131)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a항

70 제2편 통관제도

- 사업양도는 한 기업 또는 한 기업의 일부로 분리 경영되는 사업의 전부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으로 편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취득한 사업자는 사업의 처분권을 취득

- EU 역내 교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EU 역내 거래의 당사자 두 업체가 각각 관할 관세청에서 VAT EU에 등록이 된 상태이며, VAT EU 번호를 취득된 상태일 것
 - 재화의 물리적인 이동이 발생할 것(용역의 경우 제외)
 - EU 역내 물품 계약서가 존재할 것

- EU 역내 취득의 경우 구매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소비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됨¹³²⁾
 - 다만 사업자가 고객의 이름과 계산으로 수입 또는 지출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 수입의 과세표준은 관세와 통관비용을 포함한 수입 당시의 관세가격(customs value)임¹³³⁾
 - 이는 역외지역에서 수출자의 이름으로 가공된 과세대상을 수출하거나 당해 과세 물건을 당해 수출자를 위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매출은 수입된 시점에 당해 임가공에 대하여 지급할 대가 또는 당해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임가공으로 증가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¹³⁴⁾
 - 상기 두 경우 모두 수입부과금과 수입부가세를 제외한 소비세, 재화의 공급을 위한 운송비용과 역내의 최초 목적지까지의 기타 용역 비용을 포함함¹³⁵⁾
 - 다만 수입부가세 납세의무의 발생시점에 확정된 할인된 가격부분과 에누리액은

132)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133)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134)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135)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항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¹³⁶⁾

2) 소비세

- EU 회원국은 비차별적이며 단일 시장의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 한 다른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음¹³⁷⁾
 - 예를 들면 핀란드의 경우 주류 포장(package)에, 독일은 주류 혼합(blend)에 대해 추가적인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거의 모든 EU 회원국은 커피, 자동차 그리고 주류 등의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기타 소비세 의무를 지고 있음

- 독일은 주류, 커피, 담배 등의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¹³⁸⁾
 - 소비세율은 주로 특정 세제 기준(kg, 수량)이며, 담배의 경우 제품의 가치(소매 판매가격)가 과세표준의 일부임¹³⁹⁾

- 주류, 담배, 에너지 효율 및 전기제품과 같은 EU 조화(harmonized) 품목 이외에 독일에서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소비세는 다음과 같음¹⁴⁰⁾
 - 커피: kg당 2.19~4.78유로
 - 커피제품: kg당 0.12~3.83유로
 - 핵연료: g당 145유로
 - 바이오연료: Quota system

136)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137) WTO, *Trade Policy Review-India*, WT/TPR/S/357, 2017, p. 55

138)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steuern_node.html(검색일자: 2018. 6. 25)

139)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Verbrauchssteuern/Alkohol-Tabakwaren-Kaffee/Steuerhoehe/steuerhoehe_node.html(검색일자: 2018. 6. 25)

140) WTO, *Trade Policy Review-India*, WT/TPR/S/357, 2017, p. 55

- <표 2-II-1>은 상기 품목 가운데 독일관세총국 자료에 따른 2017년 기준 독일의 주류 및 커피의 소비세율을 정리한 것임¹⁴¹⁾
- 알코올 및 알코올 제품의 소비세는 제품에 함유된 알코올의 순수한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맥주의 경우 맥주의 원료에 따라 상이하며, 무알콜 맥주(최대 0.5%의 알코올 함량)는 영세율이 적용됨
 - 스파클링 와인 및 중간제품의 경우 알코올 세금과 달리 순수한 알코올 양을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각각의 알코올 함량을 고려하여 완제품 양에 따라 상이함
 - 커피의 경우 기본적으로 볶은커피 또는 인스턴트커피인지 여부로 구분되며, 커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상이함

〈표 2-II-1〉 2017년 독일의 주류 및 커피의 소비세율

구분	주요세율
알코올, 알코올 제품(Alkohol, alkoholhaltige Waren)	- 순수 알코올 1hl당: 730~1,303유로
맥주(Bier)	- 폴비어(Vollbier) 플라토(Plato) ¹⁾ 11도, 1hl당: 8.65유로 • 0.5리터당: 0.04유로
	- 슈타르크비어(Starkbier) 플라토(Plato) 16도, 1hl당: 12.59유로 • 0.5리터당: 0.06유로
	- 바이젠비어(Weizenbier) 플라토(Plato) 13도, 1hl당: 10.23유로 • 0.5리터당: 0.05유로
스파클링 와인, 중간재(Schaumwein, Zwischenerzeugnisse)	- 스파클링 와인(6%vol), 1hl당: 136유로 • 0.75리터당: 1.02유로
	- 스파클링 와인(6%vol 이하), 1hl당: 51유로 • 0.75리터당: 0.38유로

141)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Verbrauchssteuern/Grundsatzliche-Regelungen/Verbrauchssteuersaetze/verbrauchssteuersaetze_node.html(검색일자: 2018. 5. 28)

구분	주요세율
	- 중간제품(15%vol 이상), 1hl당: 153유로 • 0.75리터당: 1.15유로
	- 중간제품(최대 15%vol), 1hl당: 102~136유로 • 0.75리터당: 0.76~1.02유로
커피, 커피제품(Kaffee, kaffeehaltige Waren)	- 볶은커피, 1kg당: 2.19유로 - 인스턴트커피, 1kg당: 4.78유로 - 볶은커피의 함량(10~100g): 0.12유로 - 볶은커피의 함량(100~300g 이상): 0.43유로 - 볶은커피의 함량(300~500g 이상): 0.86유로 - 볶은커피의 함량(500~700g 이상): 1.32유로 - 볶은커피의 함량(700~900g 이상): 1.76유로 - 인스턴트커피의 함량(10~100g): 0.26유로 - 인스턴트커피의 함량(100~300g 이상): 0.94유로 - 인스턴트커피의 함량(300~500g 이상): 1.91유로 - 인스턴트커피의 함량(500~700g 이상): 2.86유로 - 인스턴트커피의 함량(700~900g 이상): 3.83유로

주: 1) 플라토(Plato)는 맥주 농도에 따른 분류에 사용되는 단위임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Verbrauchsteuern/Grundsatzliche-Regelungen/Verbrauchsteuersaetze/verbrauchsteuersaetze_node.html(검색일자: 2018. 5. 28)

나. 통관 관련 수수료¹⁴²⁾

- 「UCC」와 「독일 관세정률령(Zollkostenverordnung, ZollKostV)」에서 독일의 통관 관련 수수료의 납부 근거를 두고 있음
- 「UCC」에서는 요금 및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독일 관세정률령에서는 정확한 수수료 금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142)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llkosten/zollkosten_node.html(검색일자: 2018. 5. 28)

74 제2편 통관제도

- 「독일 관세정률령」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소요시간별 수수료
 - 시험료
 - 역외 물품의 보관비용
 - 서면 경비
 -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수수료
 - 소량 가격 규제

- 「UCC」 제52조에 따르면 세관은 세관사무소의 공식적인 근무시간 중 세관 통제의 수행 또는 세관 규정의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음¹⁴³⁾

- 다만 다음과 같은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¹⁴⁴⁾
 - 요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인 근무시간 외 시간 또는 세관 외 장소에서의 세관 직원의 출석
 - 물품의 분석, 전문가의 보고서, 신청인에게 물품을 반송하기 위한 우편요금
 - 검사 비용 또는 감정을 목적으로 한 물품의 샘플링 또는 파기 비용
 - 물품의 특성 또는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필요한 예외적인 세관의 조치 비용

- 독일관세총규에 따르면 수수료(Zollkosten)는 세관당국이 실제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수입 또는 수출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됨

- 세관당국의 행정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세비용규정(Customs Costs Regulation)에 따름
 - 상기 관세비용규정 이외에도 「UCC」 또는 독일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과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대외무역법은 법률행위와 보충규정 그리고 형벌·벌금규정·감독규정을 규정하

143) 「UCC」 제52조 제1항

144) 「UCC」 제52조 제2항

고 있음

1) 소요시간별 수수료¹⁴⁵⁾

- 소요시간별 수수료는 세관직원의 출석이 요구되는 청구 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기본 수수료와 시간당 수수료로 구성됨
- 시간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감시(Begleitung) 및 호송(Begleitung): 35유로
 - 기타 공식 사무(andere Amtshandlungen): 45유로
- 기본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시간당 수수료와 동일함
 - 예를 들면 세관공무원이 20분의 통관 절차를 밟을 경우 67.50유로(기본 요금 45유로+시간당 요금의 1/2 22.50유로)의 요금이 정해짐

2) 시험료¹⁴⁶⁾

- 시험료는 다음의 6가지 조사 유형에 대해 부과됨
 - 물리적 측정 및 조사
 - 화학적 측정 및 조사
 - 특별 관세 의견 및 기타 규정에 따른 조사
 - 섬유재료 및 그로부터 제조된 물품에 대한 조사
 - 알코올
 - 미네랄오일

145) 「독일 관세정률령(ZollKostV)」 제3조 내지 제4조

146) 「독일 관세정률령(ZollKostV)」 제6조

- 상기 시험료는 동 법 <부속서 1>에 근거함
 - 세부적인 시험 수수료는 해당 온라인 법령 사이트(http://www.gesetze-im-internet.de/zollkostv/anlage_1.html)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 또한 시험료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조사의 요구 사항, 조사 자체, 조사 시설의 해체 및 청소, 조사 결과의 문서화 등에 따라 상이함

3) 역외 물품의 보관비용¹⁴⁷⁾

- 세관에서 역외 물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주로 제3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적용됨
- 상기 수수료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보관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소포(package)당 20kg까지 우편 및 택배 발송: 0.50유로
 - 기타 수송품 50kg당: 0.05유로
 - 기타 수송품 100kg당: 0.15유로(최소 6유로)
- 한편 세관당국이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부과됨

4) 서면 경비¹⁴⁸⁾

- 요청에 따라 제작된 문서 및 사진의 수수료는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음
 - 50페이지(page)당: 0.50유로, 추가 페이지(page)당: 0.15유로

147) 「독일 관세정률령(ZollKostV)」 제7조

148) 「독일 관세정률령(ZollKostV)」 제8조

5)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수수료¹⁴⁹⁾

- 지적재산권 분야의 관세 조치에 대한 수수료는 관세규정 <부속서 2>에 근거함
 - 세부적인 시험 수수료는 해당 온라인 법령 사이트(http://www.gesetze-im-internet.de/zollkostv/anlage_2.html)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 상기 규정은 Regulation(EU) No. 608/2013에 따름¹⁵⁰⁾

- 상기 수수료는 실제 비용이 관세의 총액에 대해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제기할 수 있음

- 한편 2014년 5월 6일자로 관세비용규정(Customs Costs Regulation)이 변경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관세 적용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용 투명성이 향상되었음

6) 소량 가격 규제¹⁵¹⁾

- 개별 금액이 5유로 미만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음

149) 「독일 관세정률령(ZollKostV)」 제9조

150) EU집행위원회,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181:0015:0034:en:PDF>

151) 「독일 관세정률령(Zollkostenverordnung)」 제11조

III. 관세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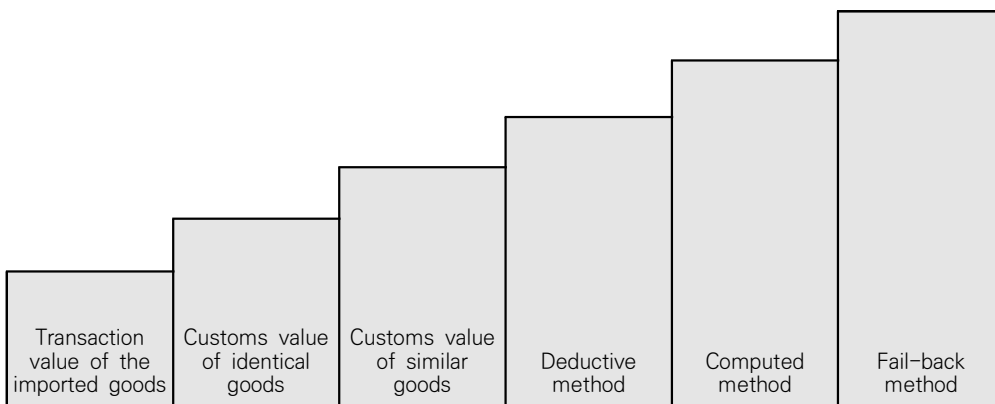
1. 관세평가 개요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과세가격이란 증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고 함
- 독일은 「EU 신관세법(UCC)」에 따라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UCC」 제69조에 따르면 물품의 과세가격은 상품 무역과 관련하여 규정된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며, 「UCC」 제70조~74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
 - 「UCC 이행규정」 제3장 제127~146조에서는 「UCC」 관세평가 규정과 관련하여 하위 이행 및 보충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독일은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기 위해 원칙적인 거래 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이외에도 연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관세평가의 여섯 가지 방법을 따르고 있음¹⁵²⁾

152)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Duties-and-taxes/Normal-customs-clearance/Customs-value/customs-value_node.html(검색일자: 2018. 6. 4)

- 제1방법: 해당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the imported goods)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Customs value of identical goods)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Customs value of similar goods)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 제4방법: 공제 방법(Deductive method)
- 제5방법: 산정 방법(Computed method)
- 제6방법: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그림 2-III-1] 과세가격 결정 방법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Duties-and-taxes/Normal-customs-clearance/Customs-value/customs-value_node.html(검색일자: 2018. 6. 4)

- <표 2-III-1>은 「신관세법(UCC)」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개정된 2가지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과세가격 기준을 최종판매원칙(Last sales rule)에 따라 EU 관세영역에 반입되기 직전 판매가격(Last sale for export)으로 변경
 - 기준에는 최초 판매가격(First sale)과 EU 반입 직전 판매가격(Last sale) 2가

지 중 과세가격 기준을 선택할 수 있었음

- 가산 요소로서 모든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를 관세평가에 포함
 - 기존에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상품과 관련이 있고 그 지급이 상품판매의 조건인 경우에만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었음

〈표 2-III-1〉 관세평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해당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과세가격 기준	최초 판매가격(First sale)	직전 판매가격(Last sale for export)	UCC 이행규정 제128조
가산 요소	상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인 경우에 포함	모든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를 관세평가에 포함	UCC 이행규정 제136조

자료: 「UCC 이행규정」 제128조 내지 제136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과세가격 결정 방법

가.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

1)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 「UCC」 제7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EU 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었을 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함¹⁵³⁾
-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를 위한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이며, 수입물품의 판매조건

153) 「UCC」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함¹⁵⁴⁾

- 거래가격은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적용됨¹⁵⁵⁾
 - 구매자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이며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함
 - (i) EU의 법률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부과되거나 요청되는 제한
 - (ii) 재판매되는 지역의 제한
 - (iii) 동 물품의 과세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 거래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 구매자에 의한 물품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거나 그러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거래가격의 가산요소

-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요소를 가산해야 함¹⁵⁶⁾
 -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증개료
 - 관세의 목적상 당해 물품과 하나로 취급되어야 하는 컨테이너(용기) 비용
 -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

154) 「UCC」 제70조 제2항

155) 「UCC」 제70조 제3항

156) 「UCC」 제71조 제1항

-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구매자에 의해 무상 또는 할인되어 직·간접적으로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
 -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품목 등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공구, 금형 및 이와 유사한 품목 등
 -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비된 재료
 - EU 역외에서 착수되고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비용, 개발비용 및 디자인 및 설계비용 등
 -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입 거래를 위해 구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당해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으로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 당해 수입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장소까지의 비용
 - 운임 및 보험료
 - 기타 운송 관련 비용
- 한편 가산요소의 가산은 객관적이고 정량화가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동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되지 않음¹⁵⁷⁾

3)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공제요소)

-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¹⁵⁸⁾
- EU 관세영역 반입 후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 EU 관세영역 반입 후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해 행해진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비용

157) 「UCC」 제71조 제2항 내지 제3항

158) 「UCC」 제72조

-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금융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이자가 다음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 물품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으로 판매될 것
 - 청구된 이자율이 수출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적정 이자율일 것
 - 다만 해당 금액이 지불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수입물품에 대한 해당 비용 등의 금액을 분명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비용 등의 금액을 포함한 당해 지불 총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역내 수입물품의 복제권(right to reproduce)에 대한 수수료
 - 구매 수수료
 - 역내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기타 부담금
 - 수출을 위한 판매 조건이 아닌 경우 구매자가 수입상품을 배포하거나 재판매할 권리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 한편 간소화(Simplification) 규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관세당국은 특정 기준에 기초하여 관세평가를 할 수 있음¹⁵⁹⁾
- 「UCC」 제70조 제2항에 따른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
 - 「UCC」 제71조 내지 제72조에 따른 거래가격 및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

나.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 이외의 방법

- 「UCC」 제74조에 따르면 제1방법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함¹⁶⁰⁾
- 다만 수입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4방법인 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제5방법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순위를

159) 「UCC」 제73조

160) 「UCC」 제74조 제1항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¹⁶¹⁾

가) 개요

-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제2방법인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을 적용함
- 동종동질물품은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과 품질 그리고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으로서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의미함

나) 제2방법의 적용 요건

- 제2방법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동종동질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동종동질물품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EU 역내로 수입된 것이어야 함
 - 거래 단계, 거래수량, 운송 거리, 운송 수단 등이 해당 물품과 동일해야 함
 - 만약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해야 함
 - EU 역내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었던 동종동질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과 같은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에 수출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161) 「UCC」 제74조 제2항(a) 및 「UCC 이행규정」 제141조

다) 제2방법의 적용 우선순위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적용함
 -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함
 -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같은 동일한 물품이 2개 이상 있고 그 가격도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함

라) 적용배제

-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거래가치에 있어서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함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¹⁶²⁾

가) 개요

- 제1방법과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제3방법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을 적용함
- 유사물품은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으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의미함

162) 「UCC」 제74조 제2항(b) 및 「UCC 이행규정」 제141조

나) 제3방법의 적용 요건

□ 제3방법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유사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유사물품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EU 역내로 수입된 것이어야 함
- 거래 단계, 거래수량, 운송 거리, 운송 수단 등이 해당 물품과 동일해야 함
- 만약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해야 함
- EU 역내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었던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과 같은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에 수출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다) 제3방법의 적용 우선순위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적용함

-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함
-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같은 동일한 물품이 2개 이상 있고 그 가격도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함

3) 공제 방법¹⁶³⁾

가) 개요

- 제1방법과 제2방법 그리고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제4방법인 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을 적용함

163) 「UCC」 제74조 제2항(c) 및 「UCC 이행규정」 제142조

- 제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은 역내판매가격에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 경비와 EU 역내 발생 운임 그리고 EU 세관 영역에서 지불하는 수입관세 및 기타 부담금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공제 방법이라고 함

- 국내판매가격은 해당 물품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EU 역내에서 판매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의미함

나) 제4방법의 적용 요건

- 제4방법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판매가격은 평가될 당해 EU 역내로 수입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at or about the time of importation) 판매된 것으로 수입 후 90일 이내에 가장 이른 때로 함
 - 수입 후 최초 거래 단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함
 - EU 역내에서 판매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판매되어야 하는 바, 최초 거래 단계에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함
 - 최초의 거래 단계에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직간접적으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아야 함

- 한편 「UCC 이행규정」 부속서(ANNEX 23-02)에서 언급된 부패성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EU집행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결정됨¹⁶⁴⁾
 - 상기 부속서에 언급된 부패성 물품은 주로 과일 및 채소 종류로 구성됨

164) 「UCC 이행규정」 제142조 제6항

- 상기 단가는 관련 규정¹⁶⁵⁾에 따라 각 회원국에 의해 EU집행위원회로 통보되며, TARIC을 통해 배포되고 있음
- 결정된 단가는 14일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각 기간은 금요일에 시작함
 - 다만 특정 상황의 경우 유효기간을 14일 연장할 수 있으며, 각 회원국은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각 물품은 100kg당 단가가 설정되며, 그러한 가격은 EU 역내에서 그러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표되는 것으로 간주됨

〈표 2-III-2〉 「UCC 이행규정」 부속서(ANNEX 23-02)에 언급된 부패성 물품 목록

CN(TARIC) Code	해당 제품	유효 기간
0701 90 50	New potatoes	1.1 to 30.6
0703 10 19	Onions	1.1 to 31.12
0703 20 00	Garlic	1.1 to 31.12
0708 20 00	Beans	1.1 to 31.12
0709200010	Asparagus - green	1.1 to 31.12
0709200090	Asparagus - other	1.1 to 31.12
0709 60 10	Sweet peppers	1.1 to 31.12
0714 20 10	Sweet potatoes, fresh, whole,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1.1 to 31.12
0804300090	Pineapples - other than dried	1.1 to 31.12
0804400010	Avocados - fresh	1.1 to 31.12
0805 10 20	Sweet oranges, fresh	1.6 to 30.11
0805201005	Clementines - fresh	1.3 to 31.10
0805203005	Monreales and satsumas - fresh	1.3 to 31.10
0805205007 0805205037	Mandarins and wilkings - fresh	1.3 to 31.10

165)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of 23 July 1987 on the 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and on the Common Customs Tariff

CN(TARIC) Code	해당 제품	유효 기간
0805207005 0805209005 0805209009	Tangerines and other - fresh	1.3 to 31.10
0805400011 0805400031	Grapefruit and Pomelos, fresh: - white	1.1 to 31.12
0805400019 0805400039	Grapefruit and Pomelos, fresh: - pink	1.1 to 31.12
0805509011 0805509019	Limes (Citrus aurantifolia, Citrus latifolia) - fresh	1.1 to 31.12
0806 10 10	Table grapes	21.11 to 20.7
0807 11 00	Watermelons	1.1 to 31.12
0807190050	Amarillo, Cuper, Honey dew (including Cantalene), Onteniente, Piel de Sapo (including Verde Liso), Rochet, Tendral, Futuro	1.1 to 31.12
0807190090	Other melons	1.1 to 31.12
0808309010	Pears Nashi (Pyrus pyrifolia), Ya (Pyrus bretschneideri)	1.5 to 30.6
0808309090	Pears - Other	1.5 to 30.6
0809 10 00	Apricots	1.1 to 31.5 1.8 to 31.12
0809 30 10	Nectarines	1.1 to 10.6 1.10 to 31.12
0809 30 90	Peaches	1.1 to 10.6 1.10 to 31.12
0809 40 05	Plums	1.10 to 10.6
0810 10 00	Strawberries	1.1 to 31.12
0810 20 10	Raspberries	1.1 to 31.12
0810 50 00	Kiwifruit	1.1 to 31.12

자료: 「UCC 이행규정」 부속서(ANNEX 23-02)

4) 산정 방법¹⁶⁶⁾

가) 개요

- 제1방법,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제5방법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함
- 산정가격은 생산 관련 비용과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 경비 그리고 운임 등의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함

나) 제5방법의 적용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은 다음의 합계로 구성됨
 - (생산 관련 비용)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조립 또는 그 밖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 (수출국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때에 통상인 이윤 및 일반 경비
 - (운임 등)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5) 합리적 방법¹⁶⁷⁾

- 제1방법~제5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제5방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형태로 제6방법인 합리적 방법을 적용함
- 제6방법은 다음의 원칙과 일반적인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166) 「UCC」 제74조 제2항(d) 및 「UCC 이행규정」 제143조

167) 「UCC」 제74조 제3항 및 「UCC 이행규정」 제144조

EU 역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함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 「UCC」 제2편 제3장(Value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1. 품목분류

가. 개요

- 독일을 포함한 EU 공동체 내에서 적용 가능한 관세는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¹⁶⁸⁾
 - 「UCC」 제57조는 품목분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별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은 다음과 같음
 - CN과 주해서를 운용하여 품목분류에 참고하고 있음¹⁶⁹⁾
 - CN관련 문제는 회원국 세관당국이 다루고 있음

- 개별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 제/개정은 EU 회원국의 요청과 독일관세총국 (Taxation and Customs)의 판단 등을 통해 이루어짐¹⁷⁰⁾

168)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Duties-and-taxes/Normal-customs-clearance/Customs-Tariff/customs-tariff_node.html(검색일자: 2018. 6. 20)

169) Explanatory notes to the Combined Nomenclature of the EU(2011. 5. 6)

170) Council Regulation(EEC) No. 2658/87

- 독일관세총국 내 관세규정 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에서 EU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여 개별물품의 통합품목표(CN)의 제·개정을 수행

- 품목분류 제도는 다음과 같이 WCO HS협약을 수용하고 있음
 - 통합품목표(Combined Nomenclature, 이하 'CN')의 경우 HS 6단위는 HS협약과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8단위까지 운영하며 기본관세율을 규정함¹⁷¹⁾
 - EU공동체통합관세율표(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이하 'TARIC')의 경우 상기 통합품목표(CN) 8단위에 2단위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관세율, 농업 및 무역 규정, 수출입규제와 관련된 통합 정보를 제공함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BTI)

1) BTI 관련 결정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이하 'BTI')를 통해 수출입 물품의 품목번호를 회원국 세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음¹⁷²⁾
 - 「UCC」하에서는 수입신고 시 BTI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EU 역내의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들도 구속하게 됨¹⁷³⁾

- BTI의 신청은 다음의 경우 EU 세관당국에 접수되지 않음¹⁷⁴⁾

171) Commission Regulation(EU) No. 927/2012

172) 「UCC」 제33조

173)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장, 「EU통관환경의 주요내용과 유의점」, 『FTA TRADE REPORT Vol.2』 2016. 6, p. 216

174) 「UCC」 제33조 제1항

- BTI 보유자가 이미 발급받은 동일 상품에 대해 발급한 세관 또는 다른 세관에 신청한 경우
- BTI의 의도된 사용, 세관절차를 위해 의도된 사용과 관련이 없는 신청

- BTI의 결정은 상품의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결정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짐¹⁷⁵⁾
 -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에 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품에 한함
 -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함

- BTI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음¹⁷⁶⁾
 - 다만 EU 공동 관세율표 수정의 채택과 비관세율 수단 채택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중단됨

- BTI 결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holder)가 다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¹⁷⁷⁾
 - 신고물품이 모든 면에서 기재된 설명과 일치한다는 점

2) BTI 관련 결정의 관리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관세당국에 다음을 통보해야 함¹⁷⁸⁾
 -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BTI 결정을 보류
 - 동 보류 결정에 대한 철회

175) 「UCC」 제33조 제2항

176) 「UCC」 제33조 제3항

177) 「UCC」 제33조 제4항

178) 「UCC」 제34조 제10항

- EU집행위원회는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BTI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음¹⁷⁹⁾
- 특정한 경우 회원국 관세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BTI 이외의 세관규정과 관련된 binding information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¹⁸⁰⁾

2. 관세율 제도

가. 관세율 수준¹⁸¹⁾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공동관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른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WTO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관세율은 5.1%이며,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각 10.8%와 4.2%로 비농산물보다 농산물의 관세수준이 약 2.6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6년 수입액 기준 전체 품목의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은 3.2%이며,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각 8.7%와 2.8%로 조사됨

179) 「UCC」 제34조 제11항

180) 「UCC」 제35조

181)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8*, 2018, p.79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IV-1〉 평균 MFN 관세율 및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기준년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평균 MFN 관세율	2017	5.1	10.8	4.2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2016	3.2	8.7	2.8
수입액(십억달러)		1,710.3	120.1	1,590.2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8*, 2018, p. 79

□ 〈표 2-IV-2〉의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비율은 농산물이 비농산물보다 모두 약 1.1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관세율을 적용하는 비율 또한 농산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WTO 양허관세율 기준 31.4%, MFN 실행관세율 기준 31.7%이며, 비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각각 28.9%, 27.6%로 농산물보다 낮음
- 2016년 수입액 기준 농산물의 41.6%가 무관세를 적용받은 반면, 비농산물의 52.6%가 무관세 적용을 받음
- 50~100% 초과 고율관세 구간은 농산물로만 구성되어 있음

〈표 2-IV-2〉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

(단위: %)

구분		무관세	0%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15%이하	15%초과 25%이하	25%초과 50%이하	50%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31.4	11.4	17.4	14.0	11.1	9.5	2.6	0.6
	2017년 MFN 실행관세	31.7	11.5	18.3	13.7	10.4	8.3	2.3	0.5
	2016년 수입액	41.6	12.3	16.3	8.3	11.5	4.7	1.9	0.0
비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28.9	36.4	26.9	6.7	1.0	0.0	0	0
	2017년 MFN 실행관세	27.6	35.5	28.0	7.5	1.4	0.1	0	0
	2016년 수입액	52.6	26.7	12.9	6.6	1.2	0.0	0	0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8*, 2018, p. 79

- 〈표 2-IV-3〉의 품목별 관세율 수준을 살펴보면 WTO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38.1%의 낙농제품이며, 설탕 및 과자류 23.0%, 음료 및 담배 19.1% 등의 순임
- 비농산물의 경우 의류가 11.5%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어류 및 수산물 11.4%, 직물 6.6% 등의 순임
- 평균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35.9%의 낙농제품이며, 비농산물의 경우 11.6%의 어류 및 수산물로 나타남

〈표 2-IV-3〉 품목별 관세율 수준

(단위: %)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액 기준	
	평균	무관세	최대	평균	무관세	최대	비중	무관세
동물제품	16.1	24.3	116	15.5	28.4	116	0.4	7.1
낙농제품	38.1	0	218	35.9	0	189	0.0	0
과실 및 채소, 식물제품	11.5	21.7	188	10.3	19.8	181	2.0	14.6
커피, 차	6.0	27.1	20	6.0	27.1	19	1.1	73.0
곡물 및 그 조제품	16.0	6.5	52	12.3	13.0	42	0.6	30.1
종자, 기름	5.4	47.0	158	5.2	48.1	151	1.6	68.4
설탕 및 과자류	23.0	0	91	21.1	11.8	78	0.1	10.2
음료, 담배	19.1	19.6	158	19.3	18.4	153	0.6	18.8
면섬유	0.0	100.0	0	0.0	100.0	0	0.0	100.0
기타 농산물	4.7	64.7	486	3.2	65.5	60	0.5	66.2
어류 및 수산물	11.4	11.8	26	11.6	7.4	26	1.6	4.5
광물, 금속	1.9	50.0	12	2.0	50.0	12	16.4	69.9
석유제품	3.1	20.0	5	2.5	33.7	5	12.1	98.3
화학제품	4.5	21.9	7	4.6	22.4	17	11.7	49.8
목제품, 종이제품 등	0.9	82.9	10	0.9	81.5	11	2.8	84.2
직물	6.6	3.1	12	6.5	2.1	12	2.6	2.1
의류	11.5	0	12	11.5	0	12	5.1	0
가죽, 신발 등	4.2	25.7	17	4.1	27.2	17	2.7	12.1
비전기기계	1.7	27.6	10	1.8	24.0	10	11.6	48.0
전기기계	2.4	32.8	14	2.5	23.9	14	12.9	56.1
운송기기	4.1	16.5	22	4.7	12.9	22	6.5	9.4
기타 제조업 제품	2.4	27.1	14	2.3	28.4	12	7.1	49.8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8*, 2018, p. 79나. 관세율 체계¹⁸²⁾

□ EU 관세율표는 EU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일된 관세율표로서 운영되고 있음

○ EU 상품 분류 번호는 다음의 정보를 담고 있음

182) EU집행위원회, http://trade.ec.europa.eu/tradehelp/eu-product-classification-system#Example_EU_classification_system(검색일자: 2018. 6. 20)

- 관세율 및 기타 수출입 관련 세금
- 적용 가능한 모든 보호 조치(예: 반덤핑)
- 대외무역 통계
- 수출입절차 및 기타 비관세 관련 요건

□ EU 관세율 체계는 관련 법령¹⁸³⁾에 따라 다음의 3가지 통합 요소로 구성되며, [그림 2-IV-1]는 이를 예시로 나타낸 것임¹⁸⁴⁾

- 앞의 6단위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적 공통인 HS 코드임
 - 부(sections)는 상품군별 분류
 - 2자리 류(chapters)는 종류별 및 가공도별 분류
 - 4자리 호(headings)는 동일류 내의 품목의 종류별 및 가공도별 분류
 - 6자리 소호(sub-headings)는 동일호 내의 품목의 용도별 및 기능별로 분류
- 7~8단위 CN(통합품목표)은 EU에서 정한 8자리 코드 체계로 6단위에 2단위를 추가하여 EU의 세분화된 HS코드를 포함하고 있음
 - EU 공동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 및 EU와 세계 다른 국가 간의 무역통계에 사용됨
- 9~10단위 TARIC(EU공동체통합관세율표)은 8단위 CN코드에 2단위(TARIC subheadings)를 추가하여 10단위의 세분화된 번호로 구성됨
 - 상기 코드는 EU 역내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정책 및 관세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예: 잠정유예, 반덤핑관세 등)

□ 한편 독일은 코드 번호 11번째 숫자로 EZT(전자통관 관세 코드)를 사용하며, 이는 독일 고유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VAT) 또는 국내 금지 및 제한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¹⁸⁵⁾

183) Council Regulation(EEC) No. 2658/87, 제1조 제2항

184) EU집행위원회, <http://trade.ec.europa.eu/tradehelp/eu-product-classification-system> (검색일자: 2018. 6. 20)

185)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Duties-and-taxes/Normal-customs-clearance/Customs-Tariff/customs-tariff_node.html(검색일자: 2018. 6. 20)

- 11단위 코드는 수입신고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반면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대외 무역 통계를 위한 상품분류에서 찾을 수 있는 8단위 코드만을 필요로 함

[그림 2-IV-1] 관세율 체계 예시

Example using a bound children's book

Code number	Formal structure
49	Chapter - harmonised system
4901	Heading - harmonised system
4901 99	Subheading - harmonised system
4901 9900	Subheading - combined nomenclature
4901 9900 00	Subheading - TARIC/Community use
4901 9900 00 9	Code number - Electronic customs tariff/national use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Duties-and-taxes/Normal-customs-clearance/Customs-Tariff/customs-tariff_node.html (검색일자: 2018. 6. 20)

-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은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 재무부에의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함
 - EU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 TARIC(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de)
 - [그림 2-IV-1]과 같이 상기 TARIC 사이트에서 상품의 HS code와 원산지 (Country of origin)를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 조회가 가능함
 - 독일연방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EZT-online(<http://auskunft.ezt-online.de>)

[그림 2-IV-2] EU 관세율 조회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TARIC Consultation' web interface. At the top right, it indicates 'Last update: 22-08-2018' and 'Get latest publication: 22-08-2018'. The main navigation has three tabs: 'Measure' (highlighted in blue), 'Geographical area', and 'Regulation'. Below the tabs is a search section titled 'Search for measures'. It contains two input fields: 'Goods code' with a '[Browse]' link, and 'Country of origin/destination' with a dropdown arrow. There is also a link for '[Advanced search]'. A blue button labeled 'Retrieve Measures' is positioned below the search fields. At the bottom of the search area, it states 'The current reference date for the query is 23-08-2018 [change]'.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검색일자: 2018. 9. 20)

다. 관세율의 종류

-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상품은 독일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되며, EU 시장 내에서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은 EU 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규정인 TARIC을 적용하고 있음
 -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함
 - EU 역내에서의 유통과정에 포함된 운송비는 CIF 가격에서 제외함
 - EU 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 생산된 상품의 경우 CIF 가격 산정 시 중간재 가격은 제외함
- 독일은 특정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서는 EU에서 공통으로 정하는 GSP를 적용하고 있음

□ 관세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기본세율(MFN rate)의 경우 협정세율(Conventional rate)과 국정세율(Autonomous rate)로 구성되며 이 중 더 낮은 관세율이 기본세율로 적용됨
- FTA 협정세율(FTA Preferential rate)
- 할당관세(quota)
- 잠정세율(Suspension)의 경우 Autonomous Suspension과 Airworthiness Suspension으로 구분됨
 - Autonomous Suspension은 일부 원재료, 반제품, EU에서 생산할 수 없는 구성품의 경우 적용 가능함
 - Airworthiness Suspension은 항공기의 제조, 수리, 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구성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25류 내지 97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적용 가능함
- 반덤핑관세(Anti-Dumping)
- 상계관세(Anti-Subsidy)
- 세이프가드(Safeguard)

□ 관세 부과 가액은 재화의 실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가 있음

-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담배, 주류, 석유 등과 같은 일부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가 부과될 수 있음
- 2018년 기준 독일은 19%의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고 있음¹⁸⁶⁾

186)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검색일자: 2018. 5. 28)

V. 감면 및 환급

1. 개요

- EU의 관세감면은 EU의 관세감면 규정인 Council Regulation(EC) 1186/2009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¹⁸⁷⁾ 본 규정은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고 있음¹⁸⁸⁾
- UCC에서는 일부 특정 상황에 대한 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EU영역에서 반출된 후 3년 이내에 반품되는 물품 및 낚시 또는 어업을 통해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함
- Council Regulation(EC) 1186/2009 및 UCC를 제외한 일부 감면 및 EU 공통에 적용되는 감면 내용 중 일부는 독일 관세행정법(Zollverwaltungsgesetz, ZollVG) 및 세관규칙(Zollverordnung, ZollV)에 규정되어 있음¹⁸⁹⁾

187)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what-is-common-customs-tariff/duty-relief_en(검색일자: 2018. 11. 28)

188) EU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Council Regulation(EC) 1186/2009에서 규정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No. 1224/2011를 통해 일부개정되었음을 확인함

189)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befreiungen/Ausser tariffliche-Zollbefreiung/weitere-Tatbestaende/weitere-tatbestaende_node.html(검색일자: 2018. 9. 4)

- 제3국과의 연결 철도, 제3국의 세관 및 우체국 등의 서비스 연결을 위해 독일로 반입되는 장비, 제3국의 과학기관 또는 공공문화재 관련한 장비는 독일 관세 행정법에 따라 수입 증명서(certificate)를 제출하면 수입관세가 면제됨¹⁹⁰⁾
- 기차, 배, 비행기 연료 및 관련 물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¹⁹¹⁾
- 외국대사 및 영사의 물품, 생활물품, 독일대사의 해외 임무 수행 후 반입 물품, 재외공관의 건설·보수 등을 이유로 수출되었다 재수입되는 물품 등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됨¹⁹²⁾

2. 수출입관세 면제물품

- EU 역내 및 독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이사물품, 결혼물품, 상속물품, 유학생물품, 소액물품, 개인 탁송품¹⁹³⁾, 기업 자본재, 여행자 물품, 교육·과학·문화 관련 물품 등이 있음
 - 독일관세총국에서 규정하는 각 물품의 수입요건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제한 요건을 준수할 시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관련 서류 및 제한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¹⁹⁴⁾ (Unternehmen기업 → Fachthemen기술적인 문제 → Zölle관세 → Zollbefreiungen 세관관세 → Außertarifliche Zollbefreiung관세면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도 저작권 또는 산업자산 보호와 관련되어 담당 공공기관으로 송부되는 물품, 특정문서(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요청에 따른 무료 배포문서, 홍보문서, 투표용지, 은행의 공공문서 등), 물품의 운송 및 적입을 위한 포장재, 국제운동경기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190) 독일법령포털, https://www.gesetze-im-internet.de/zollv/_18.html(검색일자: 2018. 9. 4)

191) 독일법령포털, <https://www.gesetze-im-internet.de/zollv/>(검색일자: 2018. 9. 4)

192) 독일법령포털, https://www.gesetze-im-internet.de/zollv/_17.html(검색일자: 2018. 9. 4)

193)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194)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befreiungen/Aussertarifliche-Zollbefreiung/aussertarifliche-zollbefreiung_node.html(검색일자: 2018. 9. 6)

〈표 2-V-1〉 주요 수입관세 면제 대상 물품

주요 수입관세 면제 물품	주요 내용 및 특징
이사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물품: 가사용품, 모든 개인용품, 식탁보, 테이블보, 침대보와 같은 천 제품, 가구, 모든 종류의 개인용 차량(자가용, 오토바이, 트레일러, 캠핑트레일러, 수륙 양용차 등)이 있음 - EU역외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EU역외에서 구입한 물품은 소비성이 없고(Non-consumable) 최소 6개월 이상된 것이어야 함 - 알코올제품, 담배제품, 상업 자동차는 이사물품에서 제외됨
결혼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가정용품(이사물품과 내용 동일) - 1천유로가 넘지 않는 선물 또한 면제 대상임 - 알코올제품, 담배제품, 상업 자동차, 1천유로가 넘는 결혼선물 등은 결혼물품에서 제외됨 - 결혼을 이유로 제3국에서 EU역내로 이전했음을 증명해야 함
상속받은 개인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역내 거주하는 합법적인 상속인, 유증자(legatee)¹⁹⁵의 물품으로 자연인 및 법인 모두 해당되나 법인의 경우 EU역내에서 비영리적 행위를 하는 법인만이 대상이며 대상의 가정용품, 자동차, 가정재고물품, 국내 동물, 악기, 도구 등이 해당됨 - 상속에 의한 물품임을 관련문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물품의 처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유학생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교육목적에 따라(유학, 교환학생 등) EU역내로 입국하였을 시 학생이 반입하는 컴퓨터, 프린터기, 교복 등의 물품 - 학생이 교육목적으로 EU에 입국했음을 증명해야 함 - 유학생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및 구두로 증명 가능하며 EU역내로 물품이 반입된 후 처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소액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가격 22유로 이하의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22~150유로의 물품은 수입관세는 면제되나 수입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음 - 알코올 제품, 담배제품, 화장지, 향수는 대상에서 제외됨
개인 탁송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용도 없이 제3국의 개인에게서 EU 회원국 개인에게 보낸 탁송품의 경우 탁송품 하나당 물품가액이 45유로 이하일 때 수입관세를 면제함 - 커피제품, 알코올 제품, 담배제품, 화장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용량을 초과할 시 초과 용량에 따른 수입관세가 부과됨(규정용량은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 별도 참조)¹⁹⁶
기업 자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국 기업의 해외투자 종료로 인하여 EU역내로 반입되는 기업 자본재의 경우 기업의 해외 활동이 최소 12개월 이상 유지되었다는 사실과 반입되는 자본재가 EU역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증명되어야 함 - 물품은 EU역내로 수입된 후 12개월간 세관의 감시 대상이 되어 양도, 대여, 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위험 물품의 경우 36개월간 세관의 통제 대상이 됨
여행자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여행자의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되나 세관의 수량 및 가격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금지물품의 반입은 불가능함

주요 수입관세 면제 물품	주요 내용 및 특징
교육·과학·문화 관련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 1: 재생필름, 그림앨범, 그림책, 아동용 컬러북, 과학관련 지도, 산업적 혹은 기술적 드로잉, 삽화, 도안, 지질 다이어그램, 포스터, 교육적·문화적 내용의 오디오, 카탈로그 등 - 분류 2: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되는 레이저, 멀티미디어 게임, 홀로그램, 자석 테이프, 레코드, 축음기, 마이크로PC, 벽화 등(사용자 또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분류 3: 과학수사 장비의 부분품, 예비품, 보조제품 등(과학적 활동 및 실험사용에 한함) - 분류 4: 과학 연구 목적의 기계, 기구, 관련 부속품(유지, 실험, 보수를 위한 부속품 포함, 과학관련 협약에 따른 사용,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제한)
의학조사, 의학처치,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의학 기구,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적 도구 및 기구, 의학적 장치 설치를 위한 부분품, 의학적 기구의 유지, 검사, 보수 등을 위한 보조 장치 모두 해당됨 - 의학적 물품은 기부 물품이거나, 잠재적 기부물품 또는 기부의 방법으로 구매한 물품이어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음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선물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이유로 제3국의 해당 공식기관으로부터 받은 선물 - 제3국에서 공식적인 이유로 EU를 방문하는 자가 초청 기관에 보내는 선물 - 국제적인 관계의 선물로 맥주, 와인, 담배 등은 제외되며 상업적 목적을 가지지 않아야 함 - 또한 물품의 가치와 양이 상업적이지 않아야 함(do not show a commercial character)
실험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에 직접 사용되는 물질, 대상의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 - 단 해당 물질은 반드시 파괴되거나 완전히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수입되어야 함 - 예외: 실험을 했음에도 물질에 변화가 없는 경우, 실험 기계에 일부 소량이 남은 경우, 실험과정의 폐기물, 실험물질의 크기로 인하여 한 번에 실험을 종료할 수 없어 물질이 남은 경우
홍보를 위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어, 무역전시, 문화·교육·기술·과학 관련 이벤트 또는 전시, 자선바자회 물품, 여행·운동 관련 이벤트 또는 전시, 공식적인 기념회 등을 이유로 EU역내로 반입되는 물품 등 - 샘플(샘플로 별도 제작된 물품), 물품의 샘플(품목당 가치가 50유로를 넘지 않아야 함) -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가격목록, 은행·보험사·운송기업 등의 홍보 책자
여행 프로모션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관련 이벤트, 문화·스포츠·종교 등의 행사 관련 참여를 독려하는 리플렛, 브로슈어, 책, 잡지, 가이드, 포스터, 사진, 지도, 그림 달력 등의 문서 - 25% 미만의 상업광고 포함, 무료 배포, EU내 기업홍보 금지 등의 제한을 준수해야 함 - 관광공사의 요청에 따른 해외 호텔 연감, 시간표, 특정 국가 관광공사의 요약자료집(단 상업적 배포목적이 없는 연락처, 호텔리스트, 무역 전시 일정, 카탈로그, 박물관, 대학교 등의 자료)

주요 수입관세 면제 물품	주요 내용 및 특징
재해복구를 위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를 입은 EU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 물품에 대한 감면을 정하고 있음 - 복지 관련 기관, 자선단체 등의 기관에서 재해로 인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감면되나 재해 장소의 재건을 위한 물품은 관세가 부과됨 - 세관 통관 후에도 세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물품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뀌었을 시 세관에 통보해야 함
장애인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 1: 시각장애인 홍보 책자, 사진, 팸플릿, 등 - 분류 2: 시각장애인 용품(지팡이, 오디오북, 텔레비전 이미지 확대렌즈, 타자기 등등) - 분류 3: 기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지원 용품 - 분류 1의 경우 해당하는 물품 모두가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나 분류 2, 분류3의 물품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수입하거나 정부에서 허가받은 기관이 수입할 때에만 관세가 면제됨
특정 컨테이너,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터, 트레일러 혹은 객차(운전자 포함 최소 9인승) 및 물품 운반차량 등 운반 이외의 목적을 가진 특수차량(예를 들어 스포츠카) 전체, 스쿠터, 오토바이, 모터달린 자전거, 산소공급이나 쿨링,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등에 적입되는 연료 및 윤활유(연료에 대한 관세 면제는 각 컨테이너당 최대 10리터까지 가능함)는 관세가 면제됨 - 단 차량은 원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EU역내에서도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함
기타 물품 ¹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또는 산업자산 보호와 관련되어 담당 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물품 - 특정문서(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요청에 따른 무료 배포문서, 홍보문서, 투표용지, 은행의 공공문서 등) - 물품의 운송 및 적입을 위한 포장재 - 국제운동경기 행사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 동물 운송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동물 식량 - 관, 유골함, 무덤장식 등 장례관련 용품 - 기타 외교행낭, 영사행낭(비엔나, 뉴욕 협약 관련)

자료: EU법령정보포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9R1186&from=EN>(검색일자: 2018. 9. 4) 및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befreiungen/Aussertarifliche-Zollbefreiung/aussertarifliche-zollbefreiung_node.html(검색일자: 2018. 9. 4)

195) 유증을 받을 사람으로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자

196) Council Regulation(EC) 1186/2009 제27조 및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befreiungen/Aussertarifliche-Zollbefreiung/Privatsendungen/privatsendungen_node.html(검색일자: 2018. 9. 4)

197) 독일관세총국의 관세면제 분류를 참조하여 작성함

- 수출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소액물품, 경작용 가축, 수출되는 씨앗, 수출된 가축의 사료 등이 있음

〈표 2-V-2〉 주요 수출관세 면제 대상 물품

주요 수출관세 면제 물품	주요 내용 및 특징
소액물품	우편, 소포 등 동봉물품이 총 10유로를 넘지 않을 경우의 해당 물품
가축	EU역내 가축이 연합 내 경작활동의 종료로 제3국으로 이동하여 경작활동을 재시작하게 될 시 해당 가축 (단 경작에 적절한 수만큼의 가축만 수출세가 면제됨)
농업생산품	EU역내 자산을 소유한 농업가의 농작물
씨앗	제3국의 EU내국인 소유 농경지에 경작하기 위해 수출되는 종자(씨앗)
수출된 가축의 사료	제3국의 농경활동을 위해 수출된 EU의 가축의 소비를 위해 수출되는 사료

자료: EU법령정보포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9R1186&from=EN>(검색일자: 2018. 9. 10)

3. 특별 통관절차에 따른 감면

- UCC에서는 특별 통관절차로서 환적(역외 환적, 역내 환적, Union 환적), 장치(일시 보관, 보세 창고, 자유무역지역), 특별 사용(일시 반입, 최종 사용), 가공(역내 가공, 역외 가공)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특별사용 및 가공절차에 따른 감면에 대해 다루고자 함
 - 통관절차에서 다룰 환적 및 각 해당 장에서 다룰 장치 부분에 대한 감면은 간략한 특징만 언급하도록 함

- 특별 사용 및 가공에 따라 관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관절차에 따라 기간, 사용용도, 물품의 가공 등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가공작업(processing operations)의 개념은 「UCC」에서 신설되었으며, 물품의 제조(건축, 조립 등 포함), 물품의 가공, 물품의 폐기, 물품의 수리(복원, 정돈 포함)를 모두 포괄함
 - 앞선 언급한 가공작업에 허용되거나,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것(다만 최종 제품에서는 해당 물품이 발견되지 않아야 함) 또한 가공의 범주에 포함됨

〈표 2-V-3〉 특별 통관절차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특별 통관절차	주요 내용 및 특징
일시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반입 절차하에서 재수출할 역외물품은 수입관세의 전부 혹은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물품은 일반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변화가 없어야 함 - 단 물품이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허가 보유자의 책임하에서 유지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24개월임(다른 특별 절차로 바뀌어 해당 일시 반입 절차가 종료되고, 그 뒤에 다시 일시 반입하에 물품을 두는 경우에도 해당됨) - 예외적 상황에서 상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재수출될 수 없는 경우에 세관은 허가 보유자의 정당한 신청에 따라 기한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물품이 일시 반입 절차하에 남을 수 있는 전체의 기간은, 예상치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최종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사용 절차 적용 물품은 특정하게 사용되기 위해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된 후 자유 유통을 위해 EU역내에 반출되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주로 항공기 및 부품군용 장비, 물고기, 치즈, 선박관련 작업물품, 선박 추진 엔진, 카세인 등에 적용됨) - 최종 사용 허가 수입자(End-use Authorisation Importer)만 해당 물품을 EU역내로 수입하여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 본 절차에서 물품이 관세 면제 또는 관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규정된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경우, 물품이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폐기되는 등의 경우, 물품이 관세 면제 또는 관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규정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혹은 적용할 관세가 지급된 경우 세관의 감시가 종료됨

특별 통관절차	주요 내용 및 특징
역내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가공 절차하의 역외 물품은 EU 관세영역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가공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수입 관세, 관련된 조항들에서 규정된 다른 부과금, 상업 정책 수단 등을 적용하지 않음 - 세관 당국은 역내 가공 절차가 종료되어야 하는 기한을 지정해야 하며 그 기한은 역외 물품이 동 절차하에 들어진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함 - 세관 당국은 역내 가공 절차하의 물품이 EU 관세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목적으로 역외 가공 절차를 위해 규정된 조건과 부합하여 일시적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
역외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 가공 절차하의 역내 물품은 가공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EU 관세영역으로부터 수출될 수 있음 - 가공된 제품은 수입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면을 받고, 자유 유통을 위해 반출될 수 있음 - 단 수출이 수입 관세의 면제를 야기하거나, 수출되기 전에 최종 사용으로 인해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 자유 유통을 위한 반출되었거나, 수출이 수출세 환급을 야기하거나 물품, 물품의 수출로 공동 농업 정책하에서 재정적 이익이 부여되는 물품은 역외 가공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세관 당국은 일시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가공된 제품의 형태로 EU 관세영역으로 재수입되어야 하는 기한을 지정해야 함 - 상기 규정은 동 물품이 자유 유통을 위해 최초로 반출되었을 때 제조 또는 재료의 결합이 발생했을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기타 환적물품, 보관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 환적 절차하에서 역외 물품은 수입관세, 다른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기타 세금상업 정책 수단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역내 환적 절차하에서 역내 물품은 EU 관세영역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 세관상태의 변경 없이 한 국가 또는 그 관세영역 밖의 영역을 통과할 수 있음 - 보관 절차하에서 역외 물품은 수입관세, 다른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기타 세금 상업 정책 수단 등을 적용받지 않고 EU 관세영역 내에서 보관될 수 있음 - 보관 절차하에서 역내 물품은 특정한 경우 규정에 따라 보세장치 절차 또는 자유무역지역 절차에 둘 수 있으며 수입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자료: EU법령정보포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21191466211&uri=CELEX:02013R0952-20161224\(검색일자: 2018. 9. 6\)](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21191466211&uri=CELEX:02013R0952-20161224(검색일자: 2018. 9. 6)), 기타 EU내 생산이 없거나 부족한 원재료 및 중간재 품목, EU내 경쟁이 필요한 의약품 및 IT 품목 등에 대해 공동 관세를 한정된 기간 동안 유예해 줌

4. 기타 관세의 환급

- EU는 「UCC」 개정 전 역내가공면세제도를 통해 원재료를 EU역내로 수입하여 가공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주었으나 관세법 개정에 따라 관세감면의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음¹⁹⁸⁾
 - 기존의 역내가공면세제도는 관세 유예 및 관세 환급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따라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원자재 관세 환급과 같은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UCC」 제3편 제3장 수출입 관세의 환급 부분에서 과·오납된 관세의 환급만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된 후 부과되었던 관세를 환급하고 있음

198) 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files/dat/docs/08summer_05.pdf(검색일자: 2018. 9. 30)

VI. 원산지제도

1. 개요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원산지제도는 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에 따라 ①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 ② 특혜원산지(Preferential origin) ③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구분됨¹⁹⁹⁾
 - 「UCC」 제59~63조는 비특혜원산지를 규정하며, 제64~66조는 특혜원산지를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 관련 기타 제도로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BOI)와 인증수출자 등록시스템(REX)이 있음

- 기존의 「관세법(CCC)」과 비교하여 볼 때 「EU 신관세법(UCC)」에서 원산지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해 WTO 원산지규정협약에 따른 원산지가동조화프로그램(Harmonized Working Programme)하에 제정된 작업 목록(List Rules)을 일

199)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introduction_en(검색일자: 2018. 7. 2)

부 수용함

- 기존 관세법(CCC)상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최종적이고(last), 상당하고(substantial),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economically justified) 공정 또는 작업(processing or working)이 이루어진 곳”을 의미함

- 한편 독일의 발급은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상공회의소에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세관에서 하고 있음
 - 유럽공동체관세법(The Community Customs Code) EC Regulation No. 2913/92의 관세법집행규칙인 EC Regulation No. 2454/93에 따라 독일의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독일의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음

2. 비특혜원산지제도

가. 개요

- 비특혜원산지는 상품에 경제적 국적을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모든 종류의 상업적 정책 수단에 사용되고 있음²⁰⁰⁾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무역금지조치, 세이프가드 및 보복 조치, 양적제한뿐만 아니라 일부 관세쿼터, 무역통계, 공공입찰, 원산지표시 등
 - 또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차원에 따라 EU의 수출 환급은 종종 비특혜원산지에 기초함
- EU는 공동통상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무역협정임
 -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개별 회원국의 국내 규정을 대체하고 있음

200)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nonpreferential-origin/introduction_en(검색일자: 2018. 7. 11)

나. 원산지결정

- EU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물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 단일 국가 또는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은 그 국가 또는 영역에서 원산지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함²⁰¹⁾
 - 단일 국가 또는 영역을 초과하여 제조된 물품은 최종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또는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함²⁰²⁾

-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완전생산기준)
 -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실질적 변형기준)
 -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 원산지인정의 최저기준
 - 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 간전재료의 원산지결정
 -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201) 「UCC」 제60조 제1항

202) 「UCC」 제60조 제2항

-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다. 원산지증명

-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원산지가 명시된 경우 관세당국은 신고인에게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²⁰³⁾
 - 상기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관세당국은 추가적인 증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²⁰⁴⁾
 - 원산지 증명 서류는 무역의 긴급한 상황에서 요청되는 경우 EU 차원에서 발행 될 수 있음²⁰⁵⁾

- 「독일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관세법(UCC)」에 따라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C/O) 또는 원산지신고서(D/O)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제출되어야 함²⁰⁶⁾
 - 다만 수입물품의 가치가 1,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식품 및 농산품의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 및 수입통제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음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국가의 자격이 있는 기관이 발행해야 하며, 장관은 연방 관보(Federal Gazette)에 해당 명단을 게재해야 함²⁰⁷⁾
 - 화물발송국(country of dispatch)이 원산지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화물발송국의 자격이 있는 기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03) 「UCC」 제61조 제1항

204) 「UCC」 제61조 제2항

205) 「UCC」 제61조 제3항

206) 「독일 대외무역법(AWG)」 제38조 제1항

207) 「독일 대외무역법(AWG)」 제38조 제2항

-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송장에 기입하거나 송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 관련 다른 서류에 기재해야 함²⁰⁸⁾

3. 특혜원산지제도

가. 개요

- 특혜원산지는 낮은 관세율과 같이 특정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함
 - EU 회원국은 범유로(Pan-EURO)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공통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음
 - 상기 범유로 방식은 주로 예외조항을 포함시킨 HS 4단위의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으로 구성됨
- 특혜원산지제도에 해당하는 다자 및 개별 무역협정 등의 지역무역협정(RTA)을 제외하였으며, 특혜원산지 협정의 공통 조항과 일반특혜관세(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 이하 'GSP')로 범위를 한정함
 - EU에서는 일반특혜관세제도를 197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차 개정 이후 2014년 2차 개정을 통해 GSP 수혜 대상을 조정함
- 한편 EU 신관세법에서는 WTO 원산지규정협약에 따른 원산지가동조화프로그램(Harmonized Working Programme)하에 제정된 작업 목록(List Rules)을 일부 수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원산지판정기준을 마련함²⁰⁹⁾

208) 「독일 대외무역법(AWG)」 제38조 제3항

209)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list-rules_en(검색일자: 2018. 7. 11)

- 각 협정에는 제조된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얻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가공 및 작업 목록을 두고 있음

나. 특혜원산지협정의 공통 조항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개별 협정의 규정은 특정 세부사항에서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특혜원산지협정은 공통 조항을 가지고 있음²¹⁰⁾

- 특혜원산지협정의 주요 공통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원산지(Originating status)
 - 누적(Cumulation)
 -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s)
 - 용인기준(General tolerance rule)
 - 환급불가원칙(No-drawback rule)
 - 영역원칙(Principle of territoriality)
 - 직접운송원칙(Direct transport rule)
 - 원산지증명(Proof of origin)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 유로화로 표시되는 금액 한도와 해당 통화로 표시된 금액
 - EU집행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범유로지중해지역(Pan-Euro-Med zone), 칠레, 중앙아메리카, 멕시코로 조사됨

210)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common-provisions_en(검색일자: 2018. 7. 20)

다. 특혜원산지제도(GSP)

- EU의 GSP제도는 특혜공여 수준에 따라 ① 표준(standard) GSP ② GSP+ ③ EBA(Everything But Arms) 3가지 그룹으로 구분됨
 - 표준(standard) GSP는 현재 176개의 개발도상국 또는 속령이 수혜대상국임
 - GSP+는 지속가능개발, 인권보호, 테러방지 등의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시행하는 일부 취약한 개도국이 수혜 대상국임
 - EBA(Everything But Arms)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CD)에 대해서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quota-free) 혜택을 제공함

- <표 2-VI-1>은 GSP 특혜공여 수준에 따른 GSP 수혜대상 국가를 정리한 것임
 - 표준 GSP 및 GSP+ 수혜대상국은 44개국으로 한정되며, 세계은행(World Bank) 소득통계를 기초로 하위 또는 중하위 국가에 해당함
 - EBA 수혜대상국은 총 49개국으로 아프리카 33개국, 아시아 10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카리브해 연안 1개국이 해당함

<표 2-VI-1> 특혜공여 수준에 따른 GSP 수혜대상 국가

특혜공여 수준	국가명	
표준 GSP(29)	Botswana, Cameroon, Colombia, Congo (Republic of) Cook Islands, Cote d'Ivoire, Fiji, Ghana, Honduras, India, Indonesia, Iraq, Kenya, Kirghizstan, Marshall (Islands), Micronesia (Federate States of), Namibia, Nauru, Nicaragua, Nigeria, Niue, Sri Lanka, Syrian (Arab Republic), Swaziland, Tajikistan, Tonga, Turkmenistan, Ukraine, Uzbekistan, Vietnam	
GSP+(12)	Armenia, Bolivia, Cape Verde, Costa Rica, El Salvador, Georgia, Guatemala, Mongolia, Pakistan, Panama, Paraguay, Peru and the Philippines	
EBA(49)	아프리카	Angola, Beni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Dem. Rep. of the,

특혜공여 수준	국가명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Niger, Rwand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Tanzania, Togo, Uganda, Zambia
	아시아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Cambodia, Lao PDR, Myanmar/Burma, Nepal, Timor-Leste, Yemen
	오세아니아	Kiribati, Samoa, Solomon Islands, Tuvalu, Vanuatu
	카리브해 연안	Haiti

자료: EU집행위원회, *The EU's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GSP)*, pp. 21~22

□ <표 2-VI-2>는 EU의 GSP 수혜자격을 유지하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를 정리한 것임

- 세계은행(world bank) 분류를 통해 최근 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상위 또는 중상위로 분류된 국가의 경우 GSP 자격을 유지하나 수혜대상에서는 제외됨
- 상기 국가에는 총 7개 상위 국가와 1개 영역 및 18개 중상위국가가 포함됨

<표 2-VI-2>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1인당 국민소득		국가명
상위(7)	국가	Saudi Arabia, Kuwait, Bahrain, Qatar, United Arab Emirates, Oman, Brunei Darussalam
	영역	Macao
중상위(18)		Argentina, Brazil, Cuba, Ecuador, Uruguay, Venezuela, Azerbaijan, Belarus, Russia, Kazakhstan, China (People's Republic of), Iran, Gabon, Libya, Malaysia, The Maldives, Palau, Thailand.

자료: EU집행위원회, *The EU's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GSP)*, p. 20

- <표 2-VI-3>은 표준 GSP 수혜대상 품목과 GSP+ 수혜대상 품목을 정리한 것임
 - 표준 GSP는 민감품목(Sensitive)과 비민감품목(Non-sensitive)으로 구분됨
 - 민감품목은 관세인하를, 비민감품목은 무관세정책을 운영 중임

<표 2-VI-3> 표준 GSP 수혜대상 민감품목 및 비민감품목

구분	CN code	설명	
표준 GSP	민감품목	280519	Alkali/alkaline-earth metals other than sodium & calcium
		280530	Rare-earth metals, scandium & yttrium, whether/not intermixed/interalloyed
		281820	Aluminium oxide (excl. artificial corundum)
		310221	Ammonium sulphate
		310240	Mixtures of ammonium nitrate with calcium carbonate/other inorganic non-fertilising substance
		310250	Sodium nitrate
		310260	Double salts & mixtures of calcium nitrate & ammonium nitrate
		320120	Wattle extract
		780199	Unwrought lead other than refined, n.e.s. in 78.01
		810194	Unwrought tungsten (wolfram), incl. bars & rods obt. simply by sintering
		810411	Unwrought magnesium, containing at least 99.8% by weight of magnesium
		810419	Unwrought magnesium (excl. of 8104.11)
		810720	Unwrought cadmium; powders
		810820	Unwrought titanium; powders
		810830	Titanium waste & scrap
		06031200	Fresh Cut Carnations And Bu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24011060	Sun-Cured Oriental Type Tobacco, Unstemmed Or Unstripped

구분	CN code	설명
	39076020	Poly "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 Having A Viscosity Number Of \geq 78 Ml/G")
	85219000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Excl. Magnetic Tape-Type);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Video Tuner (Excl. Magnetic Tape-Type And Video Camera Recorders)
	06031200	Fresh Cut Carnations And Bu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24011060	Sun-Cured Oriental Type Tobacco, Unstemmed Or Unstripped
비민감품목	39076020	Poly "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
	85219000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Excl. Magnetic Tape-Type);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Video Tuner (Excl. Magnetic Tape-Type And Video Camera Recorders)
	280519	Alkali/alkaline-earth metals other than sodium & calcium
	280530	Rare-earth metals, scandium & yttrium, whether/not intermixed/interalloyed
GSP+	281820	Aluminium oxide (excl. artificial corundum)
	780199	Unwrought lead other than refined, n.e.s. in 78.01

자료: EU집행위원회, *The EU's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GSP)*, pp. 23~24

라. 작업 목록(List Rules)²¹¹⁾

- 작업 목록(List Rules)은 제조된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을 의미함
 - 기존 「관세법(CCC)」은 특혜가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해석상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많은 논란을 발생시켜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관세법(UCC)에서는 작업 목록(List Rules)를 일부 수용함

- <표 2-VI-4>는 작업 목록(List Rules)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규칙을 예시를 통해 나타낸 것임
 - a: 완전생산물품이 사용될 수 있음
 - b: 특정 지위의 비원산지재료가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음
 - c: 특정 작업 또는 가공 공정이 수행되어야 함
 - d: 생산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가치가 추가되거나 초과될 수 없음
 - e: 다른 규칙들의 조합
 - f: 다른 규칙 중 선택

- 상기 처음 두 열(columns)의 항목에 대해 3열과 4열 모두에 규칙이 지정된 경우 수출자는 3열에 설정된 규칙 또는 4열(g)에 설정된 규칙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 그러나 상기 일반적인 규칙 이외에도 다른 규칙이나 조건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속서를 확인해야 함
 - 모든 협정별 목록은 해당 사이트(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arrangements-list_en)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211)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list-rules_en(검색일자: 2018. 7. 20)

〈표 2-VI-4〉 작업 목록(List rules)의 일반적인 규칙 예시

a	Chapter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Chapters 1 and 2 used are wholly obtained
	...
b	ex 2104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of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prepared or preserved vegetables of headings 2002 to 2005
	...
c	ex 4407
	Wood sawn or chipped lengthwise, sliced or peeled, of a thickness exceeding 6 mm, planed, sanded or end-jointed
	Planing, sanding or end-jointing
	...
d	Chapter 92
	Musical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e	2202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cluding fruit or vegetable juices of heading 2009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7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and - in which all the fruit juice used (except that of pineapple, lime or grapefruit) is originating
	...
f	7013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table, kitchen, toilet, office, indoor decoration or similar purposes (other than that of heading 7010 or 7018)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or Cutting of glassware, provided that the total value of the uncut glassware used does not exceed 5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or Hand decoration (except silk-screen printing) of hand-blown glassware, provided that the total value of the hand-blown glassware used does not exceed 5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g	8411
	Turbo-jets, turbo-propellers and other gas turbines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and -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25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4. 관세동맹(Customs Unions)

- 관세동맹 내에서의 상품의 이동은 자유로운 유통(free circulation)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에 근거함
 -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관세동맹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산지제도에 근거한 우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EC는 안도라(Andorra), 산마리노(San Marino), 터키(Turkey) 3개국과 관세동맹을 맺고 있음
 - 안도라의 경우 농산물을 제외한 HS 제25~97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동맹 혜택이 적용됨²¹²⁾

212)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customs-unions/andorra-customs-unions-and-preferential-arrangements-andorra_en(검색일자: 2018. 7. 9)

- 산마리노의 경우 석탄 및 철강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동맹 혜택이 적용됨²¹³⁾
 - 터키의 경우 암스테르담 협약의 부속서 1에 정의된 바와 같이 농산물을 제외한 석탄 및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동맹 혜택이 적용됨²¹⁴⁾
- 상기 개별 관세동맹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은 해당 사이트(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customs-unions_en)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 일반정보
 - 법적근거
 - 특정조항
 - 원산지규정

5. 기타 원산지 관련 제도

가. 원산지 사전심사제도(BOI)

1) BOI 관련 결정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Binding Origin Information, 이하 'BOI')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회원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임
- 「UCC」 제33~34조는 BOI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함

213)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customs-unions/san-marino-customs-unions-preferential-arrangements_en (검색일자: 2018. 7. 9)

214)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customs-unions/turkey-customs-unions-preferential-arrangements_en(검색일자: 2018. 7. 9)

- BOI의 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U 세관당국에 접수되지 않음²¹⁵⁾
 - BOI 보유자가 이미 발급받은 동일 상품에 대해 발급한 세관 또는 다른 세관에 신청한 경우, 특히 같은 원산지 기준하에서의 신청
 - BOI의 의도된 사용, 세관절차를 위해 의도된 사용과 관련이 없는 신청

- BOI의 결정은 상품의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결정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짐²¹⁶⁾
 -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에 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품에 한함
 -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함

- BOI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음²¹⁷⁾
 - 다만 EU 공동 관세율표 수정의 채택과 비관세율 수단 채택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유효기간이 중단됨

- BOI 결정을 적용하기 위해 사전심사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holder)는 다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함²¹⁸⁾
 - 당해 물품과 원산지취득을 결정하는 상황이 모든 면에서 기재된 설명과 일치한다는 점

2) BOI 관련 결정의 관리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관세당국에 다음을 통보해야 함²¹⁹⁾
 -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BOI 결

215) 「UCC」 제33조 제1항

216) 「UCC」 제33조 제2항

217) 「UCC」 제33조 제3항

218) 「UCC」 제33조 제4항

219) 「UCC」 제34조 제10항

정을 보류

○ 동 보류 결정에 대한 철회

□ EU집행위원회는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BOI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음²²⁰⁾

□ 특정한 경우 회원국 관세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BOI 이외의 세관규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함²²¹⁾

○ 이는 상품 무역에 관한 수입 또는 수출 관세 및 기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해야 함

3) BOI의 신청²²²⁾

□ BOI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기관은 BOI가 사용될 회원국의 세관당국 또는 신청자가 소재한 회원국의 세관당국으로, 신청물품은 제조과정에서 같은 원산지로 이루어진 제품이어야만 함

□ 상기 BOI 신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BOI 소지자의 성명 및 주소

○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 BOI 소지자와 다른 경우

○ 특혜 또는 비특혜 관세 여부

○ 제품의 상세한 명세와 품목분류

○ 제품의 구성방법, 원산지 결정 시 사용될 검사방법, 공장도 가격

○ 원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 가격과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220) 「UCC」 제34조 제11항

221) 「UCC」 제35조

222)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제5조 내지 제14조

- 제품과 원재료와의 구성관계와 제조과정을 보여주는 샘플, 사진, 도면, 카탈로그 등
- 신청한 회원국 세관당국에서 요청 시 첨부 서류에 대해 당해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것에 동의
- 일반대중 또는 행정기관에 대해 비밀로 취급될 특정한 내용을 신청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 또는 상기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과 관련된 제품 또는 원재료에 대해 EU 내에서 과거에 BOI를 신청했거나 발급받았는지 여부
- 제공한 정보에 대해 EU집행위원회의 DB에 저장돼 공개되는 것을 수락 등

나. 인증수출자 등록시스템²²³⁾

1) 개요

- 인증수출자 등록시스템(Registered Exporter System, 이하 'REX 시스템')은 2017년 1월 1일부터 GSP에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인증 시스템으로 도입된 바 있음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REX 시스템은 정부 당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경제운영자가 특정 조건하에서 작성한 송품장에 근거한 현행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완전히 대체함
 - 이는 REX 시스템이 지역 누적(cumulation)을 적용하는 GSP 수혜국 간에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223)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arrangements-list/generalised-system-preferences/the_register_exporter_system_en(검색일자: 2018. 10. 15)

- 현행 원산지증명시스템에서 REX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행기간은 GSP 수혜국에 따라 상이함
 - 2020년 7월 1일부터 GSP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서식(Form A)은 REX 시스템으로 전면 대체될 예정임
 - REX 시스템에 따라 6,000유로 이하 제품의 경우 수출자 본인 스스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지만, 6,000유로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인증수출자만 자율발행이 가능함

- 한편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REX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EU와 체약상대국 간의 양자간무역협정의 맥락에서 적용될 것이며, 「UCC 이행규정」 제68조 제1항²²⁴⁾은 EU가 제3국과 체결한 FTA에서 REX 시스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언급함²²⁵⁾
 - 예를 들면 EU-캐나다 CETA와 EU-베트남 FTA의 경우 이미 협정문상에서 REX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음²²⁶⁾
 - EU-캐나다 CETA 원산지의정서 제19조에서 원산지신고는 EU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자가 EU에서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
 - EU-베트남 FTA 원산지의정서 제25(1)조에서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베트남으로 수입 시 전자DB에 등록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는 제출 시 동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인증수출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각 특혜협정은 고유의 법령을 만들고 REX

224) Article 68(1)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015/2447 states that “1. Where the Union has a preferential arrangement which requires an exporter to complete a document on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Union legislation, such a document may be completed only by an exporter who is registered for that purpose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a Member State. The identity of such exporters shall be recorded in the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referred to in the Annex to Implementing Decision 2014/255/EU. Subsections 2 to 9 of this Sec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225) EU집행위원회,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Guidance document*, 2017. 7, p. 23

226) EU집행위원회(2017), p. 5

번호를 보유한 사업자는 다각적인 등록의 사용을 인지해야 함에 따라 각 개별 협정에서 관련 조항을 참고해야 함²²⁷⁾

- 따라서 EU가 체결한 제3국과의 FTA에서 REX 시스템이 적용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바, REX 시스템에 등록된 인증수출자라면 국내 수출업체도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수입업체들은 상대 유럽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를 알 수 없어 FTA 관세절감을 받지 못하거나 유럽기업들이 통관서류의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란에 사업자번호 등의 유사 번호를 오기하여 오히려 추징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알려짐²²⁸⁾
 - 국제원산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REX 시스템을 통해 EU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수입업체는 해당 수출업체가 한-EU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함²²⁹⁾
- 다만 REX 시스템에서의 인증수출자 등록은 수출업체의 신청에 따라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모두 조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인증수출자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증수출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인증수출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 주요 기능

- REX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크게 ① 수출업체의 등록 ② 등록된 데이터의 수정 ③ 수출업체의 취소 세 가지로 구분됨

227) EU집행위원회(2017), p. 6

228) 한국무역협회,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viewFtaNews&idx=32725&pageNo=1&column=&field=&mainNum=060207>(검색일자: 2018. 10. 15)

229) 국제원산지정보원, 『국가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운용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7. 12, p. 173

- 수출업체의 등록은 수출업체의 신청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신청서를 제출한 수출업체에 한해 수입국의 관할 당국이 등록함
 - REX 시스템에 등록되는 거래자 및 수출업체는 다음 유형으로 구분됨
 - GSP 수혜국의 수출업체
 - 원산지 누적을 목적으로 GSP 수혜국에 수출하는 EU 운영자
 - REX가 적용되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EU 운영자
 - GSP 수혜국에서 최초 작성된 원산지증명을 대체하는 EU 운영자

- 등록된 수출업체는 등록된 내용의 모든 변경 사항을 관할 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관할 당국은 이를 수행함
 - 등록된 수출업체는 관할 당국에서 REX 시스템의 번호를 부여받으며, 해당 번호는 발행 국가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35개의 영문 및 숫자로 이루어짐

- 수출업체의 취소는 경우에 따라 수출업체의 요청 또는 관할 당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해당 업체의 폐업 또는 해당 업체가 사기를 저지른 경우 등

- [그림 2-VI-1]과 같이 EU의 REX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 등록된 수출업체는 등록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REX 시스템의 번호와 등록자 유효기간은 공개됨

[그림 2-VI-1] REX 번호 유효성 확인 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the 'REX number validation' page on the European Commission's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header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logo and the text 'TAXATION AND CUSTOMS UNION'. Below this, a navigation bar contains the breadcrumb 'European Commission > Taxation and Customs Union > Databases > REX > REX number validation' and links for 'Mail Box' and 'Search'. A secondary navigation bar includes 'Legal notice | Contact | Search | English (en)'. A message states: 'New Customs Decisions number validation open interface is now available, it can be found [here](#).' Below this, the main heading is 'REX number validation'. A blue box titled 'Retrieve REX number validation' contains the instruction: 'You can launch a validation request by entering the REX or EORI/TIN number and clicking the corresponding "Validate" button.' There are two search options: 'Search on REX number' with a text input field and a 'Validate' button, and 'Search on [dropdown] number' with a text input field and a 'Validate' button. A 'Top' link i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main content area.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rex_validation.jsp?Lang=en
(검색일자: 2018. 7. 23)

VII. 보세제도

1. 개요

- EU 역내 상품은 수입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혜택을 목적으로 보세창고 또는 자유 지역에 보관될 수 있음²³⁰⁾
 - 「UCC」 제3장(장치) 제237~239조는 보세창고와 자유지역의 공통 조항으로서 범위, 장치 기간, 이행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240~242조는 보세창고를, 제243~249조는 자유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독일의 보세제도는 크게 보세창고(Customs Warehousing)와 자유지역(Free Zone)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세창고(Customs Warehousing)는 역외 상품이 역내 보세창고로 승인된 모든 지역에 관세납부를 유예하고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자유지역(Free Zone)은 역내 특별지역으로서 역외에서 반입된 모든 물품이 자유유통될 때까지 관세 등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임

230) 「UCC」 제237조 제2항

- 보세창고와 자유지역은 외국물품이 보세상태로 반입된다는 점에서 보세제도로서의 공통점을 가짐

- 반면, 보세창고와 자유지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보세창고의 경우 보세구역 내 장치되어 있는 물품 및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엄격한 통제 및 관리하에 있음
 - 자유지역의 경우 비관세지역으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은 아니지만, 경계 및 출입지점 등의 외곽관리와 물품의 반출에 대해서만 세관의 관리를 받음

2.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가. 공통 조항

1) 장치의 범위

- 장치 절차상 EU 역외 상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르지 않고 역내 관세영역에 보관될 수 있음²³¹⁾
 - 수입관세
 -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기타 수수료
 - 상업적 정책수단

- EU 역내 상품은 특정 분야를 규율하는 관련법에 따라 수입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혜택을 목적으로 보세창고 또는 자유지역에 장치될 수 있음²³²⁾

231) 「UCC」 제237조 제1항

232) 「UCC」 제237조 제2항

- 관세당국은 경제적 필요성이 있고 세관의 감독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 한 보세창고 보관시설에 EU 역내 물품의 보관을 허가하며, 그러한 물품은 보세창고 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²³³⁾

2) 장치 절차의 기간

- 장치 절차하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야 함²³⁴⁾
 - 물품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할 경우 건강 또는 환경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보관 기간은 무제한이 될 수 있음
- 한편 예외적인 경우, 관세당국은 장시간 보관 시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 및 환경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종류 및 성질을 가진 물품의 보관 절차에 대한 기간을 정할 수 있음²³⁵⁾

3) 이행 권한의 부여

- EU집행위원회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지역 절차에 따라 역내 물품의 장치를 위한 절차 규칙을 이행법으로 명시해야 함²³⁶⁾
 - 이행법은 EU집행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함

233) 「UCC」 제237조 제3항

234) 「UCC」 제238조 제1항

235) 「UCC」 제238조 제2항

236) 「UCC」 제239조

나. 보세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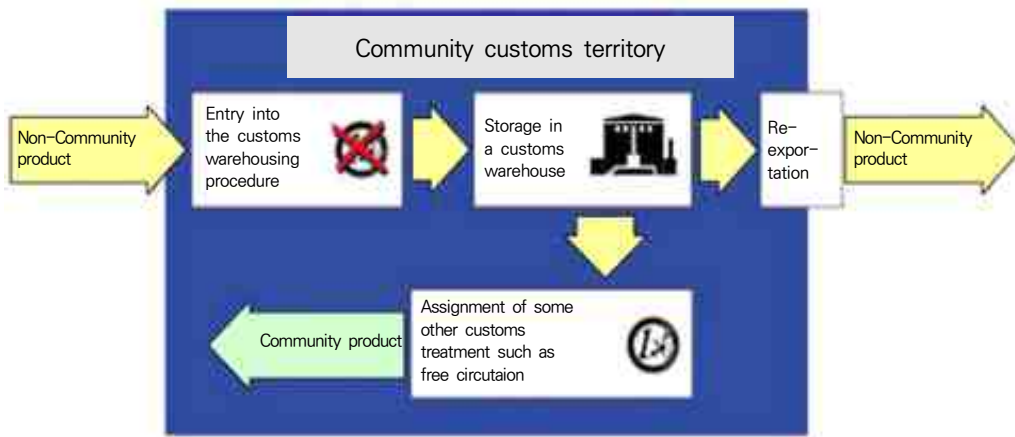
1) 개요²³⁷⁾

- 보세창고(Customs Warehousing)는 EU 역외 상품이 EU 역내 보세창고로 승인된 모든 지역에 관세납부를 유예하고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보세창고 운영에는 세관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승인을 얻기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EU 관세영역에 설치할 것
 - 운영의 적절한 수행에 대한 필요한 보증을 제공할 것
 - 관세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할 것
- 보세창고의 절차에 따라 물품은 EU 역내에서 세관이 허가한 특정 장소 또는 기타 지역(보세창고)에서 정기적인 보관이 가능함
- 보세창고는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기간 동안 수입 허가 또는 수입 면허와 같은 무역조치를 준수해야 함
 - 동 영역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관세는 보관기간의 만료 또는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다른 관세절차에 따라 완료된 후에만 지급됨

237)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Procedures/Customs-warehouse/customs-warehouse_node.html(검색일자: 2018. 7. 9)

[그림 2-VII-1] 보세창고

Customs warehouse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Procedures/Customs-warehouse/customs-warehouse_node.html(검색일자: 2018. 7. 9)

2) 보세창고에서의 보관

- 보세창고 보관절차에 따라 EU 역외상품은 관세당국과 세관의 감독하에 허가된 역내 또는 기타 장소에 보관될 수 있음²³⁸⁾
- 보세창고는 공공보세창고(Public customs warehouses)와 민간보세창고(private customs warehouses)로 구분됨²³⁹⁾
 - 공공보세창고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보세창고는 보세창고 허가 소지자가 물품 보관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일시적으로 제거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제거는 불

238) 「UCC」 제240조 제1항

239) 「UCC」 제240조 제2항

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관세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²⁴⁰⁾

3) 보세창고에서의 가공

- 관세당국은 경제적 필요성이 있고 세관의 감독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 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에서 역내 가공 또는 최종 사용 절차(end-use procedure)에 따라 물품의 가공을 허가할 수 있음²⁴¹⁾
- 한편 상기 물품은 보세창고 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²⁴²⁾

4)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 허가 또는 절차소지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음²⁴³⁾
 - 보세창고 물품이 세관의 감독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보세창고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의 보관으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
- 허가가 공공보세창고(Public customs warehouses)와 관련된 경우 상기 언급된 책임은 절차 소지자에게만 부여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음²⁴⁴⁾
- 절차 소지자는 보세창고 절차하에 물품의 인도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²⁴⁵⁾

240) 「UCC」 제240조 제3항
241) 「UCC」 제241조 제1항
242) 「UCC」 제241조 제2항
243) 「UCC」 제242조 제1항
244) 「UCC」 제242조 제2항
245) 「UCC」 제242조 제3항

다. 자유지역

1) 개요

- 자유지역(Free zones)은 EU 세관당국 영역 내에 있는 특별 지역으로 EU 역외에서 반입된 모든 물품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 및 각종 수입 관련 비용 없이 반입될 수 있음
 - EU 물품은 자유지역에서 보관, 운송, 사용, 가공 또는 소비될 수 있으며, 이후 EU 관세영역으로 재수출될 수 있음
 - 따라서 자유지역은 EU 역외물품이 EU 역내 생산 물품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며, 무역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한 서비스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다음 2개의 자유지역을 두고 있음
 - 독일 북부에 위치한 브레머하펜 자유항(Freeport of Bremerhaven)과 쿡스하펜 자유항(Freeport of Cuxhaven)이 있음

- EU 회원국 및 관할 세관당국의 자유지역 목록은 해당 사이트(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ustoms-procedures/what-is-importation/free-zones_en)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2) 자유지역의 지정

- EU 회원국은 역내 관세영역의 일부를 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²⁴⁶⁾
 - 각 자유지역에 대해 회원국은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출입 지점을 정의해야 함

246) 「UCC」 제243조 제1항

- EU 회원국은 운영 중인 자유지역에 관한 정보를 EU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함²⁴⁷⁾
- 자유지역은 폐쇄적이어야 하며, 자유지역의 경계 및 출입 지점은 세관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음²⁴⁸⁾
- 자유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물품 및 운송 수단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²⁴⁹⁾

3) 자유지역 내 역내 물품

- EU 역내 물품은 자유지역에서 반입, 장치, 이동, 사용, 가공 또는 소비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은 자유지역 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²⁵⁰⁾
- 관세당국은 다음의 경우 EU 역내 물품으로 관세 지위를 확정할 수 있음
 - 자유지역에 반입되는 역내 물품
 - 자유지역 내에서 가공절차를 거친 역내 물품
 - 자유지역 내에서 자유유통을 위해 생산된 물품

4) 자유지역 내 역외 물품

- 자유지역 내 역외 물품은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되거나 역내가공, 일시반입 또는 최종 사용 절차하에 놓여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해당 물품은 자유지역 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²⁵¹⁾

247) 「UCC」 제243조 제2항

248) 「UCC」 제243조 제3항

249) 「UCC」 제243조 제4항

250) 「UCC」 제246조 제1항

251) 「UCC」 제247조 제1항

5) 자유지역 외 반출

- 관세 이외의 다른 법령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지역의 물품은 EU 역내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되거나 EU 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될 수 있음²⁵²⁾

252) 「UCC」 제248조

VIII. 수출입규제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수입 제한 및 규제 조치에 따르고 있음
 -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EU 및 독일로 수입, 수출, 운송되는 물품은 ① 공공질서보호 ② 환경보호 ③ 건강보호 ④ 야생동물보호 ⑤ 식물보호 ⑥ 지식재산권 보호 ⑦ 산업재산권 보호 ⑧ 문화재 보호의 목적에 따라 수출, 수입 및 운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역내물품은 수입금지 및 제한 상태가 설정되면 세관 감시를 해제하고 역외로 반출해야 함
 - 역외물품은 수입금지 및 제한 상태가 변경되거나 EU 관세영역 외로 반출되거나 또는 폐기될 때까지 세관 감시하에 두어야 함
 - 세관감시 대상의 물품의 소유자는 특별히 품목분류, 과세가격 평가, 세관 통관 시 상태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세관의 승인을 얻어 언제든지 물품을 검사하고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

□ 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수출입이 금지 및 제한되는 물품에는 무기, 화학류, 전쟁무기, 화학무기 및 전구체, 폭탄, 방사성 물질, 미성년자에 유해한 물품 등이 있음

〈표 2-VIII-1〉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일반 무기, 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렵무기, 슈팅 볼펜, 기관단총, 소총, 나비칼, 강철막대, 황동너클, 전기 및 전자 야간 투시경, 화기용 레이저 장치 등 수출입 금지 - 그 외 품목 허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무기법(Waffengesetz)」 - 「독일일반무기법(Allgemeine Waffengesetz-Verordnung)」 - 「총기, 총알, 추진 장치로 사용되는 탄약, 탄약 및 기타 무기의 시험 및 허가에 관한 법률(Beschussgesetz)」 - 동법규정(Beschussverordnung) Regulation(EU) 258/2012 등 	연방경찰청 (the 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전쟁 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화학적 무기, 대인지뢰, 확산탄 수출입 금지 - 그 외 품목 허가 필요 (민간용 또는 과학, 의료 또는 산업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장비, 물질 및 유기물 허가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무기통제법(Kriegswaffenkontrollgesetz, KrWaffKontrG)」 - 전쟁무기 목록(Kriegswaffenliste) - 「전쟁무기승인규칙(Kriegswaffengenehmigungs-verordnung)」 - 「2차 대전 무기허가규칙(Zweite Kriegswaffengenehmigungs - v erordnung)」 등 	연방 경제 및 기술부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연방 경제 수출 통제국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화학 무기 및 전구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협약국으로의 수출입금지 - 원산지, 출발지, 목적지 또는 다른 운송국이 비 협약국인 경우 수출입 금지 - 그 외 수출입 허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협약(Chemiewaffenübereinkommen)」 - 「화학무기협약 이행법(Ausführungsgesetz zum Chemiewaffenübereinkommen)」 - 「화학무기협약 이행규칙(Ausführungsverordnung zum Chemiewaffenübereinkommen)」 등 	연방 경제 수출 통제국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폭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파이로 테크닉(pyrotechnic) 조성물, 기폭 장치, 불꽃 공예품, 점화기 발파 액세서리 (예 : 점화 케이블, 점화기) - 수송(마케팅, 구매, 유통)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법(Sprengstoffgesetz)」 - 「폭발물법 규칙1(Ers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 「폭발물법 규칙2(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등 	연방 경제 수출 통제국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연방 물질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허가 필요 - 수입(생산, 가공, 저장, 소비, 사용, 파괴) 허가 필요		검사기관(Federal Institute for Materials Research and Testing)
방사성 물질	- 핵연료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운송은 허가 필요 없음 - 방사성 폐기물이나 사용한 핵연료의 운송허가 필요 - 장난감, 보석류, 식료품 및 담배 제품과 같은 특정 소비재에 방사성 물질을 섞었을 시 수출입 금지 - 그 외 모두 수출입 허가 필요	- 「원자력법(Atomgesetz)」 - 「방사선 피해 방지에 관한 규칙 (Atomrechtliche Abfallverbringungsverordnung)」 - 「핵폐기물 선적규칙 (Strahlenschutzverordnung)」 등	연방 경제 수출 통제국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미성년자에 유해한 물품	- 미성년자에게 심각하게 유해한 미디어, 글 등의 물품(전쟁, 존엄성 침해, 현실적이고 잔인한 표현, 음란물 등) 수출입 금지 - 18세미만의 청소년에게 배포를 목적으로 한 위법 자료(위법 조직의 선전, 위법 조직 기호, 연방정부, 국가, 군대 등을 모욕하는 내용의 자료) 수출입 금지	- 「형법(Strafgesetzbuch)」 -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등	청소년 유해 미디어 검사국 (National inspecting authority for youth harming media) 연방헌법 보호국(Federal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주: 1) 관련법은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관련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Verbote-Beschaerungen/Schutz-der-oeffentlichen-Ordnung/schutz-der-oeffentlichen-ordnung_node.html(검색일자: 2018. 8. 20)

□ 환경 보호를 위해 수출입이 금지 및 제한되는 물품은 폐기물, 화학물질 및 혼합제품 등이 있음

〈표 2-VIII-2〉 환경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극 사용용 폐기물 수출 금지 - 녹색 폐기물(Regulation (EC) 1013/2006의 Annex III)의 수출은 물품에 Regulation(EC) No. 1013/2006 따른 서류가 첨부된 경우 가능 - 녹색 및 황색 폐기물 (Regulation(EC) No. 1013/2006의 Annex IV)의 수입은 별도 허가가 필요 - 황색 폐기물의 경우 수입 시 별도의 통지 절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EC) 1013/2006 - 「폐기물운송법 (Abfallverbringungsgesetz)」 등 	<p>연방 환경, 자연 보전 및 핵 안전성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p> <p>연방 환경청 (Federal Environment Agency)</p>
화학 물질 및 혼합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허가, 라벨링, 수출허가 필요 - 살충제는 연방 산업 안전 보건연구소에서 확인되었거나 화학물질법에 따라 신고된 물품만 수입 가능 - 기타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퓨란, 벤젠, 방향족 아민, 비소, 수은, 카드뮴 화합물, 폴리 염화 비페닐 및 폴리 염화테르페닐 등 모두 수출입 허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법(Chemikaliengesetz)」 - 「화학물질법에 따른 규칙(Chemikalien-Verbotsverordnung)」 - Regulation(EC) 1005/2009 - Regulation(EU) 517/2014 - Regulation(EU) 649/2012 - Regulation(EC) 850/2004 - Regulation(EC) 1102/2008 - Regulation(EC) 1907/2006 - Regulation(EU) 528/2012 등 	<p>연방 화학 물질청 (Federal Agency for Chemicals)</p> <p>연방 환경, 자연 보전 및 핵 안전성(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p> <p>연방 산업안전보건 연구소 (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p> <p>연방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국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p>

주: 1) 관련법은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에 게재 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관련 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Verbote-Beschaerungen/Schutz-der-Umwelt/schutz-der-umwelt_node.html(검색일자: 2018. 8. 20)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이 금지 및 제한되는 물품에는 제품안전에 관한 라벨링이 필요한 물품, 미용약품, 담배제품, 음식, 포도주, 유기농제품, 의약품, 마약 등이 있음

〈표 2-Ⅷ-3〉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제품 안전 라벨 물품	- 제품의 안전성 및 요구 사항 준수에 관한 수입 통제 규칙에 따른 라벨링 취득 필요	- 「제품 안전법 (Produktsicherheitsgesetz)」 - 「의료 기기법 (Medizinproduktegesetz)」 - 「전자기 적합성법 (Elektromagnetisches Verträglichkeitsgesetz)」 - 「라디오장비법(Funkanlagenengeset)」 - 「에너지 관련 제품법 (Energieverbrauchsrelevante-Produkte-Gesetz)」 - Regulation(EC) 765/2008 등	연방 경제 및 에너지 자원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미용 약품	- EU집행위원회 관할 포털(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제품 등록 필요 - 비누, 샤워 제품이나 자외선 차단제, 샴푸, 염색제, 구강 청정제, 치약, 향수, 애프터 셰이브 로션, 탈취제 립스틱, 아이섀도 등이 해당됨	- Regulation(EU) 2016/1198 - Regulation(EC) 1223/2009 - 「독일 식품 및 사료법(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등	연방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국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담배 제품	- 담배법에 따라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의 함량과 마찬가지로 경고 또한 포장에 포함되어야 함 - 규정 된 니코틴 및 응축 한도에 따른 수출입 허가 필요	- 「독일 담배법 (Tabakerzeugnisgesetzes)」 - Directive 2001/37 / EC - Directive 2014/40 / EU 등	연방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국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음식	- 일부 동물성 식품(야생 버섯, 땅콩,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특정 제3국의 식품)은 허가 세관에서만 통관 가능 - 특정 식품의 경우 식품 검사 당국의 허가하에 수입 가능	- 「동물법(Tiergesundheitsrecht)」 - 「중보호법(Artenschutzrecht)」 - Regulation(EU) 884/2014 - Regulation(EC) 669/2009 - Regulation(EC) 1135/2009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포도주	- 수입승인 필요	- Regulation(EU) 1308/2013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유기농 제품	- 살아 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해조류 및 야생 식물 포함) -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공 농산물, 양식업 제품, 먹이, 식물 재배 물질 및 재배용 종자 또는 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 등에 인증서 필요	- Regulation(EC) 1235/2008 - Regulation(EC) 834/2007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의약품	- 피임 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또는 전리 방사선이 사용된 의약품, 유효 기간 만료된 의약품 수출입 금지 - 그 외 수출입 허가 필요	- 「독일 의약품 (Arzneimittelgesetz umgesetzt)」 등	연방보건부 (Federal Ministry of Health)
마약	- 수입, 수출, 판매, 마케팅, 제조, 무역, 거래, 수입에 연방 마약국 (Federal Institute for Drugs) 허가 필요 - 약국에서 다루는 마약, 치과 또는 수의사 처방, 치과 또는 수의학 처방에 근거하여 여행 요건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환자 또는 애완동물 주인,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의 맥락에서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수의사 등은 허가 취득 예외 - 마약은 연방 재무부가 지정한 세관을 통해서만 수출입 가능	- 「마약 처방전 규칙 (Betäubungsmittel-Verschreibungsverordnung)」 - 「마약 외국 무역 규칙 (Betäubungsmittel-Außenhandelsverordnung)」 - 「마약 거래 내역 규칙 (Betäubungsmittel-Binnenhandelsverordnung)」 - 「마약 비용 규칙 (Betäubungsmittel-Kostenverordnung)」 등	연방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

주: 1) 관련법은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관련 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Verbote-Beschaenkungen/Schutz-der-menschlichen-Gesundheit/schutz-der-menschlichen-gesundheit_node.html(검색일자: 2018. 8. 20)

□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이 금지 및 제한되는 물품에는 희귀종, 동물보

건법에 따른 동물 및 동물성 제품, 동물병원균 및 백신, 사료, 동물제품, 불법어업 관련 수산물 등이 있음

〈표 2-Ⅷ-4〉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희귀종	- CITES 문서와 같은 종 보호법에 필요한 서류에 따른 수출입 허가 필요 - 수입 또는 수출은 허가된 세관을 통해서만 가능	- 「연방자연보호법(Bundesnaturschutzgesetz)」 - 「연방자연보호규칙(Bundesartenschutzverordnung)」 - Regulation(EC) 338/97 등	연방 환경, 자연 보전 및 핵 안전성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동물 보건법	- 제3국에서 생산되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국경 검사소에서 검역 필요 - 국가 규정상 개별 동물 또는 물품에 대해 수입 허가서 제출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수출 시 EU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 통제 가능	- 「동물 보호 운송 규칙(Tierschutztransportverordnung)」 - 「동물 보건법(Tiergesundheitsgesetz)」 - Regulation(EC) 136/2004 - Regulation(EC) 282/2004 등	연방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국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동물 병원균, 백신	- 백신 및 항원 제제 및 동물 병원균 관련 물질 수입은 사안에 따른 수입허가 필요	- 「동물 전염병 수입령(Tierseuchenerreger-Einfuhrverordnung)」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운송 제한	- 동물 운송은 관할 당국(수의 당국, 세관 당국)에 의해 중단 및 통제	- Regulation(EC) 1/2005 - 「동물 보호 운송 규칙(Tierschutztransportverordnung)」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사료	- 사료 재료, 화합물 사료 등에 대한 별도 표기, 세관에 별도 서류 제출, 수입 허가 필요	- 「식품 및 사료법(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 - Directive 98/68 / EC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동물 제품	- 고양이, 개, 모피, 바다물범 등은 수출입 금지 - 단 여행자 또는 가족 구성원 또는 선물로서의 개인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등 한정적인 경우만 허가	- Regulation(EC) 1523/2007 - Regulation(EC) 1007/2009 - Regulation(EU) 2015/1850 - 「동물 보호 무역 금지법(Tiererzeugnisse-Handels-Verbotsgesetz)」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보호 어류	- IUU어업(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fishing)어업)이 아닌 어업으로 획득한 어류만 수입 허가	- Regulation(EC) 1005/2008 - Regulation(EC) 1010/2009 - 「바다어업법(Seefischereigesetz)」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주: 1) 관련법은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관련 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Verbote-Beschaerungen/Schutz-der-Tierwelt/schutz-der-tierwelt_node.html(검색일자: 2018. 8. 20)

□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이 금지 및 제한되는 물품에는 희귀종 식물, 식물보호법에 따른 유해식물, 종자 및 묘목, 증식종자, 불법 벌목 관련 목재 등이 있음

〈표 2-VIII-5〉 식물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희귀종	- CITES 문서와 같은 종 보호법에 필요한 서류에 따른 수출입 허가 필요 - 수입 또는 수출은 허가된 세관을 통해서만 가능함	- 「연방자연보호법(Bundesnaturschutzgesetz)」 - 「연방자연보호규칙(Bundesartenschutzverordnung)」 - Regulation(EC) 338/97 등	연방 환경, 자연 보전 및 핵 안전성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유해 식물	- 유해 식물 및 오염된 식물 수입, 운송 및 수출 허가 필요 - 식물 보호법 해당 식물은 허가된 세관을 통해서만 수입 및 수출 가능	- 「식물 보호법(Pflanzenschutzgesetz)」 - 「식물 검사 규칙(Pflanzenbeschauverordnung)」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제조제	- 특정 식물 보호 제품 또는 특정 물질을 포함하는 식물 보호 제품의 수출을 금지 - 화학물질법에 따른 포장 및 라벨링 표기 준수해야 수입 가능	- 「식물 보호법(Pflanzenschutzgesetz)」 - 「화학물질법(Chemikaliengesetz, ChemG)」 - Regulation(EC) 1107/2009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종자 및 묘목	-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씨앗 절단된 줄기, 절단 된 잎 및 뿌리, 마이크로 식물 전파 배아, 싹, 묘목(종자 또는 식물 일부 또는 자연에서 자란 식물) - 식물 종류에 따른 수입 허가 필요	- 「산림 생식 재료법(Forstvermehrungsgutgesetz)」 - 「산림 생식 물질 규제 시행규칙(Forstvermehrungsgut-Durchführungsverordnung)」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증식 종자	- 과일 및 관상용 식물의 종자를 제외한 식물의 생산을 위한 종자(감자 모종, 포도 나무의 모종, 식물 및 식물의 일부를 생산하기 위한 채소, 과일, 재배용 야채, 과일 등) - 수입 세관에서 수입 통보서를 연방 식품농업부의 인증서와 함께 제출해야만 수입 가능	- 「수입 종자의 통제 및 시범에 관한 규칙(Verordnung über die Meldung und Vorführung von Saatgut bei der Einfuhr)」 - 종 목록(Artenverzeichnis) - 「부속 물질 규칙 Anbaumaterialverordnung)」 - 「종자 교역법 (Saatgutverkehrsgesetz)」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불법 벌목	- 합법적 벌목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Action Plan)에 따른 협약국의 라이선스 취득해야 수입 가능	- Regulation(EU) 2173/2005 - Regulation(EU) 1024/2008 - 「목재무역보증법(Holzhandels-Sicherungs-Gesetz)」 등	연방 식품 농업부 (Food and Agriculture Ministry)

주: 1) 관련법은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관련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Verbote-Beschaerungen/Schutz-der-Pflanzenwelt/schutz-der-pflanzenwelt_node.html(검색일자: 2018. 8. 20)

□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이 금지 및 제한되는 물품에는 등록 상표, 특허, 유틸리티 모델, 디자인, 저작권, 식물 다양성 보호, 반도체 보호 관련법을 위반한 물품이 있으며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압류하거나 몰수함

〈표 2-Ⅷ-6〉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산업 재산권 보호	- 수출입 물품의 몰수 및 압류 (등록 상표, 특허, 유틸리티 모델, 디자인, 저작권 식물 다양성 보호, 반도체 보호 등에 대한 법 위반 확인 시)	- Regulation(EU) 608/2013 - 「상표권법(Markengesetz)」 - 「디자인법(Designgesetz)」 - 「특허법(Patentgesetz)」 - 「실용산업법(Gebrauchsmustergesetz)」 -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 「식물다양성 보호법(Sortenschutzgesetz)」 - 「반도체 보호법(Halbleiterschutzgesetz)」 - 「규제 위반법 (Ordnungswidrigkeitengesetz)」 등	독일관세총국 내 지적재산권 부서 (Generalzolldirektion Zentralstelle Gewerblicher Rechtsschutz)

주: 1) 관련법은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관련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Verbote-Beschaerungen/Gewerblicher-Rechtsschutz/gewerblicher-rechtsschutz_node.html(검색일자: 2018. 8. 20)

-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이 금지 및 제한되는 물품에는 독일의 지정문화재, EU의 지정문화재, 이라크 문화재, 시리아 문화재 등이 있음

〈표 2-VIII-7〉 문화재 보호를 위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구분	내용	관련법 ¹⁾	기관
국내 문화재	- 문화재를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수출해야할 시 세관의 허가 필요 - 75년 이상 된 30만 유로의 가치를 지닌 그림, 10만년 이상된 10만유로의 가치를 지닌 책 등	- 「문화 보호에 관한 법률 (Kulturgutschutzgesetz)」 등	연방 문화 및 미디어 장관 (Minister of State for Culture and the Media)
EU 지정 문화재	- EU의 문화재 지정물품은 독일의 문화재 지정과 무관하게 수출허가 필요 - 10만년 이상 5만 유로의 가치를 지닌 책, 2백년 이상된 1만5천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인쇄된 지도, 고고학 대상 물품, 사본, 또는 기록 등	- 「문화 보호에 관한 법률 (Kulturgutschutzgesetz)」 - Regulation(EU) 1081/2012 - Regulation(EC) 116/2009 등	연방 문화 및 미디어 장관 (Minister of State for Culture and the Media)
이라크 문화 유산 보호	- 이라크 문화 관련 물품 EU로 수입, 수출 금지	- 「문화 보호에 관한 법률 (Kulturgutschutzgesetz)」 - Regulation(EC) 1210/2003 등	연방 문화 및 미디어 장관 (Minister of State for Culture and the Media) EU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시리아 문화 유산 보호	- 시리아 문화 관련 물품 EU로 수입, 수출 금지	- 「문화 보호에 관한 법률 (Kulturgutschutzgesetz)」 - Regulation(EU) 36/2012 등	연방 문화 및 미디어 장관 (Minister of State for Culture and the Media) EU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주: 1) 관련법은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관련 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Verbote-Beschaerungen/Schutz-des-Kulturgutes/schutz-des-kulturgutes_node.html(검색일자: 2018. 8. 20)

2. 무역구제제도

- EU의 무역구제제도는 WTO협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EU의 공통통상정책의 일부로서 실행되어 조사, 잠정부과, 부과 등에 대한 결정과 실행이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EU는 WTO협정에서 인정하는 무역구제제도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하여 EU의 독자적인 수입규제제도인 무역장벽규칙(Trade Barrier Regulation, 이하 'TBR')을 운영하고 있음
 -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²⁵³⁾이 충족되었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EU집행위원회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2006년 12월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세이프가드 및 TBR은 2015년에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규정이 개정되고 있음

〈표 2-Ⅷ-8〉 EU의 수입규제 관련 법령

	수입규제수단	해당규정	행정기관	가능 조치	
W T O 협 정 승 인	1	반덤핑관세	Regulation(EU) 2016/1036 Regulation(EU) 2017/2321 Regulation(EU) 2018/825	관세부과	
	2	상계관세	Regulation(EU) 2016/1037 Regulation(EU) 2017/2321 Regulation(EU) 2018/825	EU집행위원회의 조사 및 부과결정 (세이프가드의 경우 EU이사회의 심의)	관세부과
	3	세이프가드	Regulation(EU) 2015/478 (WTO회원국에 대해 적용) Regulation(EU) 2015/755 (WTO비회원국에 대해 적용)		관세부과, 수량제한

253) 수입 급증, 보조금, 산업의 피해, 수입의 증가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

		수입규제수단	해당규정	행정기관	가능 조치
그 외	4	무역장벽규칙 (Trade Barrier Regulation)	Regulation(EU) 2015/1843		관세인상, 양허정지, 수량제한, 기타 과징금 부과 등

자료: 정재호·노영예·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6, p. 95 및 EU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trade/policy/accessing-markets/trade-defence/> (검색일자: 2018. 8. 22)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1) EU가 우리나라에 부과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현황

- EU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하였으며 현재 5가지 항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에 있음
 - 상계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량감열지, 전기강판,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실리콘 메탈, 철강제 관련결구류의 5가지 항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임

〈표 2-VIII-9〉 EU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현황

번호	한국 HS CODE	품목명	조사 개시일	현황
1	4811.90, 4809.90, 4816.90, 4823.90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2016-02-18	규제 중
2	7225.11, 7226.11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2014-08-14	규제 중
3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2009-08-12	규제 중 (우회덤핑)
4	2804.69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2006-04-20	규제 중 (우회덤핑)

번호	한국 HS CODE	품목명	조사 개시일	현황
5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2001-06-01	규제 중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1&continent=TEUC&nation=&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검색일자: 2018. 8. 22)

2) 2018년 무역구제조치의 현대화 규정 개정²⁵⁴⁾

-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6월 8일 Regulation(EU) 2018/825를 통해 Regulation (EU) 2016/1036 및 Regulation(EU) 2016/1037에 대해 보다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공표하였음
- EU의 무역구제제도 개정안은 크게 ① 반덤핑 산정방식 개정 ② 일반 무역구제 조치의 현대화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16년 개정안이 반덤핑 산정방식의 개정이었다면 2018년의 개정안은 무역구제조치의 현대화에 해당함²⁵⁵⁾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개정에 따라 일부 조건하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고율의 관세부가가 가능해짐
 - 최소부과원칙은 WTO의 권고 규정으로 피해마진과 덤핑마진 중 액수가 적은 쪽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는 것임
 - EU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이 총 제품 생산비용 중 1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반덤핑 조사 개시일로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까지의 기간을 기존의 9개

254) Regulation(EU) 2018/825,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june/tradoc_156929.amend.L143-2018.pdf(검색일자: 2018. 8. 22)

255) 관세법인 대유, http://www.daeu.co.kr/board/board.php?bo_table=trends&idx=258(검색일자: 2018. 8. 16)

월에서 7개월로 단축하여 덤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 공고 3주전 이해관계자들에게 미리 통지하여 조치에 대한 대응 시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반덤핑 조치 시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시에도 공고 3주전 미리 사전 통지하기로 결정함

3) 2016년 반덤핑산정 방식의 개정

- EU는 최근 개정된 Regulation(EU) 2017/2321에 따라 제2조의 6a를 신설하여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 개념 대신 중대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여부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 그러나 중대한 왜곡의 개념은 WTO 반덤핑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WTO 협정과 합치 여부가 불분명함²⁵⁶⁾
- 중국의 WTO 가입 15년 후인 2016년 12월 11일에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분류할 수 있게 한 WTO 가입의정서 내용이 만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인정문제와 관련한 WTO 판결을 반영하여 조항을 개정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최근 법령 개정에 대해 EU 무역구제제도의 지속적인 효과성을 보장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비시장경제 국가의 지속적인 왜곡에 대해 대응, EU 무역상대국과의 강한 유대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²⁵⁷⁾
 - 따라서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만료에도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에 차질 없이 예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²⁵⁸⁾

256) Regulation(EU) 2017/2321 제2조(6(a))

257)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3. 20, p. 24

258)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3. 20, p. 24

-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상가격 판단 시 국가를 시장경제국 및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별하여 덤핑마진 산정에 차이를 두었음
- 증대한 왜곡 판단 요소는 국영기업의 시장장악, 가격 및 비용 측면에서 국가개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법, 기업법, 재산법 등의 부족 및 부적절, 임금 왜곡, 금융 왜곡 등임²⁵⁹⁾
 - 따라서 증대한 왜곡이 있을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의 제3국의 생산가·판매가, 국제가격 등을 정상가격 산정 시 참고하게 되었음²⁶⁰⁾
 - 개정된 규정에서는 시장경제국 여부와 상관없이 WTO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증대한 왜곡 여부 판단 시 보다 넓은 범위로 규정 적용이 가능함
- 또한 개정된 규정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증대한 왜곡 또는 덤핑 및 보조금,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²⁶¹⁾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²⁶²⁾

4) EU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의 특징 및 우회덤핑

- EU는 케네디라운드 반덤핑 규약을 기초로 1968년 반덤핑제도 및 상계관세 제도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했으나 1995년 WTO의 출범에 따라 두 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해오고 있음²⁶³⁾
 - 그러나 발동 요건, 피해 결정, 절차의 개시, 조사, 잠정조치, 확정조치, 절차의 종료 등과 관련된 내용은 반덤핑의 규정과 거의 동일함

259) Regulation(EU) 2017/2321 제2조(6(a))

260)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3. 20, p. 24

261) Regulation(EU) 2016/1036 제5조(6)

262) Regulation(EU) 2017/2321 제6a조(e)

263) 이환규, 「EU의 무역구제조치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1, pp. 359~363

- 조사, 부과 판정, 재심사, 최종 부과결정 등은 EU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부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함²⁶⁴⁾

- EU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반덤핑 규정(Regulation(EU) 2016/1036) 제13조에 우회덤핑(Circumvention)에 관한 조사 절차, 요건, 부과 조치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품에 우회덤핑을 적용하고 있음
 -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및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에 우회덤핑을 적용 중임

- EU의 우회덤핑 부과요건은 다양한 종류의 우회덤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과 EU 역내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조립공정에 대한 요건으로 분류되며 요건만족 시 반덤핑 관련 조치는 해당 물품에 확대되어 부과됨
 - 우회덤핑 관련 조치는 제3국의 동종 상품의 수입품, 조치 대상국의 약간 변형된 동종 상품, 또는 그 부품에도 부과될 수 있음
 - 우회덤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²⁶⁵⁾
 - 제3국과 EU 간 또는 반덤핑조치대상국 내 개별 기업과 EU 간 교역 형태의 변화가 발생해야 함
 - 하나 이상의 관행, 공정 또는 작업으로 인한 교역 형태의 변화
 - 반덤핑관세 부과 이외에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이 변화한 적절한 사유나 경제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어야 함
 - 기존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가 가격 또는 수량의 측면에서 훼손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원심에서 확립된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의 증거가 존재해야 함

264) Regulation(EU) 2016/1036 제15조

265) Regulation(EU) 2016/1036 제13조(1)

- EU 역내 또는 제3국에서 조립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시 우회덤핑이라고 판정함²⁶⁶⁾
 - 원심 조사개시 전후로 조립공정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동되거나 개시되어야 함
 - 조치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된 부품의 가치가 총 부품 가치의 60% 이상, EU 또는 제3국 내 조립 공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25% 미만이어야 함
 - 기존 반덤핑관세의 무역구제 효과가 조립된 제품에 의해 훼손되고 있어야 하며 기존 조치대상제품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이 존재해야 함
-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는 EU집행위원회의 직권 또는 EU 회원국이나 이해관계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됨²⁶⁷⁾
 - 우회덤핑 조사는 EU집행위원회가 수행하며 9개월 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함²⁶⁸⁾

나. 세이프가드

1) EU가 우리나라에 부과 중인 세이프가드 현황

-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7월 6일, EU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 발동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인도, 터키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이 포함되었음²⁶⁹⁾
 -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기까지 통상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소요되나,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조사 도중 최대 200일까지의 잠정조치 발동이 가능함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형태로 발효될 것이므로 기존의 수입량을 감안하여 관세할당량을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

266) Regulation(EU) 2016/1036 제13조(2)

267) Regulation(EU) 2016/1036 제13조(3)

268) Regulation(EU) 2016/1036 제13조(3)

269) Regulation(EU) 2018/1013,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july/tradoc_157125 PROV.EN.L181-2018.PDF(검색일자: 2018. 8. 22)

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부과에 따라 철강제품이 EU로 몰리게 될 것을 우려하여 철강업계의 피해방지를 위해 세이프가드의 잠정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음

2) EU 세이프가드제도의 특징

- EU의 세이프가드제도는 Regulation(EU) 2015/478(WTO회원국에 대해 적용) 및 Regulation(EU) 2015/755(WTO비회원국에 대해 적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EU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아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 EU 내 상품과 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의 관계에 있는 수입품의 급격한 증가, 이러한 증가로 인한 EU 내 동종 상품 및 직접경쟁상품의 생산자들에 심각한 피해 혹은 위협이 야기되었을 시, EU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동함²⁷⁰⁾
-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재심사, 부과 판정 등은 EU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EU이사회에서 심의를 통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함
 - EU집행위원회는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사실 조사를 비롯하여 반덤핑 및 상계 관세부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 EU의 세이프가드는 잠정 조치의 특정한 경우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즉시 부과가 가능하며 이는 WTO협정에 위배되는 항목으로 볼 수 있음²⁷¹⁾

270) Regulation(EU) 2015/47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27041522051&uri=CELEX:32015R0478>(검색일자: 2018. 5. 23)

271) Regulation(EU) 2015/478 제7조

-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1항에 따르면 WTO회원국은 자국 관할당국이 GATT X조에 따라 공표된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에만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항목으로 볼 수 있음²⁷²⁾
- EU의 세이프가드는 조치의 적용이 공동체의 하나 또는 다수의 지역에 부과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부과하는 것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지역에 지역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²⁷³⁾
- 단 이 경우는 대안이 없을 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이 국제 시장에 분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그러나 세이프가드협정상 관세동맹은 단일체로서 회원국을 대신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음

다. EU의 TBR

1) 우리나라에 적용된 TBR

- TBR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의약품, 조선업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적용이 종료되었음
- EU집행위원회는 1998년 유럽화장품협회의 청원으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한국이 유럽산 화장품에 대해 과도한 적합성 및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 등의 무역장벽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²⁷⁴⁾

272) 마광, 「유럽공동체의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연구」, 『對外經濟研究』 제10권 제2호, 한국통상법제연구소, 2006. 12, p. 118

273) Regulation(EU) 2015/478 제22조

274) cosmetic consulting, <http://cosmeticconsulting.com/eng/view.php?code=menu03&page=46&number=56&category=&keyfield=&key=>(검색일자: 2018. 8. 22)

- 2003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련 규정 개정, 2005년 6월 EU와 공동위원회 개최 등 10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 EU집행위원회가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통상장벽이 해소되었다고 결정하며 2008년 조사를 종료하였음
- 1999년 7월 EU집행위원회는 한국에서 의료 제품의 가격책정, 규제, 지적재산권 문제, 의약품 무역제도상 투명성 부족 등이 의약품에 대한 통상장벽을 초래한다는 유럽제약산업협회의 청원으로 TBR 조사를 개시하였음
 - EU는 2006년의 공식협상 이후 2009년까지 TBR의 조사를 지속하였으며²⁷⁵⁾ 한국은 수입약품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이룰 것을 EU집행위원회 측에 약속하였음
 - 2009년 10월 한-EU FTA의 타결로 조사가 중지되었음
- 1990년대 IMF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조선업 확장과 이에 따른 EU조선업계의 불안감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때문이라는 유럽조선협회의 주장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한국 조선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²⁷⁶⁾
- EU집행위원회는 5차례 조선산업 보고서를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적하였고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으며 WTO 패널은 한국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이 WTO협정상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음
 - 그러나 WTO는 한국의 수출입 은행이 제공한 금융 중 일부의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인정하여 90일내 철폐하도록 하였음

275)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9284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486(검색일자: 2018. 8. 22)

276) 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upload/publication/VPR200112_02.pdf(검색일자: 2018. 8. 22)

〈표 2-Ⅷ-10〉 EU의 對한국 TBR 적용 내용

품목	적용기간	내용
화장품	1998~2008	- 과도한 적합성 및 안전성 검사 등이 유럽산 화장품에 대해 통상장벽을 야기한다는 유럽화장품협회의 청원으로 조사 개시 - 일반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까다로운 수입검사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합의
의약품	1999~2009	- 한국의 의약품 교역 관행이 유럽 의약품에 대해 통상장벽을 야기한다는 유럽제약산업협회의 청원으로 조사 개시 - 한국의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검사요건, 수입약품에 대한 제도 개선 약속
조선업	2000~2004	- 조선업의 확장과 한-EU 조선협상 결렬, EU조선업계의 불안감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때문이라는 유럽조선협회의 청원으로 조사 개시 - WTO 패널은 한국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이 WTO협정상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

자료: 변재웅, 「EU의 일방적 무역조치 TBR과 한국적용사례」, 『貿易學觸』,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TBR 내용²⁷⁷⁾

- 1995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반영하여 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으로부터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고 제3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으로부터 생기는 부정적 무역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TBR을 제정하였음²⁷⁸⁾
- 1994년 12월 31일 제정된 규정 Regulation(EC) 3286/94에서 TBR의 절차, 요건, 조사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²⁷⁹⁾ 본 규정은 총 4회 개정되어 현재 2015년 개정된 규정 Regulation(EU) 2015/1843이 적용되고 있음

277) Regulation(EU) 2015/1843

278) 변재웅, 정종철, 「미국과 EU의 일방적 무역규제수단 비교연구」, 『發表論文集』, 한국무역학회, 2007.12 p. 283

279) Council Regulation(EC) No. 3286/94 of 22 December 199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1994R3286>(검색일자: 2018 .5. 15)

- TBR은 EU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제3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으로 인해 제3국에서의 부정적 무역효과가 발생하였을 시 발동함
- 자문위원회가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한 후 EU집행위원회가 TBR 개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치 최종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EU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TBR을 적용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국제협약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개시, 국제의무나 절차에 위반되지 않는 보복적인 통상정책조치가 있음
 - 통상정책조치는 통상정책협상에서 이루어진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관세 인상 또는 기타 수입과징금(charge)의 도입, 수량제한 및 기타 수출입조건 변경 조치 등이 있음²⁸⁰⁾

3. 기타 비관세장벽

가. 비관세장벽 적용 현황

-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관련 장벽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 과거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 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 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음

280) Regulation(EU) 2015/1843 제13조(3)

- UNCTAD는 비관세장벽을 7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EU가 적용하는 비관세장벽은 특히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EU TBT 및 SPS는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등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TBT는 총 296가지, SPS는 총 97가지가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음²⁸¹⁾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EU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한이나 장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²⁸²⁾

〈표 2-Ⅷ-11〉 EU의 對한국 비관세장벽 규제 현황

요구 항목	현황	조치 수
수출 관련 제한 조치	규제 중	2
기타 제한 조치	규제 중	2
선적 전 검사	규제 중	2
수량제한	규제 중	6
위생 및 식물위생(SPS)	규제 중	97
무역기술장벽(TBT)	규제 중	296

자료: UNCTAD, <http://trains.unctad.org/Forms/TableView.aspx?mode=modify&action=search> (검색일자: 2018. 8. 25)

281) 보다 자세한 적용규정 리스트와 품목 확인은 UNCTAD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282)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7/view.do?seq=10224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자: 2018. 8. 27)

나. TBT 및 SPS

1) TBT

- EU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EU시장 접근의 중요한 요소이며 개별회원국 및 EU 차원에서 채택되고 있음
 - EU의 완전조화 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대상이 아닐 시 각 회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됨
- EU집행위원회는 Regulation(EC) 764/2008에 따라 완전조화 입법 대상이 아닌 품목리스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은 Directive 98/34/EC에 따라 EU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들에 기술 규정 초안을 도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도입 필요성 인정 시 EU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기술규정에 상호인정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삽입할 것을 지시함
- EU의 TBT협정 이행은 EU집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EU차원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는 EU의회 및 EU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도록 함
 - 기술 규정 및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서 EU집행위원회 홈페이지(<http://trade.ec.europa.eu/tradehelp/>)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EU의회 및 EU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법규는 관보에 게재됨
- 중간 혹은 낮은 수준의 위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를 비롯하여 섬유, 유아제품 등 일반적인 제품 안전규칙(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을 적용하는 품목에는 모두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이 적용됨
 - 고위험 제품은 개별 EU 회원국이 지정한 독립 인정한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함

2) 우리나라의 EU TBT 대응 사례²⁸³⁾

- EU는 불소화 온실가스의 사용량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쿼터제, 사용량 보고, 냉매의 사전 충전 금지 등을 발표하였으나,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냉매의 사전 충전을 금지함에 따라, 기업은 제조공정을 추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음²⁸⁴⁾
- 우리나라는 공식 의견서(2013. 4), WTO TBT 위원회회의(2013.6, 2013. 11), 한·EU FTA(2013. 9) 등을 통해 냉매 사전 충전 금지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EU는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여 냉매 사전 충전 금지 조항을 철회함²⁸⁵⁾
- EU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정용 오븐, 전기 레인지 등 주방용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규제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오븐에 대한 에너지 효율 측정방법이 국제표준과 다르고 전기 레인지(hob)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었음²⁸⁶⁾
- 우리나라는 공식 의견서(2013. 7)를 통해 에너지 효율 측정방법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시험방법 구체화를 요청하였으며 EU는 이를 수용하였음²⁸⁷⁾

3) SPS

- EU는 식품 안전을 위하여 EU차원의 기본법(Regulation(EC) 178/2002)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재되어 있던 식품위생 법규를 통합한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²⁸⁸⁾

283)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knowtbt.kr/main.do>(검색일자: 2018. 8. 23)

284)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knowtbt.kr/main.do>(검색일자: 2018. 8. 23)

285)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knowtbt.kr/main.do>(검색일자: 2018. 8. 23)

286)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knowtbt.kr/main.do>(검색일자: 2018. 8. 23)

287)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knowtbt.kr/main.do>(검색일자: 2018. 8. 23)

288)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food/safety/biosafety/food_hygiene/legislation_en
(검색일자: 2018. 8. 23)

- 관련 규정에는 식품위생규정(Regulation(EC) 852/2004), 동물 관련 식품위생규정(Regulation(EC) 853/2004), 식용목적의 동물 관련 식품위생규정(Regulation(EC) 854/2004) 등이 있음
- 그 밖에 음식물의 허용 세균범위규정(Regulation(EC) 2073/2005), 동물 관련 식품위생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 관련 규정(Regulation(EC) 2074/2005), 식용 목적의 동물수입 국가 리스트 및 식용목적의 동물 관련 식품위생규정(Regulation(EC) 854/2004) 등이 있음
 - 특히 동물 관련 식품위생규정에 따라서 제3국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간 정보교환 네트워크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²⁸⁹⁾
- EU는 2011년 식품표시일반에 대한 규칙(Directive 2000/13/EC) 및 식품영양표시에 관한 규칙(Directive 90/496/EEC)을 단일화하여 2014년 12월부터 소비자 식품정보제공에 대한 규정(Regulation(EU) 1169/2011)을 적용하고 있음
- 2016년 12월부터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어 열량, 지방, 탄수화물, 포화지방, 단백질, 염분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야 함
- EU는 IUU어업[(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IUU어업 방지 규정(Council Regulation (EC) 1005/2008) 및 IUU어업 방지 실행 규정(Commission Regulation(EC) 1010/2009)을 적용하고 있음²⁹⁰⁾
-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에 수출가능한 제3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의 경우 수산물 수출 가능국으로 등록되어 있어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수입통관 시 제출해야 함

289)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food/safety/rasff_en(검색일자: 2018. 8. 23)

290)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_en(검색일자: 2018. 8. 27)

- 적법한 어획행위를 증명하는 어획증명서 또한 첨부해야 함

-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부터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우리 어선들의 불법조업 관행과 정부의 처벌수준 미흡을 이유로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5년 4월 불법 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이 해제되었음
- 우리 정부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및 전반적인 어업 관행 개선을 위하여 국회 및 관계부처의 지원하에 원양산업 발전법을 2차례 개정(2013년 7월, 2015년 1월)하였고, 선박위치 추적 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서부아프리카 조업어선의 감척사업, IUU관련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²⁹¹⁾

다. 인증

- 독일의 인증은 EU의 제품규격 기준 및 국제적인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EU 통합에 따라서 법적인 요건인 CE인증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되었고, 기존의 독일 인증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의적 인증이 되었음
- 그러나 독일의 인증을 필수인증과 함께 취득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음

1) CE(Conformite Europeen) EU 강제인증

- CE인증은 EU의 통합규격 인증 마크이며 강제 규격으로서 EU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품들에 대해 적용됨²⁹²⁾
- CE인증은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규칙(EU Directive)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EU역내에서 통용되는 소비자

291)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6&boardKey=10&articleKey=7719>(검색일자: 2018. 8. 27)

292) TÜV SÜD Korea, <https://www.tuv-sud.kr/kr-kr/activity/product-certification/ce-marking> (검색일자: 2018. 8. 27)

-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인증에 따른 CE마크를 부착해야 함
- CE인증은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으로 부착 시 EU 회원국가 내에서 제품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음
 - CE인증은 적합성 요청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EU) 765/2008²⁹³), Regulation(EEC) No. 339/93²⁹⁴)과 관련 규칙(Council Directive 93/68²⁹⁵)에 따르고 있으며 품목별로 세부 규칙(Directive)을 준수하고 있음
- EU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별 관련된 규칙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조사가 자체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으로 확인한 후 CE마크를 부착함
- EU역내의 제조자 또는 위임 대리인은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자료(TCF)를 제품의 최종 공급 시점 후 10년까지 보관해야 함

〈표 2-VIII-12〉 CE 인증 적용 대상품목과 적용 규정 및 규칙

	적용대상품목	적용 규정
1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90/385/EEC Directive 93/42/EEC
2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Regulation(EU) 2016/426
3	공중케이블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Regulation(EU) 2016/424
4	건축 자재(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89/106/EEC
5	친환경적으로 고안된 에너지 제품 (Eco-design of energy related products)	Directive 2009/125/EC
6	전자파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14/30/EU

293) EU법령정보포털,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18:0030:0047:en:PDF>(검색일자: 2018. 8. 27)

294) EU법령정보포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1993R0339&from=EN>(검색일자: 2018.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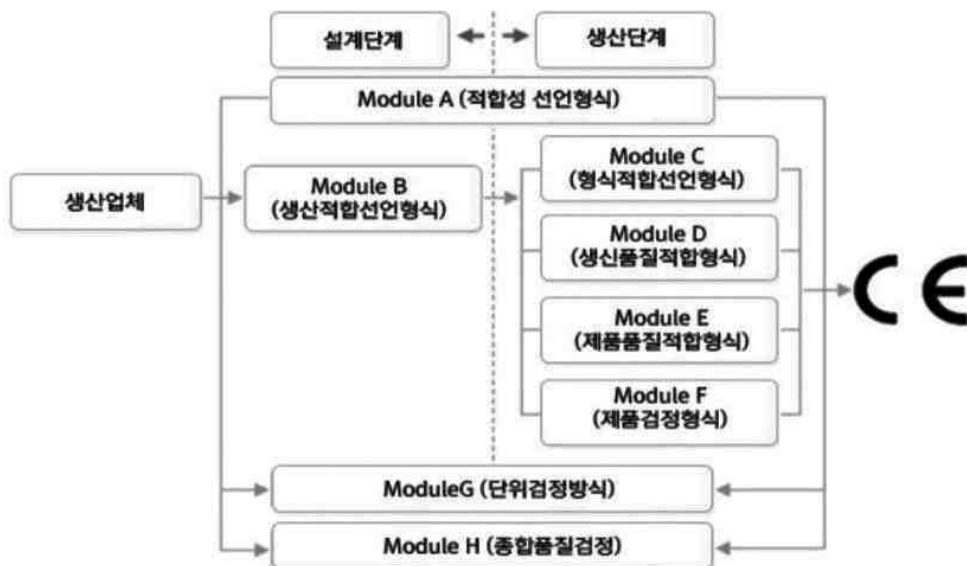
295) EU법령정보포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1993L0068&from=en>(검색일자: 2018. 8. 27)

	적용대상품목	적용 규정
7	방폭 장비, 보호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Directive 2014/34/EU
8	민수용 폭약(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2014/28/EU
9	온수보일러(Hot-water Boilers)	Directive 92/42/EEC
10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98/79/EC
11	승강기(Lifts)	Directive 2014/33/EU
12	저전압기기(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
13	기계(Machinery)	Directive 2006/42/EC
14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s)	Directive 2014/32/EU
15	의료기기(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
16	친환경소음배출기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Directive 2000/14/EC
17	비자동 저울(Non 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2014/31/EU
18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gulation(EU) 2016/425
19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2014/68/EU
20	불꽃장치류(Pyrotechnic articles)	Directive 2013/29/EU
21	라디오장비(Radio equipment)	Directive 2014/53/EU
22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칙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2008/35/EC
23	레크레이션 선박(Recreational Craft)	Directive 2013/53/EU
24	완구(Safety of toys)	Directive 2009/48/EC
25	단순 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2014/29/EU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검색일자: 2018. 8. 28)

- 현재 대부분의 기계류 및 전자제품, 케이블 등 총 25개 품목에 CE인증이 적용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각각의 규정 및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
- CE의 인증절차는 Module A부터 Module H까지 총 8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각각 다른 모듈의 승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인증 신청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고됨

[그림 2-VIII-1] CE 인증절차도



자료: 한국품질인증연구원, <http://kioqa.co.kr/m61.php>(검색일자: 2018. 8. 27)

2) 독일의 비강제 인증

-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띄고 있진 않으나 취득 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일의 인증에는 독일표준협회인증(Doutsche Institute feur Nomung, 이하 DIN),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인증(Doutsche Vereinigung

des Gas und Wasserfaches, 이하 DVGW), 독일품질안전인증(Gepufte Sicherheit, 이하 GS), 독일전자기술협회(Verband Deutscher Elektrotrchniker, 이하 VDE) 등이 있음²⁹⁶⁾

- DIN은 독일표준협회의 인증으로서 전기, 전자, 의료 등 전 산업분야에 적용되며 한국의 KS와 흡사한 품질 증명으로 독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²⁹⁷⁾
 - 최근 DIN은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업무 마크로서 이용되며 마크를 부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업무의 성과가 DIN 및 DIN EN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함

- DVGW는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의 인증으로 인증 취득 시 가스와 수자원에 관련된 모든 안전, 위생을 비롯하여 기능면에서 EU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했다는 것을 의미함²⁹⁸⁾
 - 특정 분야의 가스 및 상수도 설비 및 대부분의 가스 설비의 연결 부위, 파이프 배관 부품 및 압력 조절기기도 EU의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아 DVGW는 가스 및 수도 설비의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발행하고 있음

- GS인증은 완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제품이 독일제품안전법(German Product Safety Act: ProdSG)의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²⁹⁹⁾
 - GS인증의 범위에는 전기 안전, 화학 및 유해물질 사용, 인체 공학 및 소음과 같은 제품의 핵심 특성에 따른 인증을 비롯하여 제조업체의 생산 공장에 대한 평가 인증 또한 포함됨

296) 시험인증원, http://www.rapatcl.or.kr/new/system/overseas_list2.php(검색일자: 2018. 8. 28)

297) 시험인증원, <http://www.rapatcl.or.kr/new/system/data/DIN.pdf>(검색일자: 2018. 8. 28)

298) 시험인증원, <http://www.rapatcl.or.kr/new/system/data/DVGW.pdf>(검색일자: 2018. 8. 28)

299) TÜV SÜD Korea, <https://www.tuv-sud.kr/kr-kr/activity/product-certification/gs-mark> (검색일자: 2018. 8. 28)

- 부착된 GS인증마크는 제조업체가 생산 설비에 대한 연간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유효함
- VDE인증은 조명기기, 전자·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 가정용·산업용 전기·전자제품 및 설비, 전기·전자부품, 전선 및 코드류 등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증임³⁰⁰⁾
 - VDE 또한 의무적인 인증은 아니나 독일 내 VDE의 기술적인 명성으로 품질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³⁰¹⁾
 - 특히 독일의 LED 분야에서 공공 입찰의 참여기준으로 요구하는 인증임

3) 독일 포장 관련 의무 규정

- 독일은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상품 포장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독일 정부의 포장 규정에 따르면 2010년부터 모든 포장재에 사용되는 단위를 미터식(미터, 리터, 킬로그램 등)으로 통일하여 표시해야 함
 - 또한 독일 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품 공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재 사용 신고서(statement of completeness and accuracy)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재별 수량
 - 독일 내 인가된 수거 및 처분 절차에 따른 포장재 처리 방법
 - 신고 대상인 포장재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음
 - 8만kg 이상의 유리 포장재
 - 5만kg 이상의 종이 포장재

300) 시험인증원, <http://www.rapatcl.or.kr/new/system/data/VDE.pdf>(검색일자: 2018. 8. 28)

301) 표준엔지니어링, http://www.stdeng.com/sub/index.php?idx=17&page=2&tb_name=tb_certificate&checkPage=mark_2&leftPage=left4&PHPSESSID=8ae12f06ba606ac0063ebb100aef1219(검색일자: 2018. 8. 28)

- 3만kg 이상의 기타 재질 포장재

- 독일은 포장재 관련 유통과 회수·분류·재활용 등의 의무화를 규정한 신포장재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³⁰²⁾
 - 독일 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본 제도의 의무이행 대상자를 EU 기업뿐 아니라 해외의 수출업체로까지 확대하였음³⁰³⁾
 - EPR은 듀얼처리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 등록 의무,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 완전성 선언의 의무, 포장재 법 관련 포장재 종류와 정의, 회수 및 재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듀얼처리시스템(Dual System)은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는 포장재의 회수·분류·재활용 관리 제도로 독일 시장 최초 유통 상품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판매되는 물품에 사용된 포장재를 폐기 후 전부 회수 및 재활용해야 하며, 의무 미이행 시 최대 10만유로의 벌금과 세관에서의 물품 통과 거부, 판매 금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라. 환경 관련 규제³⁰⁴⁾

-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에너지효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302) 한국무역신문,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category=136&no=36631§ion=1> (검색일자: 2018. 8. 28)

303)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20&no1=1791&linkId=218490&refMenuId=MENU01502&menuId=MENU01498&maxIndex=00002187519998&minIndex=00002147959998&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검색일자: 2018. 8. 28)

304)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ntb.kita.net/tbt/environment_info.screen?menuid=ntb020801(검색일자: 2018. 8. 23)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환경규제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또한 그 대상이 되고 있음

- EU폐전기전자제품(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이하 WEEE)처리규칙의 경우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임³⁰⁵⁾
 - 전기 및 전자기기 폐기물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EU에서 폐기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처리에 대한 규칙(Directive 2012/19/EU 및 Directive 2002/96/EC)을 따르고 있음³⁰⁶⁾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Restricted Hazardous Substances, 이하 RoHS)은 전기전자제품 내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와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임³⁰⁷⁾
 - 단일물질(Homogeneous material)을 기준으로 총 6대 유해물질(납, 수은, 크롬, PBB, PBDE, 카드뮴)의 최대 사용 허용 농도를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음
 - 컴퓨터에서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토스터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본 규칙에 적합하여야 EU시장에 제품 판매가 가능함³⁰⁸⁾

305) 세계표준인증원, http://www.wscs.co.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sub5_5&wr_id=20(검색일자: 2018. 8. 28)

306) EU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weee/index_en.htm(검색일자: 2018. 8. 28)

307) TÜV SÜD Korea, <https://www.tuv-sud.kr/kr-kr/industry/healthcare-medical-devices/market-approval-amp-certification/eu-market-access/restricted-hazardous-substances-rohs>(검색일자: 2018. 8. 28)

308) IEC KOREA 주식회사 http://www.ieckorea.com/sub.asp?maincode=455&sub_sequence=515&sub_sub_sequence=534(검색일자: 2018. 8. 28)

-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규칙은 Directive 2011/65/EU, Directive 2002/95/EC, Directive 2008/35/EC이며 Directive 2011/65/EU (RoHS II)으로 이 규칙에 따라 의료기기의 위험 물질 사용 제한이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EU화학물질관리제한(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이하 REACH)은 규정(Regulation(EC) No. 1907/2006)에 따라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³⁰⁹⁾
 - 기존 물질제조자가 위해성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EU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 REACH는 일부 물질이나 제품에 국한된 RoHS나 WEEE와는 달리 모든 물질 및 완제품에 함유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된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³¹⁰⁾
 - REACH 규제 대상은 크게 물질(고분자 포함), 혼합물, 완제품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졌으며, 규제의 기본 단위는 물질(Substance)임³¹¹⁾

- EU는 1989년 발효된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금지에 대한 몬트리올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오존층 파괴물질 규정(Regulation(EC) 1005/2009)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음³¹²⁾

309)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growth/sectors/chemicals/reach_en(검색일자: 2018. 8. 28)

310) LG 화학, http://lgchemwide.co.kr/epj_board/epj/2014/08/epj_20140811112434_0.pdf (검색일자: 2018. 8. 28)

311) IEC KOREA 주식회사 http://www.ieckorea.com/sub.asp?maincode=455&sub_sequence=515&sub_sub_sequence=535(검색일자: 2018. 8. 28)

312) 외교부 홈페이지, http://down.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619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7(검색일자: 2018. 8. 28)

- 오존층 파괴물질 규정에 따라 EU환경청은 2011년부터 EU 내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수입 및 수출 기업, 파괴시설 등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오존층 파괴물질 및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과 제3국으로의 수출 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활용, 재생산 및 적절한 폐기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함

IX. 행정구제제도

1. 개요

- 「UCC」에서는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절차는 회원 국별 관할 세관당국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행정구제제도를 「UCC」상 관세불복과 독일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적 구제제도 및 행정불복제도로 구분함
- 독일은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에서 조세와 관세를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Einspruch)은 조세에 관한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임
- 독일에서 조세분쟁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는 이의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존의 행정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Beschwerde)가 있었으나, 심사청구제도는 1996년부터 폐지되었고 행정불복절차는 이의신청으로 통합됨
- 한편 「조세기본법」에 따라 관세와 개별소비세는 세무조사가 적용되고 있음³¹³⁾

313) 「독일 조세기본법」 제209조 조세감독의 대상(Object of fiscal supervision)

- 세무조사제도는 세액의 확정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특별한 행정행위로 3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파악의 수단은 외부 세무조사임³¹⁴⁾
 - 외부세무조사(Aussenpruefung: 조세기본법 제193~207조)
 - 세무사찰(Steuerfahndung: 조세기본법 제208조)
 - 세무점검(Steueraufsicht: 조세기본법 제209~217조)
- 조사대상은 수출입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의 생산이며, 조사대상자는 세 관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같은 공식적인 사전구제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 절차에서 사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종결협의
 - 조사보고의 내용 및 고지
 - 구속적 확인

2. 「UCC」상 관세불복

- EU 회원국 세관당국의 행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회원국 세관당국에 직접 이의제기(appeal)를 할 수 있음
 - 「UCC」 제43~45조는 EU의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제43조 사법기관의 결정
 - 제44조 항소권
 - 제45조 시행의 중지

314)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2009, p. 403

- 불복청구와 이행의 증지는 사법당국이 취한 관세법의 적용 또는 관할 세관당국의 관세법령의 적용과 관련한 결정의 취소, 철회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제기된 이의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음³¹⁵⁾

- 불복청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¹⁶⁾
 - 불복청구는 적어도 다음의 2단계가 보장될 수 있음
 - (1차) 세관당국, 사법당국, 회원국이 지정한 다른 기관
 - (2차) 상위의 독립기관(회원국 법령에 따라 사법당국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기관)
 - 불복청구는 그 결정을 했거나 신청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야 함
 - 회원국은 불복청구 절차를 통해서 세관당국에 의해 취해진 결정이 즉시 확정하거나 정정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한편 이의신청으로 세관당국의 결정에 대한 효력이 중지될 수 없음³¹⁷⁾
 - 다만 세관당국은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세관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결정의 실행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음
 - 문서화된 평가에 기초하여 그러한 보증이 채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정되지 않는 한, 결정이 수입 또는 수출 관세를 지불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의 정지는 보증제공을 조건으로 함

315) 「UCC」 제43조

316) 「UCC」 제44조

317) 「UCC」 제45조

3. 사전적 구제제도

가. 종결협의³¹⁸⁾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해 납세의무자와 의논해야 하는데, 이를 종결협의 또는 종결의논이라고 함
 - 종결협의는 세무조사의 한 절차로서 논란이 되는 사실관계와 그 법적 판단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가 논의를 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세무조사종결을 가능하게 함
- 종결협의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청문권을 보장해줄 수 있음
 -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은 불확실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의견일치를 가능하게 하고 서로의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음
- 종결협의의 실시는 과세관청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납세의무자의 종결협의 실시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됨
- 세무조사의 결과 과세기초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의논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의논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종결협의의 포기가 조사결과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동의나 사후의 권리구제수단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318) 「독일 조세기본법」 제201조

나. 조사보고의 내용 및 고지³¹⁹⁾

- 세무조사의 결과는 서면으로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조사보고서라 함
 -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충분한 법적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보고서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청문권을 허용하는 데 사용됨
 - 조사보고서에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쟁점에 관하여 과세상의 중요한 조사확인사항과 과세기초의 변경을 기술함

- 현장조사에 의하여 과세기초에 변경이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요지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함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보고서의 사본을 그 이용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여야 함

다. 구속적 확인

- 조세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속적 확인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³²⁰⁾
 - 세무조사에 이어 과세관청은 장래의 세법적 취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는 것이 그의 사업행위를 위해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거에 조사되어 조사보고서에 기술된 사실관계가 장래에 어떻게 조세상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

319) 「독일 조세기본법」 제202조

320) 「독일 조세기본법」 제204조

- 구속적 확인은 문서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³²¹⁾
 - 그에 기초되어 있는 사실관계로 이는 조사보고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와 관련될 수 있음
 - 신청에 대한 결정 및 이에 중요한 이유
 - 어떤 세목과 어떤 기간에 대하여 구속적 확인이 효력을 발하는지에 관한 표시

- 구속적 확인은 종결협의와는 달리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인정되는 특징을 지님³²²⁾
 - 다만 이때의 구속력은 과세관청 스스로에 대해 미치는 구속력을 의미함

- 구속적 확인은 당해 결정이 근거한 법규정이 변경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납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적 확인의 소급적 폐지나 변경도 허용됨³²³⁾

3. 행정불복제도(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의 대상 및 청구인 적격

- 「독일 조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임³²⁴⁾
 - 「조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조세사건
 - 제1호의 조세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행정행위 집행절차
 - 다만 당해 행정행위가 연방과세관청 또는 주(州)과세관청에 의하여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에 한함

321) 「독일 조세기본법」 제205조

322) 「독일 조세기본법」 제206조

323) 「독일 조세기본법」 제207조

324) 「독일 조세기본법」 제347조 제1항

- 「세무사법」 제164조에 의하여 「조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공법상 및 직업법상의 분쟁사건
 - 과세관청이 담당하는 기타의 분쟁 사건
 - 다만 재판 외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의하여 적용된다는 취지가 명백한 경우에 한함
- 상기 조세사건은 조세행정 또는 과세관청에 의한 세법규정의 적용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건이며,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수송에 대한 금지 및 제한의 감시를 위하여 연방과세관청 및 주(州)과세관청이 행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³²⁵⁾
- 다음의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³²⁶⁾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는 것
 - 연방 및 주의 최고 과세관청의 행정행위
 - 이의신청절차법이 정하는 경우 제외
 - 세무사법의 사건에 있어서 국세청의 허가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결정
- 이의신청은 과세관청의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³²⁷⁾
- 불이익은 청구인이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조세결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조세확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함

325) 「독일 조세기본법」 제347조 제2항

326) 「독일 조세기본법」 제348조

327) 「독일 조세기본법」 제350조

나.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1)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의 고지 후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음³²⁸⁾
- 다만 조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조세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의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음³²⁹⁾
- 1개월의 불복기간은 권리구제의 교시를 받은 경우에만 개시됨³³⁰⁾
 - 행정행위를 문서 또는 전자방식으로 행한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은 관계인이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제출기관인 과세관청 그리고 그 소재지 및 신청기간에 관하여 문서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개시함
- 과세관청이 교시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정행위의 고지 이후 1년 내에 제기할 수 있음³³¹⁾
 - 다만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나 전자방식에 의한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28) 「독일 조세기본법」 제355조 제1항

329) 「독일 조세기본법」 제355조 제2항

330) 「독일 조세기본법」 제356조 제1항

331) 「독일 조세기본법」 제356조 제2항

2) 청구절차

가) 청구인

- 청구절차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임³³²⁾
- 한편 청구인과 당해 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자를 관계인이라고 함³³³⁾

나) 청구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거나 기록부에 표명해야 하며, 전보에 의한 신청 또한 허용됨³³⁴⁾
 - 기록부에 표명하는 방법의 경우 청구인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청구취지를 구술하고 세관공무원이 이를 문서로 기록하는 방법을 따름
- 이의신청서는 불복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를 한 과세관청 또는 행정행위를 신청한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³³⁵⁾
- 이의신청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함³³⁶⁾
 -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범위 및 그 취소를 구하는 범위
 - 이의신청의 사유에 관하여 사실 및 증거방법

332) 「독일 조세기본법」 제353조

333) 「독일 조세기본법」 제359조

334) 「독일 조세기본법」 제357조 제1항

335) 「독일 조세기본법」 제357조 제2항

336) 「독일 조세기본법」 제357조 제3항

다) 청구절차에의 참가

-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는 과세관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당해 결정에 조세법상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음³³⁷⁾
 - 다만 이의신청 청구인의 의견을 참고해야 함
- 이의신청의 절차에 참가한 자는 이의신청의 청구인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³³⁸⁾

라) 이의신청의 포기 및 취하

- 이의신청은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이를 포기할 수 있음³³⁹⁾
 - 당해 포기는 납세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가 납세신고서와 다르지 않게 확정된 경우 이를 표명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일단 포기하는 경우 사후에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과세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이 포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이의신청의 포기는 관할 과세관청에 문서로 제출하거나 기록부에 표명해야 함³⁴⁰⁾
 - 상기 포기에는 기타의 표명을 표시할 수 없음
- 이의신청의 취하는 이의신청의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문서로 제출하거나 기록부에 표명해야 하며, 전보에 의한 신청 또한 허용함³⁴¹⁾
 - 청구인은 결정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 상기 취하에 의하여 청구한 이의신청은 소멸됨³⁴²⁾

337) 「독일 조세기본법」 제360조 제1항

338) 「독일 조세기본법」 제360조 제4항

339) 「독일 조세기본법」 제354조 제1항

340) 「독일 조세기본법」 제354조 제2항

341) 「독일 조세기본법」 제362조 제1항

342) 「독일 조세기본법」 제362조 제2항

X. 벌칙

1. 개요

- 「UCC」 제1편 총칙 제5절 벌금(Penalties) 제42조에서 행정적 위반에 대한 EU 회원국의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EU 회원국은 수출입 관련자가 세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을 시 부과되는 행정 벌칙 규정을 제정해야 함
 - 행정 벌칙은 위반 행위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력 있게 적용되어야 함
 - EU 회원국은 수출입 관련자의 행정적 위반에 대해 다음의 하나 혹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
 - EU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형벌 대신에 적용되는 합의를 포함하여 금전을 처벌로 부과할 수 있음
 - 수출입 관련자가 보유한 허가를 취소, 보류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EU 회원국은 「UCC」 본 규정의 적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EU집행위원회에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국내규정을 통보해야 하며, 추후에 규정을 수정할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함

- 「UCC」에서는 관세법을 처벌하는 형사적 제재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국 국내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독일의 국내법상 관세형벌의 처벌 규정 및 질서위반(행정적 위반)에 대해 조사하였음
-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상에서는 처벌과 관련하여 조세관련 범죄, 조세관련 질서위반행위 그리고 세무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³⁴³⁾.
 - 조세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 「조세기본법」 제369~376조
 - 조세 관련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규정: 「조세기본법」 제377~384조
 - 조세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 및 처벌 등에 대한 절차: 「조세기본법」 제399~409조
- 「독일 조세기본법」 제3조에서는 조세에 관세를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기본법」상에서 조세범죄와 관세범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독일 조세기본법」상 관세(Zolle)는 수입세(Einfuhrabgaben) 및 수출세(Ausfuhrabgaben)를 포함하는 개념임
 - 조세 관련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절차는 「조세기본법」상의 「질서위반법(Ordnungswidrigkeiten)」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³⁴⁴⁾

2. 관세형벌의 특징

- 「조세기본법」에서는 관세 관련 범죄의 내용이 조세형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형법에 관한 일반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관세범죄 처벌 시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³⁴⁵⁾
 - 관세법의 처벌 절차는 「조세기본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 형사소

343) 이재일, 「독일 조세기본법상 처벌규정」, 『맞춤형 법제정보』,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 p. 5

344) 「조세기본법」 제377조 제2항

345) 「조세기본법」 제369조 제2항

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³⁴⁶⁾

-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세무관서는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가짐

- 「독일 형법」 제40조에 따라 독일은 벌금형에 관하여 일수벌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 관련 범죄의 벌금형에도 적용되고 있음³⁴⁷⁾
 - 일수벌금제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방식임
 - 일수벌금기간은 5일부터 360일까지이며, 벌금액은 범죄자의 개인적인 경제사정(일반적으로 세금을 공제한 범죄자의 순수입)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범죄자가 하루에 보유할 수 있는 금액으로 최소 1유로에서 최대 5만유로가 부과됨
 - 결정된 기간과 일수벌금액의 곱이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벌금은 최소 5유로에서 최대 1천 8백만 유로가 부과될 수 있음

- 조세포탈죄³⁴⁸⁾와 조세은닉죄³⁴⁹⁾에만 미수범을 처벌에 적용하고 있으며 예비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³⁵⁰⁾
 - 미수는 처벌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형법 총칙에 따라 미수일 경우 형의 감경이 가능함
 - 「독일 형법」³⁵¹⁾에서는 범죄를 중죄(Verbrechen)와 경죄(Vergehen)로 나누고 있으며 1년의 징역형 이상이면 중죄, 그 이하의 경우 경죄로 구분함³⁵²⁾
 - 「독일 형법」³⁵³⁾에서는 경죄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미수범을 처벌하나 중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을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46) 「조세기본법」 제385조 제1항

347) 이재일, 「독일 조세기본법상 처벌규정」, 『맞춤형 법제정보』,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 p. 4

348)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2항

349) 「조세기본법」 제374조 제3항

350)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p. 31

351) 「형법」 제12조

352) 「형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stgb/englisch_stgb.html#p0138(검색일자: 2018. 4. 12)

353) 「형법」 제23조 제1항

- 관세범의 경우 미수를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예비죄의 경우 예비죄 처벌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며 예비와 기수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음
- 방조범의 경우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조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음³⁵⁴⁾
- 「독일 형법」에서는 교사자(abettor)를 정범에 준해 처벌한다고 규정³⁵⁵⁾하고 있으며 또한 도움을 제공한 자도 정범에 준해 처벌하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³⁵⁶⁾하고 있음³⁵⁷⁾
 - 따라서 형법이 적용되는 관세범 처벌 시 방조자도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독일 관세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다만 「조세기본법」의 조세포탈죄, 금지위반죄, 조세은닉죄 등을 범한 경우 법원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이외에 공직 유지 자격 및 공직선거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³⁵⁸⁾을 두고 있음³⁵⁹⁾
- 관세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법령은 없으나 조세포탈행위에는 가중 처벌 규정³⁶⁰⁾,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죄³⁶¹⁾ 및 세금포탈 물품의 수취·보관·판매의 경우 감경 규정³⁶²⁾이 있음
- 조세포탈의 경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본 죄에 적용

354) 「조세기본법」 제269조

355) 「형법」 제26조

356) 「형법」 제27조

357) 「형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stgb/englisch_stgb.html#p0138(검색일자: 2018. 4. 17)

358) 「조세기본법」 제375조 제1항

359) 「조세기본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ao_1977/_375.html(검색일자: 2018. 4. 12)

360) 「조세기본법」 제370조

361) 「조세기본법」 제373조

362) 「조세기본법」 제374조

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보다 높은 형량인 6개월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고 있음³⁶³⁾

-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의 경우 경한 범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본 죄에 적용되는 6개월에서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가벼운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³⁶⁴⁾
- 세금포탈 물품의 수취, 보관, 판매의 경우 경한 범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본 죄에 적용되는 6개월에서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가벼운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³⁶⁵⁾

□ 「조세기본법」에서는 자수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나 자수 전 조세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혹은 심사의 실시여부를 인지했을 시 면제하지 않음

- 「조세기본법」에서는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을 시 독일 조세당국에 제공했던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충 또는 누락된 정보에 대해 자발적으로 그 내용을 제공한다면 처벌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³⁶⁶⁾

〈표 2-IX-1〉 독일 관세형벌의 특징

관세형벌의 특징	규정 및 해당 내용 적용 유무
형법 적용	○
자수 인정	○
형의 병과	×
가중 또는 감경처벌	○
예비범 처벌	×
미수범 처벌	○
방조범 처벌	○

자료: 「독일 조세기본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63) 「조세기본법」 제370조

364) 「조세기본법」 제373조

365) 「조세기본법」 제374조

366) 「조세기본법」 제371조

3. 관세형벌의 종류

- 「조세기본법」에서는 관세법에 적용되는 범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음³⁶⁷⁾
 - 「조세기본법(Steuergesetzen)」상에서 처벌 가능한(punishable) 행위
 - 수출입 금지 위반 행위
 - 위조 및 그 준비 행위, 행위에 대한 비호(protection)³⁶⁸⁾
 -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범죄를 방조한 자

- 「조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형벌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크게 관세 포탈죄³⁶⁹⁾, 금지품수출입죄³⁷⁰⁾, 영업적·폭력적·단체적 밀수죄³⁷¹⁾, 조세은닉죄(조세장물법)³⁷²⁾임
 - 무신고 수입죄는 별도의 처벌 관련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가. 관세포탈죄³⁷³⁾

- 「조세기본법」상 필요적 몰수³⁷⁴⁾ 또는 추징은 규정하지 않으나 관세포탈죄, 금지품 수출입죄, 영업적·폭력적·단체적 밀수죄, 조세은닉죄의 경우 물품, 운송수단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음³⁷⁵⁾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정당하지 않은 조세적 이익을 획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함³⁷⁶⁾

367) 「조세기본법」 제369조

368) 편들어 감싸주고 보호하는 행위

369) 「조세기본법」 제370조

370) 「조세기본법」 제372조

371) 「조세기본법」 제373조

372) 「조세기본법」 제374조

373) 「형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stgb/englisch_stgb.html#p0138(검색일자: 2018. 4. 17)

374)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

375) 「조세기본법」 제375조 제2항

- 세무관서 또는 다른 기관에 조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불완전한 진술을 한 경우
 - 의무에 반하여 조세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세무관서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의무에 반하여 납세 필 인지 또는 납세증지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 「조세기본법」에서는 탈세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입, 수출 또는 환적 과정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³⁷⁷⁾
- 특히 중한 사례의 경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됨³⁷⁸⁾
- 특히 중한 사례는 대규모 탈세, 공무원의 지위남용, 지위를 남용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 위조 서류 사용,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를 축소신고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나. 금지품수출입죄³⁷⁹⁾

- 금지된 물품을 수출, 수입한 자는 처벌 및 벌금에 대해 다른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조세기본법」에 따라 처벌함³⁸⁰⁾
- 금지품을 수출입 하였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수 또한 처벌됨
- 수출입금지의 대상을 ‘금지에 위반하는 물품’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³⁸¹⁾

376) 「조세기본법」 제370조

377)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5항

378) 「조세기본법」 제370조

379) 「조세기본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ao_1977/_375.html(검색일자: 2018. 4. 12)

380) 「조세기본법」 제370조 1항 및 2항

381)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p. 34

다.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죄³⁸²⁾

- 전문적으로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³⁸³⁾규정을 위반한 자의 경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함³⁸⁴⁾
 - 단 범죄가 중하지 않은 경우(less severe cases)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

-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자 또한 「조세기본법」의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죄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³⁸⁵⁾
 - 본인 혹은 관련자가 무기를 휴대하고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 타인이 저항할 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고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본인 또는 관련자가 무기나 기타 도구, 기구를 휴대하여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출입 금지 조항을 계속적으로 위반한 단체의 회원이 다른 회원의 협력으로 범죄를 행했을 경우

라. 조세은닉죄(조세장물법)³⁸⁶⁾

- 소비세나 관세의 탈세 대상 물품 또는 수출입 금지물품을 매입하거나, 매각, 혹은 타인의 매각, 매입을 지원하는 행위 등이 이루어졌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fine)을 부과함³⁸⁷⁾

382) 「조세기본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ao_1977/_375.html(검색일자: 2018. 4. 12)

383)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으로 특정물의 생산 또는 판매를 독점하는 일

384) 「조세기본법」 제373조

385) 「조세기본법」 제373조

386)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p.429 및 「조세기본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ao_1977/_375.html(검색일자: 2018. 4. 12)

387) 「조세기본법」 제374조

- 본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단체의 일원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함³⁸⁸⁾

4. 질서위반³⁸⁹⁾

- 질서위반은 조세법에 의해 과태료(Geldbusse)를 부과하게 되는 위반행위를 의미 함³⁹⁰⁾
 - 과태료 규정상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질서 위반에 대해서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의 제1편 규정을 적용하게 됨
- 납세의무자로서 또는 납세의무자의 업무에 관한 대리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조세기본법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³⁹¹⁾를 범한 경우 이를 질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5만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행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형사절차 또는 과태료부과절차가 적용되기 전에 허위 또는 불충분한 진술에 대해 세무관청에 추후 그 내용을 정정·보충하거나 새로이 진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³⁹²⁾
-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로 탈세하거나 부당하게 조세상의 이익을 획득했다면 질서위반으로 인정하여 5천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³⁹³⁾
 - 의도적 혹은 과실에 의한 행위는 사실이 아닌 증빙자료의 발행, 법률상 기록의 무가 있는 거래사실이나 사업의 운영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 혹은 이를 지시한 행위, 회사 등의 설립신고 의무의 불이행, 기한위반, 부분적 이행,

388) 「조세기본법」 제374조

389)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pp. 431~432; 「조세기본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ao_1977/_375.html(검색일자: 2018. 4. 12)

390) 「조세기본법」 제377조

391)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

392) 「조세기본법」 제378조 제3항

393) 「조세기본법」 제379조

계좌실명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의미함

-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로 소비세법 또는 관련 법규 명령을 위반했을 시 질서위반으로 인정하여 2만 5천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³⁹⁴⁾
 - 과세준비, 확보 또는 사후검사를 위한 의무, 소비세 과세대상 생산품 또는 당해 생산품의 포장 및 표시, 물품에 적용되는 운송 및 사용제한, 비과세된 물품의 보세구역 내 소비에 대한 질서위반은 5천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수출입 관련 조세납부 의무자 또는 의무자로서 사무를 행할 시 관세법, 관련 법규 명령, EU이사회 또는 EU집행위원회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로 위반했다면 질서위반이 적용되어 5천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³⁹⁵⁾
 - EU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운송 시 관세당국의 확인 위반
 - 물품 관련 세관절차 실행 및 물품의 인도 기타 관세법의 규정절차 위반
 - 관세자유지역, 관세국경지구 또는 국경감시대상 지역에서의 의무 위반
 - 본 규정은 또한 「관세법」 및 관련된 법규 명령이 소비세에 준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394) 「조세기본법」 제381조

395) 「조세기본법」 제382조

XI. AEO제도

1. 개요

-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는 미국이 9·11 테러를 계기로 무역 분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세관 민관 협력프로그램(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으로부터 시작되었음³⁹⁶⁾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차원에서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의 조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도입한 것이 AEO제도임
- 특히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위협과 급증하고 있는 국경통과화물 물량에 대해 민간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국경관리와 무역원활화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³⁹⁷⁾
- AEO라는 명칭은 EU에서 사용한 세관 민관협력프로그램의 명칭으로 WCO가 2005년 SAFE Framework of Standards에서 AEO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AEO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음³⁹⁸⁾

396) 브렉시트와 AEO 상호인정협정,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1/view.do?seq=13267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자: 2018. 8. 1)

397) 송선욱, 「EU의 AEO 운영에 따른 평가와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5. 12. 28, p. 28

398) 브렉시트와 AEO 상호인정협정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1/view.do?seq=13267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자: 2018. 8. 1)

- EU는 2008년 Regulation(EC) 648/2005를 통해 현재의 AEO제도를 도입하였음³⁹⁹⁾
 - AEO제도는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개별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EU의 경우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음
 - Regulation(EC) 648/2005⁴⁰⁰⁾의 보안개정(security amendment)에 따라 EU AEO 개념 및 신뢰할 만한 무역업자들에 대한 AEO 자격 부여 내용이 포함되었음⁴⁰¹⁾
 - 2006년 12월 18일의 Regulation(EC) 1875/2006에서 그 당시 27개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AEO 자격 취득 절차를 도입하여 2008년 1월 1일 본 내용이 발효되었음

- 「UCC」의 제4절 제38조에서 제41조까지 AEO 공인절차, 공인혜택, 관할 당국의 역할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⁴⁰²⁾
 -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제24~35조에서 AEO 공인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 제26~30조에서 AEO 공인조건, 공인발행기간, 적용시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기타 EU집행위원회에서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을 발표하여 AEO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 「UCC」에서는 AEO 이행준수 여부에 따른 처벌, 벌금부과 등의 사법절차는 EU

399) 송선욱, 「EU의 AEO 운영에 따른 평가와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5. 12. 28, p. 30

400) EU집행위원회,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5R0648:en:HTML>(검색일자: 2018. 8. 22)

401) 송선욱, 「EU의 AEO 운영에 따른 평가와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5. 12. 28, p. 30

402)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ugelassener-Wirtschaftsbeteiligter-AEO/Allgemeines/allgemeines_node.html(검색일자: 2018. 9. 11)

회원국에서 개별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⁰³⁾

- 각국의 세관당국에서 AEO 이행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음
- 단 EU 회원국은 위반사항이 있었을 시 EU집행위원회에 18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처리 내용에 대해 통지해야 함

□ 「UCC」에서는 모든 통관절차에서 현존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관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통관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AEO 공인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통관활동에 적용되는 포괄 보증(Comprehensive Guarantee)을 세관에 제출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⁴⁰⁴⁾

- 포괄 보증을 제출할 시 인정되는 보증금 감면(guarantee waiver)을 통해 업체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기존에는 EU 회원국이 통관 보증 유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UCC」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통관절차에서 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 EU는 2020년부터 AEO 공인자에 한정하여 중앙 통관을 통해 수입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⁴⁰⁵⁾

- 현재 EU에서는 AEO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을 확충하고 EU 회원국 간 통관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⁴⁰⁶⁾
- 기존에는 수입신고자가 위치한 세관사무소에서 통관하는 경우,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을 통해 세관사무소까지 물품을 이동시킨 후 통관이 이루어져 보세운송 관련 별도의 서류발급 비용이 추가로 드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하였음

403) 「UCC」 제42조

404) 「UCC」 제95조

405) 「UCC」 제179조

406)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ugelassener-Wirtschaftsbeteiligter-AEO/Allgemeines/allgemeines_node.html(검색일자: 2018. 8. 2)

2. AEO 공인 대상 및 기준

가. 공인 대상

- EU의 AEO 공인대상은 제조업자, 수출자, 포워드, 보세구역운영인, 관세사, 운송업체, 수입자임⁴⁰⁷⁾
 - 공인 대상이 되는 경제 운영자(economic operators)는 자연인 혹은 법인 또는 협회로서 관세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특히 UCC에서는 경제 운영자에 대해 연합국 내 관세영역에 거주하거나 등록된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영구 사업장이 있거나 중앙본사를 두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⁴⁰⁸⁾

나. 공인 기준

- EU의 공인 기준은 세관 및 법규준수도, 적절한 기록유지(회계 및 운송기록시스템), 재무건전성, 실질적 혹은 전문적 이행능력, 보안 및 안전 기준의 5가지임
- 세관 및 법규 준수도는 공인 지원자가 세관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요구조건을 준수하며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인 기준임⁴⁰⁹⁾
 - 지난 3년간 세관규정 및 세금관련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407)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 3. 11, pp. 15~19

408)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 3. 11, pp. 15~19

409)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ugelassener-Wirtschaftsbeteiligter-AEO/Bewilligungsvoraussetzungen/bewilligungsvoraussetzungen_node.html(검색일자: 2018. 8. 7);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 3. 11; European Commission, pp. 32~33

로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함

- 사전 신고 또한 심사의 대상에 포함됨
 - 공인 지원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운송업자, 관세사 또는 제3자에 의한 행위도 공인 대상이며 공인 지원자는 정확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이 되었는지, 관련 결정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함
 - 위반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 당국이 위반에 대한 판결을 철회하였다면 위반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다른 EU 회원국에서 세관 혹은 세금과 관련되지 않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역시 법규 준수도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절한 기록유지는 회계시스템 및 물류시스템의 보유와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추적했는지에 대한 공인 기준임⁴¹⁰⁾
- 물품 재고관리 기록, EU 역내 혹은 EU 역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경로 기록을 검토함
 - 수출입 허가 관련 처리 절차(특히 금지 및 제한물품 관련)를 검토함
 - 회계 및 물류 시스템을 평가할 시에는 운송문서, 회계보고서, 지원자의 설명 등을 참고함
 - 공인 지원자의 정보 시스템이 정보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공인 지원자의 고용자들이 세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인 지원자로부터 적절히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재무 건정성은 공인 지원자가 적절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공인 기준임⁴¹¹⁾

410) 「UCC」 IA 제25조

411) 「UCC」 제39(c) 및 「UCC」 IA 제26조

- 공인 지원자는 파산 혹은 파산절차 진행 중일 경우 AEO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며 법적인 파산뿐 아니라 사실상 채무로 인한 지급 불능의 상태일 때도 AEO 취득이 불가능함
 - 지난 3년간 물품 수출입 시 관세 및 기타 세금, 비용 등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공인 지원자는 지난 3년간 본인의 의무 또는 경영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충분한 재정 상태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 안전 및 보안 기준은 물리적인 보안, 접근제한, 안전 및 보안 기준에 대한 직원의 참여 등에 대한 공인 기준임⁴¹²⁾
- 기업의 협력업체들은 기업으로부터 안전성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안전성 요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공인 지원자가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 연락가능한 자를 지정했는지 안전 및 보안 책임자가 세관과 원활하게 협력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
 - 안전 및 보안 기준에는 화물보안, 건물보안, 보안프로그램, 인사보안,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등이 있음
 - 보안 기준은 특히 AEO S 및 AEO F 공인 지원자들에 적용되며 전문가 보고 및 안전 증명(Safety certificates), 검사, 질문지를 통한 자기 평가 등으로 확인함
- 실질적 또는 전문적인 이행능력은 모든 AEO C 공인 지원자에 적용되는 공인 기준으로써 특히 지난 3년간 세관 관련 실질적인 통관을 이행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⁴¹³⁾
- 세관절차와 관련된 유럽표준화 위원회(European Standardisation body)의 품질기준 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이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도입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음⁴¹⁴⁾

412) 「UCC」 IA 제28조

413) 「UCC」 IA 제27조

414)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ugelassener-Wirtschaftsbeteiligter-AEO/Bewilligungsvoraussetzungen/bewilligungsvoraussetzungen_node.html(검색일자: 2018. 8. 8)

- 공인 지원자 또는 세관과 관련된 절차를 담당하는 자가 세관 관련 법 및 활동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해당 교육 기관에 대해 확인함
 - 확인 대상 기관은 EU 회원국의 세관당국, 세관당국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무역 또는 전문적 협회 등이 있음
 - 그러나 현재 독일의 경우 인가받은 해당 교육기관 또는 무역 관련 협회가 없어 본 내용은 적용 유보 중에 있음⁴¹⁵⁾

〈표 2-XI -1〉 AEO 구분에 따른 공인 기준

공인 기준	AEO C	AEO S	관련 규정
세관 및 법규 준수도	√	√	「UCC」 제39조 제1항 「UCC」 IA 제24조
적절한 기록유지	√	√	「UCC」 제39조 제2항 「UCC」 IA 제25조
재무 건전성	√	√	「UCC」 39조 제3항 「UCC」 IA 제26조
실질적 혹은 전문적 이행능력	√		「UCC」 제39조 제4항 「UCC」 IA 제27조
보안 및 안전 기준		√	「UCC」 제39조 제5항 「UCC」 IA 제28조

자료: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 3. 11, p. 12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415)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ugelassener-Wirtschaftsbeteiligter-AEO/Bewilligungsvoraussetzungen/bewilligungsvoraussetzungen_node.html(검색일자: 2018. 8. 8)

3. 공인 절차

- 공인 절차는 전자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공인신청 → 사전 심사 → 공인신청승인 → 공인심사 → 결정통보 → 불복의 절차로 이루어짐
- 사전 심사는 약 30일간 진행되며⁴¹⁶⁾ 세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정보를 제출해야 할 시 최대 30일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⁴¹⁷⁾
- AEO 공인 심사에 소요되는 총기간은 120일임⁴¹⁸⁾
 - 세관이 120일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60일의 최대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함⁴¹⁹⁾
 - 세관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해야 할 시 심사기간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⁴²⁰⁾
- AEO 공인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5일 이후에 그 효력이 발휘됨⁴²¹⁾
 - AEO 공인이 거절되었을 시 세관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인 지원자에게 통지해야 함⁴²²⁾
- 독일의 AEO 공인 신청은 기업의 경우 form 0390, 개인의 경우 form 0391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신청서와 함께 자기평가 질문지를 전자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⁴²³⁾

416) 「UCC」 제22조 제2항

417) 「UCC」 IA 제12조 제2항

418) 「UCC」 제22조

419) 「UCC」 제28조 제1항

420) 「UCC」 DA 제13조 제1항

421) 「UCC」 DA 제29조

422) 「UCC」 DA 제13조 제2항

423)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ugelassener-Wirtschaftsbeteiligter-AEO/Antragsverfahren/Allgemeines/allgemeines_node.html(검색일자: 2018. 8. 9)

- AEO는 공인 후 유효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한번 AEO 공인을 받았다면 추후 별도의 재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음⁴²⁴⁾
- 단 AEO 공인 후에도 취득 요건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국의 세관당국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함⁴²⁵⁾
 - AEO 공인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회계 보고서 및 AEO 종류에 맞는 신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 랜덤 확인, 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 세관 데이터 베이스의 내부 정보 분석, 무역 패턴 혹은 기업의 행위에 대한 변화 평가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4. 공인 혜택

- EU의 AEO는 세 가지 형태이며 하나의 EU 회원국에서 AEO 인증을 획득하였다면 전체 EU 회원국 간 통용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음⁴²⁶⁾
 - AEO C는 세관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으로 통관 시 간소화된 절차 혜택을 부여함
 - AEO S는 안전(Security) 인증으로 통관 시 안전과 관련된 절차 혜택을 부여함
 - 세관간소 및 안전 통합 인증은 AEO C와 AEO S를 합친 인증으로 AEO F로 표기되며 AEO C 및 AEO S의 혜택이 모두 부여됨
 - 우리나라와 같은 별도의 공인 등급은 없음
- AEO C 공인자는 세관 간소화와 관련된 다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⁴²⁷⁾
 - 다른 경제운영자들보다 더 낮은 비율의 물리적 검사 및 서류에 기초한 세관검사

424) 「UCC」 제38조 제5항

425)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 3. 11, pp. 101~102

426)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ugelassener-Wirtschaftsbeteiligter-AEO/Allgemeines/allgemeines_node.html(검색일자: 2018. 8. 2)

427)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3. 11, p. 10

가 이루어짐

- 세관 통제를 받게 되었을 시 사전에 공지를 받을 수 있음
- 세관 통제를 받게 되었을 시 통제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세관 통제 대상으로 선택되었을 시 우선적으로 해당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단 국제공급망의 보안과 안전에 관련된 어떠한 AEO 혜택도 받을 수 없음
- AEO C의 경우 EIDR(Entry in a Declarant's Records, 이하 EIDR)방식을 적용하여 세관신고 대신 본인의 장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EIDR방식은 본인의 장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보충신고를 제출하는 2단계 방식임
 - 본 방식을 적용할 시 공인자는 자신의 장부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였음을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 따라서 AEO C의 경우 관세액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 세관 업무의 일부를 이행할 수 있으며 관세납부 의무의 이행 및 관세평가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AEO C는 제3국과 MRA체결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 AEO S 공인자는 보안과 안전에 관련된 세관 통제에 대한 원활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음⁴²⁸⁾

- 다른 경제운영자들보다 더 낮은 비율의 물리적 세관 검사, 서류에 기초한 세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혜택이 있음
- 세관 통제를 받게 되었을 시 사전에 공지를 받을 수 있음
- 세관 통제를 받게 되었을 시 통제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세관 통제 대상으로 선택되었을 시 우선적으로 해당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AEO S 공인자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제운영자로 인정되며 관련 정부기관 및 사업파트너의 관점에서 신뢰할 만한 국제 공급망 내 행

428)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 3. 11, p. 11

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AEO S 인증은 제3국과 MRA체결 시 주된 고려 대상임

□ AEO F 공인자는 AEO C와 AEO S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⁴²⁹⁾

□ 그 밖의 AEO 공인자에 대한 비간접적인 혜택으로는 도난 및 손실방지, 지연선적의 감소, 안전 및 보안 관련사고 감소, 재고관리의 개선, 낮은 검사 비용, 범죄 및 기물 파손의 감소, 공급망 파트너 간 안전 및 커뮤니케이션의 증가 등이 있음⁴³⁰⁾

〈표 2-XI -2〉 AEO 구분에 따른 혜택

혜택내용	AEO C	AEO S	관련 규정
간소화된 세관 절차	√		「UCC」 제38조 제5항
낮은 물리적 통제 및 문서기반의 통제 - 보안 및 안전 관련 - 기타 세관 규정 관련	√	√	「UCC」 DA 제24조 제1항 「UCC」 제38조 제6항
보안 및 안전과 관련한 물리적 통제 대상 선정 시 사전 통지		√	「UCC」 DA 제24조 제2항 「UCC」 제38조 제6항
세관 통제 선정 시 사전 통지 - 보안 및 안전 관련 - 기타 세관 규정 관련	√	√	「UCC」 DA 제24조 제3항 「UCC」 제38조 제6항
세관 통제 선정 시 우선적 조치 요청	√	√	「UCC」 DA 제24조 제4항 「UCC」 제38조 제6항
세관 통제 시 특정 장소 요청	√	√	「UCC」 DA 제24조 제4항 「UCC」 제38조 제6항
제3국과의 MRA	√	√	MRA Agreement 제38조 제7항

자료: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 3. 11, p. 2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429)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 3. 11, p. 10

430)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 3. 11, p. 27

5. EU의 상호인정협정

- EU는 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AEO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하 MRA)을 체결하고 있음
 - EU AEO S에 대해서만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AEO 공인자는 MRA를 맺고 있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자와 동일한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됨⁴³¹⁾
 - MRA 체결 시 낮은 비율의 보안 및 안전 통제를 받게 되며 세관 통관 시 우선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9년 7월부터 EU에서 시행된 제도에 의해 상용된 EORI 번호를 취득해야 함
 - EORI 번호는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유사하며 상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경제 주체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번호임

- EU는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안도라, 미국, 중국과 MRA를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MRA협정 체결을 검토 중에 있음⁴³²⁾

431)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eneral-information-customs/customs-security/authorised-economic-operator-aeo/authorised-economic-operator-aeo_en#mutual(검색일자: 2018. 8. 9)

432)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eneral-information-customs/customs-security/authorised-economic-operator-aeo/authorised-economic-operator-aeo_en#mutual(검색일자: 2018. 8. 9)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I. 수입통관절차

1. 개요

- 제3국의 수입 물품을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release for free circulation)’ 절차를 거쳐야 함⁴³³⁾
- 제3국의 물품이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release for free circulation)’이라고 함
-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은 다음 사항을 수반함⁴³⁴⁾
 - 납부해야 할 수입관세의 징수
 - 기타 세금의 징수와 관련된 현행 법률에 따른 징수
 - 상업 정책 수단 금지 및 제한 품목의 적용
 - 물품의 수입에 대해 규정된 다른 행위들의 완료

433)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Procedures/Release-for-free-circulation/release-for-free-circulation_node.html(검색일자: 2018. 10. 15)

434) 「UCC」 제201조

-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은 역외물품에 대해 역내물품으로 세관 상태를 변경함
- 상기 절차에 따라 EU 역내에서 역외 물품의 수입통관을 완료할 경우에는 EU 역내 물품의 지위를 가지며, 다른 EU 국가로 자유유통이 가능하게 됨⁴³⁵⁾
 -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8조에서는 EU 전역에서 EU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EU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통제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이하 'ICS')에 따라 EU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음⁴³⁶⁾
 - EU 회원국 세관 간, 경제운영인 및 세관 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결정 및 통지를 수반하는 모든 데이터의 교환과 저장은 전자적 정보처리 기술(electronic data processing techniques)로 수행되어야 함
 - 이는 입학개괄신고(ENS)를 ICS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 영구적으로 트래픽(traffic)의 형태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전자적 정보처리 기술이 관련된 세관 형식에 부적절한 경우
 - 세관당국 또는 AEO의 컴퓨터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 한편 독일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EU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므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통관절차상의 제한이나 장벽은 없으나, 소비자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상품 포장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⁴³⁷⁾

435)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ustoms-procedures/what-is-importation/free-circulation_en(검색일자: 2018. 10. 15)

436) EU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ecip/help/faq/ens7_en.htm#faqsection(검색일자: 2018. 10. 15)

437)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5/view.do?seq=81101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72(검색일자: 2018. 11. 5)

- 2019년 1월 1일부터 실폐장재법(Verpackungsgesetz)의 도입에 따라 수입기업에도 각종 신고 및 의무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⁴³⁸⁾

2. 수입통관절차

-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의 수입통관절차는 물품 도착 전 입항개괄신고, 물품 반입, 수입신고, 관세납부 및 물품 반출의 절차로 이루어짐
 - 「UCC」상 상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수입통관의 물류 흐름에 부합하도록 배열되어 있음

가. 입항개괄신고

- 「UCC」 제127조에 따라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운송수단에 따른 특정 신고기한 내에 최초 입항지의 관할 세관에 입항개괄신고(Entry Summary Declaration, 이하 'ENS')가 제출되어야 함⁴³⁹⁾
 - 상기 제도는 적하목록의 사전제출을 통해 EU 차원의 보안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다만 상기 의무는 ① EU 영역에서의 정지 없이 내륙 또는 영공을 통과하는 운송수단과 물품 ② 물품 또는 운송수단의 형태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또는 국제 협정에서 요청되어지는 기타의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음⁴⁴⁰⁾
 - 세관통관 조항에 보안수정안을 담은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은 다음과 같음⁴⁴¹⁾
 - 전기 에너지

438)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2019년 실폐장재법 도입」, 2017. 11. 1.

439) 「UCC」 제127조 제1항 내지 제3항

440) 「UCC」 제127조 제2항

441)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75/2006, 제181c조

- 파이프라인을 통한 물품
- 편지, 우편엽서 및 인쇄매체(전자매체 포함)
- 만국우편연합협약(Universal Postal Union Convention)에 따라 면제되는 물품
- 다른 수단에 의한 신고가 적용되는 물품
- 여행자 휴대품
- 구두신고가 허용되는 물품
- ATA⁴⁴²⁾ 및 CPD 까르네⁴⁴³⁾를 통한 물품
- 국방용으로 사용되는 무기 및 군사장비 등의 방산물품
- AEO의 정기 선적물품
- 비엔나협약(1961. 4) 및 뉴욕협약(1969. 12)에 따라 면제되는 물품 등

□ 세관은 다른 세관사무소가 최초 입항지 세관사무소와 통신하거나, 최초 입항지 세관사무소가 필요한 명세를 전자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경우 다른 세관사무소에 ENS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⁴⁴⁴⁾

□ ENS 신고기한은 크게 ① 해상 운송 ② 항공 운송 ③ 육상 운송에 따라 상이하며, 운송수단별 신고기한을 준수해야 함

○ <표 3-I-1>은 운송수단별 ENS 신고기한을 정리한 것임

- 컨테이너 해상화물의 경우 장거리 컨테이너 선박에 해당함
- 벌크화물의 경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흑해, 지중해 등을 운항하는 단거리 항해선박 등은 제외함
- 단거리 해상화물의 경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흑해, 지중해 등을 운항하는 단거리 항해 및 벌크선박에 해당함

442) ATA 협약국 간 물품의 일시적 수출입을 위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주로 전시회를 목적으로 임시 수입되는 물품이 해당

443) 운송수단의 일시적인 수입 무관세 통관 증명서로 주로 자동차를 이용한 해외여행 시 필요

444) 「UCC」 제127조 제3항

〈표 3-1-1〉 운송수단별 ENS 신고기한

구분	신고기한
컨테이너 해상화물(단거리 제외)	출발지에서 선적 전 24시간 전
벌크화물(단거리 제외)	EU 영역 내의 최초 항구 도착 4시간 전
단거리 해상화물	EU 영역 내의 최초 항구 도착 2시간 전
단거리 항공(4시간 이내)	비행기 실제 이륙시간까지
장거리 항공(4시간 초과)	비행기가 EU 영역 내의 최초 공항 도착 4시간 전
철도/운하	EU 영역 내의 세관 도착 2시간 전
육로	EU 영역 내의 세관 도착 1시간 전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ecip/documents/procedures/entry_summary_declaration_en.pdf

- 상기 신고기한 내에 1회 이상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3회 이상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ENS는 운송인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대신 제출될 수 있음⁴⁴⁵⁾
 - 수입자 또는 수취인 또는 운송업체의 이름으로 또는 운송업체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
 - 해당 물품을 입항지의 세관 사무소에 제시할 수 있거나 제시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ENS에는 보안 및 안전 목적을 위해 분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75/2006 부속서 30A에 명시된 해당 운송수단의 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⁴⁴⁶⁾
 -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
 - 물품명세(물품명세 기재 시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과 같이 모호한 물품 명세는 금지되며, 정확한 물품명세를 기재해야 함)

445) 「UCC」 제127조 제4항

446) 「UCC」 제127조 제5항

- 컨테이너 번호, 화물 총중량(kg)
- HS code
-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
- 운송료 지불방법 코드(예를 들면 현금 지불, 신용카드 지불, 수표 지불, 전자적 계좌 이체, 선사의 계정 보유자, 비선불 등)
- EU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등의 정보 및 비상 연락처

- 다만 특정한 경우로서 상기 세부사항이 신고인에 의해 확보될 수 없을 경우, 그러한 세부사항과 그것을 제공해야 할 적절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그러한 명세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음⁴⁴⁷⁾
- 세관은 항구 또는 운송 관련 정보 시스템이 ENS로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EU 역내로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신고의 제출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음⁴⁴⁸⁾
- 세관은 ENS의 제출 대신에 통지의 제출과 경제운영인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 신고의 세부사항을 접근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⁴⁴⁹⁾
- ENS에 포함된 정보를 수령한 최초 입항지 세관은 특정한 기한 내에 물품이 역내에 도착하기 전에 적절한 위험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⁴⁵⁰⁾
- ENS의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제공된 후에 위험분석이 완료되어야 함

447) 「UCC」 제127조 제6항

448) 「UCC」 제127조 제7항

449) 「UCC」 제127조 제8항

450) 「UCC 이행규정」 제187조

나. 물품 반입

1) 해상 운항 선박 또는 항공기 도착의 통지⁴⁵¹⁾

- EU 관세영역으로 입항하는 해상 운항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운송수단의 도착 시 최초 입항지 세관에 도착의 통지를 해야 함
 - 다만 상기 물품의 도착 관련 정보를 관세당국에서 입수 가능한 경우에는 통보가 면제될 수 있음
- 관세당국은 공항 및 항만 시스템 또는 다른 이용 가능한 정보 시스템이 운송수단의 도착을 통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2) 세관 감시⁴⁵²⁾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세관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따라 금지와 제한을 받음
 -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공공보안
 - 건강, 인간·동물·식물 생명의 보호
 - 환경보호
 - 예술, 역사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보유한 국가적 유산
 - 산업 또는 상업적 자산의 보호
 - 마약 전구물질, 지적재산권 및 현금을 침해하는 물품
 - 어업 보전 및 관리 조치
 - 상업적 정책수단의 실행

451) 「UCC」 제133조

452) 「UCC」 제134조

- 상기 세관 감시가 적용되는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당국의 허가를 받아 품목분류, 과세가격 평가, 세관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언제든지 물품을 검사하거나 견본을 가져갈 수 있음

- 한편 세관통제(Customs Control)는 랜덤 방식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전자적 정보처리 기술에 따른 위험분석에 근거를 두어야 함⁴⁵³⁾
 - 세관통제는 세관당국 간 위험 정보와 분석 결과의 교환, 공동의 위험 지표 및 기준, 통제 수단과 우선적 통제 영역의 확립에 기초한 공동의 위험관리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 세관당국은 세관의 통제 또는 감시하에 두는 물품과 연결된 위험을 구별하고, 특별히 세관통제를 해야 할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해야 함
 - 위험관리는 국제적, EU 차원 그리고 국가적 출처와 전략에 근거하여 데이터 및 정보 수집, 위험 분석 및 평가, 처방 및 조치, 정기적 모니터링, 검토 등의 활동들을 포함해야 함

3) 적절한 장치장소로의 운반⁴⁵⁴⁾

- EU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세관당국이 지정한 장소로 해당 물품을 운반해야 함
 - 세관당국에 의해 지정된 세관사무소
 - 세관당국에 의해 지정되거나 승인된 기타 장소
 - 자유지역(free zone)

- 다만 EU 영역 내에서 정지하지 않고 영토,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운송수단과 물품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453) 「UCC」 제46조

454) 「UCC」 제135조

4) 물품의 제시⁴⁵⁵⁾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도착 즉시 지정된 세관사무소 또는 세관당국에 의해 지정되거나 승인된 기타의 장소 또는 자유지역에 제시되어야 함
 - 상기 물품을 제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음
 - EU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입한 자
 - EU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입한 자를 대리하는 자
 - EU 관세영역으로 물품이 반입된 후 동 물품의 운송을 책임지는 자
 - 상기 의무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시는 다음 사람이 대신할 수 있음
 - 물품을 즉시 세관 절차하에 두고자 하는 자
 - 장치 시설 운영 허가자 또는 자유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자

- 세관에 제시된 역외물품이 입항개괄신고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경우와 그러한 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람 중 한 명은 즉시 세관 신고 또는 임시보관 신고를 해야 함
 - 운송인, 수입자, 수하인, 운송인 대리인, 물품을 세관에 제시할 수 있는 사람

- 세관에 제시된 물품은 세관당국의 승인 없이 제시된 장소로부터 이동할 수 없음

5) 물품의 하역 및 검사⁴⁵⁶⁾

- 물품은 세관당국에 의해 지정되거나 승인된 장소에서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 또는 환적될 수 있음
 - 다만 허가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하역하는 것을 요구하는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요구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세관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함

455) 「UCC」 제139조

456) 「UCC」 제140조

- 세관당국은 언제든지 물품의 검사, 샘플의 채취, 운송수단을 검사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하역과 포장 개봉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수입신고

1)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에 따른 유럽통일무역 서식(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이하 SAD')을 사용하여 진행하여야 함
 - SAD 제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통관시스템 전송방식과 서면신고서의 세관 제출 방식이 있음

- 수입신고인은 수입물품의 화주 및 대리인으로 EU 관세영역에 설립되어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 EU 관세영역에 설립되어야 하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 환적 또는 일시반입 신고를 제출하는 자
 - 최종 사용 또는 역내 가공을 포함하여, 세관에서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경우로 가끔 세관신고를 하는 자
 - EU 관세영역과 인접한 국가에 설립되었고 해당 국가 주변의 EU 국경 세관에 세관신고가 제출된 물품을 제시한 자료, 설립된 국가가 EU 관세영역 내에서 설립된 자에게 상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함

- 수입신고 제출서류는 선하증권(B/L),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이 있으며, 수입신고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C/O) 및 기타 요건 구비 증명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한편 수입신고인의 요청이 있고 그에 따른 세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이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2) 수입신고의 수리

- 세관은 수입신고서에 포함된 세부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⁴⁵⁷⁾
 - 신고서와 입증서류의 검사
 - 신고인에게 다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 물품 검사
 - 물품 분석과 정밀검사를 위한 샘플의 채취

- 수입신고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관은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함

라. 관세납부 및 물품 반출

- 관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에 관세납부 또는 담보 제공의 의무가 있음

- 수입신고 수리 및 관세납부가 완료된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함⁴⁵⁸⁾
 - 상기 조항은 세관신고의 확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없는 경우와 그 물품이 확인 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됨
 - 같은 신고에 포함되는 모든 물품은 동시에 반출되어야 함
 - 상기 조항의 목적상 세관신고가 두 개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경우 각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관신고로 간주됨

457) 「UCC」 제188조

458) 「UCC」 제194조

- 다만 수입신고인의 귀책사유에 한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의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와 관세 납부기한 내에 관세납부 또는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3. 기타 수입통관절차

- 기타 수입통관절차는 독일관세총국 홈페이지상에 게재된 것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우편물 그리고 EU 내 물품의 이동으로 구분하였으며, 독일 차원에서 기타 수입통관절차에 해당하는 자료로 범위를 한정함

가. 여행자 휴대품⁴⁵⁹⁾

- 비EU 국가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은 특정 수량 및 가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면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통관 기준을 따라야 함
 - 비EU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세관에서 구두로 해당 물품을 신고
 - 입국 시 제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물품에 요구되는 인증서를 소지
 -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서면신고서와 수입허가서를 제시
 - 독일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서면신고서 제출(예: 귀중품을 가져오는 경우)
- 여행자 휴대품 가운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됨
 - 과세대상 물품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됨
 - 과세대상 물품의 가치가 7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59)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Private-individuals/Travel/travel_node.html(검색일자: 2018. 10. 22)

- 개인 수하물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경우
 -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 또는 선물인 경우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7.5%가 적용되며,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됨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는 다음에 따름
- 3유로 미만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원본이 제공됨
 -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정해진 요금을 납부해야 함
 - 만약 직접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10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은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반출될 수 없음
- <표 3-I-2>는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는 일부 물품의 통관 기준을 정리한 것임
- 상기 물품 이외의 다른 물품과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사이트(http://www.zoll.de/EN/Private-individuals/Travel/Entering-Germany/Restrictions/restrictions_node.html)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표 3-1-2>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기준

구분	통관 기준
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이상 1리터 또는 22% 이하 2리터 - 일반 와인 4리터(별도) - 맥주 16리터(별도)
담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cigarette) 200개비 - 또는 시가(cigar) 50개비 - 또는 시가릴로(cigarillos) 100개비 - 또는 기타 담배류 250g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중 사용할 물품: 보석, 전자제품 등 고가 물품의 경우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상품의 경우 총액 430유로 이하(항공 및 해상 여행객) - 기타 여행객(육로 여행객)은 300유로 이하

구분	통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5세 미만의 경우 175유로 이하 · 개별반입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
외국환신고	- 총액 기준 10,000유로 상당액 이상의 현금 및 수표, 주식, 채권 및 유가증권 등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독일 내 관할 세관에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함
의약품	- 여행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적당량(의사의 영문 처방전 및 소견서 지참)
식품	- 감자, 육류, 우유, 유제품, 계란 등은 수입 불허
반입불허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마약류 - 허가가 필요한 무기류 및 탄약, 폭죽 등 - 여행에 필요한 분량 이상의 식품, 약품 - 음란물,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도서 출판물 - 불법 복제품 - CITES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자료: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Private-individuals/Travel/travel_node.html
(검색일자: 2018. 10. 28)

나. 우편물⁴⁶⁰⁾

- 비EU국가의 우편물은 항상 통관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관세 등의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EU국가에서의 위탁 화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입 전에 무역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상기 통관절차는 독일국영우체국(Deutsche Post AG)의 운송절차과 특송서비스에 의한 우편물의 운송절차로 구분함

460)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Private-individuals/Postal_consignments_internet_order/Shipments-to-Germany/Procedures/procedures_node.html(검색일자: 2018. 10. 22)

1) 독일국영우체국(Deutsche Post AG)의 운송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독일국영우체국(Deutsche Post AG)은 신고인 또는 수취인을 대신하여 수입통관을 처리함
 - 우편물이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우편물이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상업적 정책수단이나 대외 무역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우편물의 외부에 부착된 송장을 통해 위탁 금액의 신뢰성 있는 증거가 표시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우편물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의 위탁 수거 절차에 따라 처리함
 - 우편물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불안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우편물이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품목에 포함되고 상업적 정책수단이나 대외 무역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물품에 포함되는 경우

- 독일국영우체국(Deutsche Post AG)은 위탁 화물에 대한 누락된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취인에게 통지함
 - 누락된 정보는 해당 송장을 제시함으로써 수취인 본인이 직접 제공해야 함
 - 우편물의 가치에 대한 세부사항이 누락된 경우 송장과 PayPal 지급증명과 같은 기타 적절한 서류를 구비해야 함

2) 특송서비스에 의한 우편물의 운송

- 특송서비스는 신고인 또는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함
 - 우편물이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상업적 정책수단이나 대외 무역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 예를 들면 의약품, 위조 상표 상품, 보호 대상 품목은 주문할 수 없으며, 물품의 판매자 또는 발송인에게 신고서와 송장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음

다. EU 내 물품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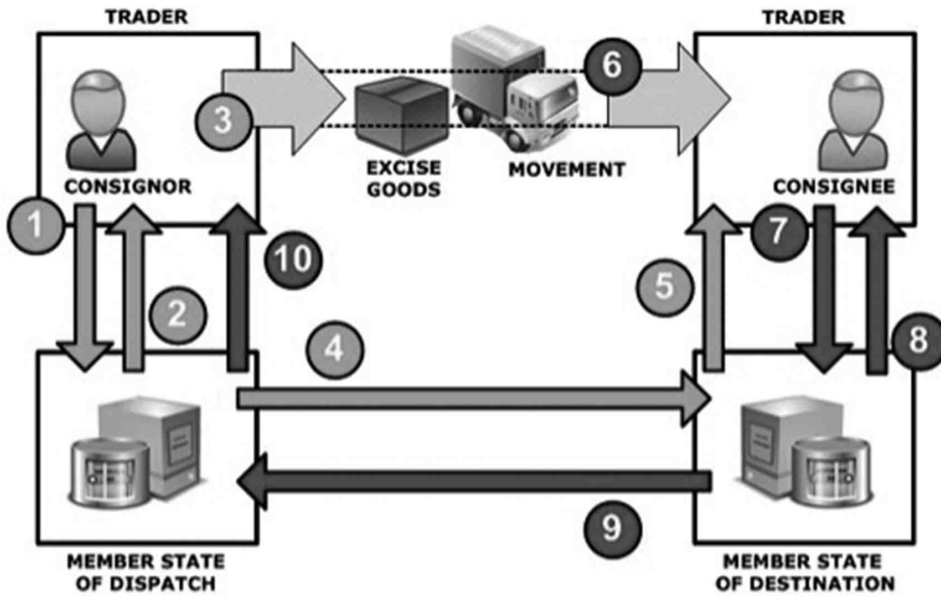
1) EMCS 절차⁴⁶¹⁾

- EU 회원국 간 물품의 이동에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부가세(import VAT)가 면제되기도 하며, 수입 관세(import Duty)도 적용되지 않음
- 다만 EU 회원국 간 주류(alcohol)와 담배(tobacco) 그리고 에너지(energy)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비세(Excise Duty)를 납부해야 함
 - 다른 EU 회원국 또는 비EU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국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 이에 따라 EU 회원국 간 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이동은 EMCS(Excise Movement and Control System) 절차를 통해 전자적으로 모니터링됨
 - 현재 10만명 이상의 경제운영자가 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
 - EMCS는 물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인을 통해 조세포탈 방지, EU 전역에 표준화된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절차를 간소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 보증 해제를 가속화, 페이퍼리스가 가능함
- EMCS에서는 전자행정 문서(electronic Administrative Document, 이하 'eAD')를 통해 모든 단계에서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이동이 문서화됨
 - eAD는 송하인이 발행한 것으로 EU 내 위탁 및 계획된 이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eAD는 발송국에서 유효하며, 소비세 교환 시스템(System of Exchange of

461)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xcise-duties-alcohol-tobacco-energy/excise-movement-control-system_en(검색일자: 2018. 10. 29)

- Excise Data: SEED)은 송하인과 수하인의 소비세를 확인하는 데 사용됨
- eAD는 자동으로 발송국에서 목적지 회원국으로 전달되며, 목적지 회원국은 수하인에게 eAD를 전달함
- 수하인은 해당 물품을 수취하면 ‘수취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위탁 물품의 과부족과 같은 모든 예외사항을 명시해야 함
- 신고서가 송하인에게 전송되면 물품의 이동이 종료되고 보증이 해제됨

[그림 3-1-1] EMCS 절차



1. The consignor submits the e-AAD
2. The Member State of dispatch validates the e-AAD and sends it back th the consignor (including the AAD Registration Code - ARC)
3. The consignoer dispatches the excise goods.
4. The Member State of dispatch transmits the e-AAD to the Member State of destination.
5. The Member State of destination forwards the e-AAD to the consignee.
6. The excise goods arrive at destination.
7. The consignee submits a report of receipt.
8. The Member State of destination validates the report of receipt and sends it back to the consignee.
9. The Member State of destination transmits the report of receipt to the Member State of dispatch.
10. The Member State of dispatch forwards the reports of receipt to the consignor

자료: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xcise-duties-alcohol-tobacco-energy/excise-movement-control-system_en(검색일자: 2018. 10. 29)

- 독일의 경우 EMCS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Generalzolldirektion - Dienstort Weiden - Teilnehmermanagement에 등록해야 함⁴⁶²⁾
 - 독일 과세영역이 아닌 기타 다른 EU 회원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함
 - 개인이 EMCS 절차를 통해 세관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요건 및 조건은 독일에 등록된 EMCS 참가자에 대한 지침에서 규정되고 있음

- 한편 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이 다른 회원국에서 독일 과세영역 또는 독일 과세영역을 통해 수취인에게 이동되는 경우 다음에 따름⁴⁶³⁾
 - 운송인은 전자 관리 문서 또는 기타 다른 상업 서류(송장, 인도인수증, 운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 등)의 인쇄본을 소유해야 함
 - 다만 커피 및 커피 함유 제품, 알콜 함유 음료의 경우 독일 과세영역과 다른 EU 회원국 간의 적용 규칙이 없으므로 EMCS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2) 소비세 부과 물품의 구비서류⁴⁶⁴⁾

- 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는 소비지와세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물품이 실제로 사용 또는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되고 그 이동이 확인되며, 이에 따른 공식적인 구비서류가 필요함
 -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 상기 구비서류는 물품에 동봉해야 하며, 통제 목적으로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되어야 함

462)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Movement-of-goods-within-the-EU/Procedures/Movement-of-excise-goods-under-duty-suspension/movement-of-excise-goods-under-duty-suspension_node.html(검색일자: 2018. 10. 31)

463)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Movement-of-goods-within-the-EU/Procedures/Movement-of-excise-goods-under-duty-suspension/movement-of-excise-goods-under-duty-suspension_node.html(검색일자: 2018. 10. 31)

464)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Movement-of-goods-within-the-EU/Procedures/Movement-of-duty-paid-excise-goods/movement-of-duty-paid-excise-goods_node.html(검색일자: 2018. 11. 5)

- 상기 구비서류는 관련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3649/92에 따름

- 자유로운 유통(free circulation)을 위해 출시된 소비세 대상 물품이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되는 경우 공식적인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다음을 준수해야 함
 - 상기 서류가 간이 구비서류(simplified accompanying document)로 사용되는 경우 'Simplified accompanying document (excise goods) for fiscal control purposes'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⁴⁶⁵⁾
 - 상기 서류는 3부의 사본이 작성되어야 하며 사본1은 송하인이 보관하고 사본2는 해당 물품에 첨부해야 하며, 사본3은 반출 절차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수하인이 보증해야 함⁴⁶⁶⁾

- 한편 커피 및 커피 함유 제품 또는 EU 회원국과의 우편거래에는 간이 구비서류가 요구되지 않음
 - 독일의 경우 커피 및 커피 함유 제품의 이동에 대해서는 해당 양식(form 1843)을 사용하여 사전에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세관에 신고해야 함

465)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3649/92 제3조

466)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3649/92 제4조

II. 수출통관절차

1. 개요

- EU의 수출통관절차는 「UCC」 제8편 '연합국 영토 밖으로 반출되는 물품' 제263조에서 제277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절차라 함은 「UCC」 제269조에 따라 EU 회원국의 물품을 EU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을 의미함⁴⁶⁷⁾
 - 「UCC」 제8편 '연합국 영토 밖으로 반출되는 물품'에서는 사전 출발 신고, 역내 물품의 수출, 역외 물품의 재수출, 반출개괄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재수출의 경우 제8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품목과 유의사항은 관세의 감면 및 환급에 다루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출 절차(normal export procedure)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 장에서는 일부 관련 절차만 간략히 다루도록 함

- 수출절차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⁴⁶⁸⁾
 - 역외 가공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
 - 최종 사용 절차를 적용한 이후,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하려는 물품
 - 항공기나 선박의 소모품으로(해당내용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부가세 또는 소비

467)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ustoms-procedures/what-is-exportation/export-procedure_en(검색일자: 2018. 11. 14)

468) 「UCC」 제269조 제2항

- 세가 면제되어 운반되는 물품(항공기나 선박의 목적지와 무관함)
 - 역내 환적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
 - 일시적으로 EU 관세영역 밖으로 이동하는 물품
- 수출을 위한 물품은 「UCC」 제333조에 따라 EU 관세영역 내에서 반출되기 직전 까지 세관의 감독하에서 통제를 받으며 세관 당국은 물품이 EU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되는 경로와 반출 기한을 지정할 수 있음⁴⁶⁹⁾
- 다음의 물품은 수출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⁴⁷⁰⁾
- 수출이 예정된 물품이 마약 전구물질, 특정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현금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 공중도덕, 공공 정책 또는 안전 보장, 인간·동물·식물의 건강과 삶의 보호, 환경의 보호, 예술·역사·고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 보물의 보호, 산업 또는 상업 자산의 보호, 어장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수단과 상업 정책 수단의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금지 및 제한 규정이 적용됨

2. 수출통관절차

가. 수출신고

1) 사전출발신고(Pre-departure declaration)

- EU의 수출절차는 크게 수출신고와 물품반출의 두 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음⁴⁷¹⁾
- 독일관세총국에서는 편의상 수출신고지 세관의 절차와 물품 반출지 세관의 절차

469) 「UCC」 제267조 제1항

470) 「UCC」 제267조 제3항

471)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ustoms-procedures/what-is-exportation/export-procedure_en(검색일자: 2018. 11. 14)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내용상 큰 차이는 없음⁴⁷²⁾

- 수출신고지 세관은 수출을 위해 화물을 적재하거나 포장해야 하는 세관 또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는 세관을 의미함

- EU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EU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되기 전 특정한 기한 내에 권한 있는 세관 사무소에 사전 출발 신고를 제출해야 함⁴⁷³⁾

- 사전 출발 신고는 EU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되려는 물품이 세관 신고가 필요한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 그 세관 신고, 출항개괄신고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짐⁴⁷⁴⁾
 - 사전 출발 신고는 안전 목적의 위험 분석에 필요한 명세를 담고 있어야 함
 - 세관 사무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전 출발신고에 근거하여 안전과 보안을 위한 위험 분석을 이행해야 하며, 해당 위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 EU 역외물품의 재수출 신고 또한 사전 출발 신고로 분류하고 있음
 - 출항개괄신고는 아래의 '2) 출항개괄신고(Exit Summary Declaration)'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함

- 단 다음의 경우 사전 출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⁴⁷⁵⁾
 - EU역내의 내륙 수로 또는 영공을 정지 없이 단지 통과하는 운송 수단과 물품은 사전 출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특정한 경우 물품 또는 운송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정당화될 수 있거나 국제 협정에 의해 요청된 경우 사전 출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472)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verfahren/Ausfuhrverfahren/Warenausfuhr-zweistufiges-Verfahren/Normales-Verfahren/normales-verfahren_node.htm
 l(검색일자: 2018. 11. 19)

473) 「UCC」 제263조 제1항

474) 「UCC」 제263조 제3항

475) 「UCC」 제263조 제2항

- EU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이 예정된 물품은 책임 있는 자에 의해 권한 있는 세관 사무소에 제시되어야 하며, 수출 환급금의 지급대상 또는 수출 관세 징수 대상이 됨⁴⁷⁶⁾
 - 물품의 제시는 수출이 의도된 제품이 세관당국 또는 세관당국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장소에 위치해야하는 것을 의미함

- 수출신고는 「UCC」에 따라 EU 전역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독일의 경우 수출신고는 ATLAS -aussuhr라는 IT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짐⁴⁷⁷⁾

- 수출신고서 제출 의무는 운송 수단(도로, 항공, 해상, 우편 및 철도)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수출신고는 물품을 제시하고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EU 거주자에게 자격이 주어짐⁴⁷⁸⁾
 - 특정한 경우 구두로 반출지의 세관에 수출신고가 가능하나 수출 물품이 세관의 금지 및 통제 물품이거나 관세의 환급 대상일 경우 구두 신고는 불가능함

- 수출신고가 제출된 세관사무소는 신고의 확인을 위한 절차와 관세채무에 상응하는 수출 관세 금액의 징수를 수행해야 함

2) 출항개괄신고(Export Summary Declaration)

- 수출물품에 대한 사전출발신고(수출신고) 또는 재수출신고가 제출되지 않았을 시 출항개괄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는 반출지의 세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함⁴⁷⁹⁾

476) 「UCC」 제267조 제3항

477)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verfahren/Ausfuhrverfahren/Warenausfuhr-zweistufiges-Verfahren/Normales-Verfahren/normales-verfahren_node.html(검색일자: 2018. 11. 19)

478)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verfahren/Ausfuhrverfahren/Warenausfuhr-zweistufiges-Verfahren/Normales-Verfahren/normales-verfahren_node.html(검색일자: 2018. 11. 19)

479) 「UCC」 제271조 제1항

- 세관은 출항개괄신고가 반출지가 아닌 다른 세관사무소에 제출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⁴⁸⁰⁾
 - 단 다른 세관사무소가 즉시 반출지의 세관사무소와 연락하거나 반출지의 세관사무소가 필요한 명세를 전자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함
 - 세관은 상업적인 공항·항만 또는 운송 정보 시스템이 출항개괄신고로 사용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
 - 단 그 정보 시스템이 동 신고를 위한 필요한 명세를 내포하고 있고 동 물품이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되기 전 특정한 기한 내에 정보가 활용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 가능함

- 출항개괄신고인은 신청에 의해 신고의 제출 이후에 동 신고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세를 수정하는 것이 허가됨⁴⁸¹⁾
 - 세관 당국은 출항개괄신고의 제출 대신에 AEO공인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출항개괄신고의 명세에 대한 접근(허용)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출항개괄신고가 제출된 물품이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되지 않는 경우, 세관 당국은 신고인의 신청 또는 신고 제출 후 150일 이내에 그 신고를 무효화시켜야 함⁴⁸²⁾

나. 물품반출

- 반출지 세관사무소는 연합 세관 영토를 떠나기 전에 물품을 제시할 세관으로서 수출신고가 제출된 세관사무소에서 요청한 검사를 수행해야 함
 - 반출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출 신고지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반출지 세관

480) 「UCC」 제271조 제3항

481) 「UCC」 제272조 제1항

482) 「UCC」 제272조 제2항

- 이 물품을 검사하게 되며 필요시 물리적 검사가 실시됨
- 두 개의 세관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물품의 반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야 하며, 반출지 세관사무소는 그 물품의 반출을 승인해야 함⁴⁸³⁾

- 세관신고 또는 재수출신고가 수리되거나 출항개괄신고가 제출되고 물품이 신고물품과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면 물품이 반출(release)될 수 있음⁴⁸⁴⁾
- 수출신고번호(Master Reference Number) 및 수출면장(Ausfuhrbegleitdokument)을 제시하여 서류의 물품과 수출물품이 동일한 것임이 확인될 시 물품의 반출이 가능함⁴⁸⁵⁾
- 관련된 세관절차하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비롯하여 세관의 금지 관련 사항 또한 준수해야 함
-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세관신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및 확인을 위해 물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세관의 허가하에 물품반출이 가능함
- 단 AEO 공인자의 경우 2016년 5월 1일부터 반출지 세관에서 수출면장 제출이 면제됨

다. 기타

1) EU 관세영역 밖으로 역외 물품 반출

- 재수출신고는 자유무역지역절차 또는 일시보관하에 두는 것을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과 방법으로 특정인이 역외물품을 EU 관세 영역 밖으로 반출하려는 의도를 명시하는 것을 의미함

483) 「UCC」 제271조 제1항

484) 「UCC」 제267조 제4항

485)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verfahren/Ausfuhrverfahren/Warenausfuhr-zweistufiges-Verfahren/Normales-Verfahren/normales-verfahren_node.html#doc302518bodyText2(검색일자: 2018. 11. 19)

- 재수출통보는 규정된 형식과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절차 또는 일시보관하에 있는 역외물품을 특정인이 EU 관세 영역 밖으로 반출하려는 의도를 명시하는 것을 의미함
-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역외물품은 권한 있는 세관사무소에 재수출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의 물품에는 재수출을 적용할 수 없음⁴⁸⁶⁾
 - EU 관세영역을 단지 통과하는 역외 환적 절차하의 물품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다른 배로 환적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직접 재수출되는 물품
 - 일시보관 설비에 보관되어 직접 재수출되는 물품
- 위에서 언급한 재수출 적용 제외 물품이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을 예정하며 반출개괄신고 제출 의무가 포기된 경우에는 재수출통보(notification)를 제출해야 함⁴⁸⁷⁾
 - 반출지에서 물품의 제시를 책임지는 자가 반출지의 세관사무소에 재수출통보를 제출해야 함
 - 재수출통보는 자유무역지역 절차를 종료시키거나 일시 반입을 끝내기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신고인이 재수출통보를 제출한 이후에 동 통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용을 수정할 시 세관의 허락이 필요함⁴⁸⁸⁾
 - 재수출통보가 제출된 물품이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되지 않는 경우, 세관 당국은 신고인의 신청 또는 통보의 제출 후 150일 이내 그 신고를 무효화시켜야 함

486) 「UCC」 제270조 제3항

487) 「UCC」 제274조 제1항

488) 「UCC」 제275조 제2항

- 세관 당국은 재수출통보의 제출 대신에 AEO공인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재수출 통보의 명세에 대한 접근(허용)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2) 독일의 수출통제제도⁴⁸⁹⁾

- 독일은 MTCR⁴⁹⁰⁾, Australia Group⁴⁹¹⁾, NSG⁴⁹²⁾, Wassenaar Arrangement⁴⁹³⁾ 등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음
- 특히 무기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은 수출통제대상으로 매우 종류가 다양하고 수시로 그 종류가 추가되고 있으므로 독일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해당 물품이 수출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⁴⁹⁴⁾
- 독일에서 방산물자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과 장비를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가 최종 사용자이고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품목인 경우에는 독일 연방 경제 수출 통제국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수출을 승인하고 있음⁴⁹⁵⁾
 - 새로운 품목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연방경제수출통제국을 통해서 연방 경제 및 에너지 자원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부될 가능성도 있음⁴⁹⁶⁾

489)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7, pp. 128~129

490)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1987년 4월 16일, 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 등 서방 7개국(G-7)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

491) 개별 국가들의 수출통제조치 조화 및 정보공유/통제리스트의 정기적 수정, 보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적 회의로 동 회의는 이후 호주 그룹(Australia Group)으로 명명되었음

492) 자력 관련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 1978년 미국, 캐나다 등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총 45개 EU 회원국이 있음

493)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조직으로 베르나스 협정이라고도 명명함

494)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7, pp. 128~129

495) 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http://www.bafa.de/DE/Aussenwirtschaft/Ausfuhrkontrolle/Gueterlisten/gueterlisten_node.html(검색일자: 2018. 11. 20)

496)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7, pp. 128~129

-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독일 수출기업이고 승인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므로 물품을 독일로부터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연방경제수출통제국의 승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음⁴⁹⁷⁾
- 따라서 방산물자나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계약체결 시 독일 연방정부의 수출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독일 수출기업이 지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국에서 수출승인에 1달 내외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497)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7, pp. 128~129

참고문헌

-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3. 20.
- 국제원산지정보원, 『국가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운용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7. 12.
- 김흥중 외,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2. 13.
-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장, 「EU통관환경의 주요내용과 유의점」, 『FTA TRADE REPORT Vol.2』 2016. 6.
-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마광, 「유럽공동체의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연구」, 『對外經濟研究』 제10권 제2호, 한국통상법제연구소, 2006, 12.
- 변재웅, 「EU의 일방적 무역조치 TBR과 한국적용사례」, 『貿易學觸』,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편』, 2017.
- 송선욱, 「EU의 AEO 운영에 따른 평가와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5. 12. 28.
-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2, pp. 53~54

- 이안리너트·정무경, 『OECD국가 예산 체계의 법적 구조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2007. 12. 28.
- 이재일, 「독일 조세기본법상 처벌규정」, 『맞춤형 법제정보』,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
- 이환규, 「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1.
- 정재호·노영예·이재선, 『주요국의 관세행정조직의 기능 및 역할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2.
- _____,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6.
-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2016. 3. 1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8. 4.
-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 2017. 11. 1.
- 독일 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Annual Report 2017”, 2018. 2. 27.
- WTO, *Trade Policy Review-European Union*, WT/TPR/S/357, 2017
-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8*, 2018
- EU집행위원회, Registered Exporter System(REX) Guidance document, 2017. 7.
- 관세법인 대유, <http://www.daeu.co.kr>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 독일관세총국, http://www.zoll.de/DE/Home/home_node.html
- 독일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Home/home.html>
- 독일연방통계청, <https://www.destatis.de>
- 독일법령포털, <https://www.gesetze-im-internet.de>
- 산업통산상자원부 FTA포털, <https://www.fta.go.kr>
- 세계표준인증원, <http://www.wscs.co.kr>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ntb.kita.net>
- 시험인증원, <http://www.rapatcl.or.kr>

- 유럽중앙은행(ECB), <https://www.ecb.europa.eu>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index.do>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khidi.or.kr>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be-ko/wpge/m_7585/contents.do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de-ko/index.do>
채혁복의 유럽연합: EU 뜯아보기. 통합을 향한 유럽·유럽인의 도전과 실패,
<http://www.newsmin.co.kr/news/19978/>
표준엔지니어링, <http://www.stdeng.com>
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files/dat/docs/08summer_05.pdf
한국무역신문, <http://weeklytrade.co.kr>
한국무역협회, <http://okfta.kita.net>
한국품질인증연구원, <http://kioqa.co.kr/m61.php>
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upload/publication/VPR200112_02.pdf,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knowtbt.kr/main.do>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index.do>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index_en
EU법령정보포털, <https://eur-lex.europa.eu/homepage.html?locale=en>
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http://www.bafa.de/DE/Aussenwirtschaft/Ausfuhrkontrolle/Gueterlisten/gueterlisten_node.html
cosmetic consulting, <http://cosmeticconsulting.com>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m.html>
K-STAT, <http://stat.kita.net>
IEC KOREA 주식회사, <http://www.ieckorea.com>
LG 화학, <http://lgchemwide.co.kr>

OECD,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country-statistical-profile-germany-2018-3_csp-deu-table-2018-3-en

UNCTAD, <https://unctad.org/en/Pages/Home.aspx>

TÜV SÜD Korea, <https://www.tuv-sud.kr/kr-kr>

OECD,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country-statistical-profile-germany-2018-3_csp-deu-table-2018-3-en

「독일 관세정률령(ZollKostV)」

「독일 대외무역법(AWG)」

「독일 조세기본법(AO)」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Council Regulation(EEC) 2658/87

Commission Regulation(EEC) 2454/93

Commission Regulation(EEC) 3649/9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5/2447

Commission Regulation(EU) 952/2013

Commission Regulation(EU) 927/2012

Commission Regulation(EU) 2015/47

Commission Regulation(EU) 2016/1036

Commission Regulation(EU) 2017/2321

Commission Regulaion(EU) 2018/1013

Commission Regulation(EU) 2018/825

Commission Regulation(EU) 2017/2321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독일 편 -

발 행 2018년 12월 31일
저 자 권성오 · 김미정 · 노영예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46-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